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연구

Developing Core Competency Model for Investigative Police

조준택 · 김지영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연구

연구책임자

조 준 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지 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지원

고 가 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머리말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고 경찰 수사분야가 확대되었으며 수사경찰의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2023년까지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이 개발되지 않은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경찰 관련 역량모델 사례와 논의를 검토한 후 자료수집, 역량추출 및 모델개발, 타당성 검증, 최종모델 완성의 절차에 의해 강력범죄수사, 형사범죄수사,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지능범죄수사, 경제범죄수사, 마약범죄수사, 조직폭력범죄수사, 사이버범죄수사, 디지털포렌식, 안보범죄수사, 교통범죄수사 등 11개 분야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은 경찰수사연수원 교육을 포함한 각 수사분야 교육프로그램 개선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관 인사관리 및 자격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관의 역량이 강화될 경우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면담 대상 우수 수사관들을 추천해주시고 수사관 대상 설문조사 등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인재개발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바쁜 수사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여 면담에 참여한 전국 각지의 우수 수사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사경찰 관련 전문 분야에서 심도 있는 자문 의견을 제시해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과제의 공동연구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김지영 선임연구위원께 감사드리며, 연구지원에 정성을 다해 준 고가영 조사연구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3년 11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부연구위원 조 준 택



목 차

국문요약	1
------------	---

제1장 조준택

서론	3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	---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6
--------------------------	---

1. 연구방법	6
---------------	---

2. 보고서의 구성	7
------------------	---

제2장 조준택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 검토	9
-----------------------	---

제1절 역량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경찰역량 연구 검토	11
--------------------------------------	----

1. 역량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
------------------------	----

2. 경찰역량모델 관련 선행연구 검토	13
----------------------------	----

제2절 수사경찰 역량 관련 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	17
-----------------------------------	----

1. 수사경찰 역량진단 프로그램 개발연구	17
------------------------------	----

2. 미국 내무부 범죄수사 역량모델	19
---------------------------	----

제3절 수사경찰 기능 및 교육과정 검토를 통한 역량탐색	28
--------------------------------------	----

1. 국가수사본부 조직 및 사무분장	28
---------------------------	----

2. 강력범죄수사 교육과정	30
----------------------	----

3. 형사범죄수사 교육과정	31
----------------------	----

4.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교육과정	31
-------------------------	----

5. 지능범죄수사 교육과정	32
----------------------	----

6. 경제범죄수사 교육과정	33
7. 마약범죄수사 교육과정	33
8. 조직폭력범죄수사 교육과정	34
9. 사이버범죄수사 교육과정	35
10. 디지털포렌식 교육과정	35
11. 안보범죄수사 교육과정	36
12. 교통범죄수사 교육과정	37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37

제3장 조준택·김지영

수사경찰 면담조사 및 핵심역량모델 초안개발 39

제1절 수사경찰 면담조사 개요	41
1. 핵심역량모델 개발절차	41
2.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수집	42
제2절 면담조사 결과 및 핵심역량모델 초안개발	44
1. 강력범죄수사	44
2. 형사범죄수사	48
3. 여성청소년범죄수사	50
4. 지능범죄수사	53
5. 경제범죄수사	56
6. 마약범죄수사	59
7. 조직폭력범죄수사	62
8. 사이버범죄수사	65
9. 디지털포렌식	68
10. 안보범죄수사	71
11. 교통범죄수사	74

제4장 김지영·조준택

타당성 검증 및 최종모델 개발 79

제1절 설문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 81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81
2. 강력범죄수사 84
3. 형사범죄수사 90
4. 여성청소년범죄수사 95
5. 지능범죄수사 101
6. 경제범죄수사 106
7. 마약범죄수사 112
8. 조직폭력범죄수사 116
9. 사이버범죄수사 121
10. 디지털포렌식 127
11. 안보범죄수사 132
12. 교통범죄수사 138

제2절 수사경찰 핵심역량 최종모델 개발 145

1. 강력범죄 수사 145
2. 형사범죄수사 146
3. 여성청소년범죄수사 147
4. 지능범죄수사 148
5. 경제범죄수사 149
6. 마약범죄수사 150
7. 조직폭력범죄수사 151
8. 사이버범죄수사 152
9. 디지털포렌식 153
10. 안보범죄수사 154
11. 교통범죄수사 155

제5장 조준택

결론 157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59

 1. 연구결과의 요약 159

 2. 연구결과의 의의 및 시사점 16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안 164

참고문헌 167

Abstract 169

부록 173

표 차례

[표 2-1] 경찰관 직무공통역량	13
[표 2-2] 지역경찰관 역량모델	15
[표 2-3] 지역경찰 핵심역량모델	16
[표 2-4] 대화경찰 역량모델	17
[표 2-5] 지역형사와 지능범죄수사 분야 실무자 역량	18
[표 2-6] 과학수사와 수사지원 분야 실무자 역량	18
[표 2-7] 미국 내무부 범죄수사 일반적 역량 및 기술적 역량	27
[표 2-8] 강폭력범죄수사과정 교과목 체계	30
[표 2-9] 신임수사관(형사) 전문교육과정 교과목 체계	31
[표 2-10] 여청수사실무과정 교과목 체계	32
[표 2-11]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정 교과목 체계	32
[표 2-12] 경제범죄수사과정 교과목 체계	33
[표 2-13] 마약류범죄수사과정 교과목 체계	34
[표 2-14] 조직폭력범죄수사과정 교과목 체계	34
[표 2-15] 사이버수사과정 교과목 체계	35
[표 2-16] 디지털포렌식과정 교과목 체계	36
[표 2-17] 안보수사전문과정 교과목 체계	36
[표 2-18] 교통범죄수사실무과정 교과목 체계	37
[표 3-1]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절차	42
[표 3-2] 면담조사에 참여한 경찰 수사관들의 기본사항	43
[표 3-3] 수사경찰 심층면접 주요 질문내용	44
[표 3-4] 강력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47
[표 3-5] 형사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50
[표 3-6] 여성청소년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53
[표 3-7] 지능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56
[표 3-8] 경제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59
[표 3-9] 마약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62
[표 3-10] 조직폭력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65
[표 3-11] 사이버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68

[표 3-12] 디지털포렌식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71
[표 3-13] 안보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74
[표 3-14] 교통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77
[표 4-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82
[표 4-2] 강력범죄수사-형법 및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84
[표 4-3] 강력범죄수사-민사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84
[표 4-4] 강력범죄수사-법의학 등 법과학 분야 관련 지식	85
[표 4-5] 강력범죄수사-정보원에 대한 관리 및 첩보수집능력(장물아비, 출소자 등)	85
[표 4-6] 강력범죄수사-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 (CCTV 관찰, 탐문 등)	86
[표 4-7] 강력범죄수사-동일범죄수법 조회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SCAS 등)	86
[표 4-8] 강력범죄수사-수집한 각종 증거에 대한 통합적 분석능력	87
[표 4-9] 강력범죄수사-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활용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	87
[표 4-10] 강력범죄수사-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	88
[표 4-11] 강력범죄수사-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	88
[표 4-12] 강력범죄수사-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능력	89
[표 4-13] 강력범죄수사-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	89
[표 4-14] 형사범죄수사-형법 및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90
[표 4-15] 형사범죄수사-디지털 증거에 대한 이해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지식	90
[표 4-16] 형사범죄수사-다양한 사건에 대한 죄명 적용능력	91
[표 4-17] 형사범죄수사-사건특성과 단서에 따른 수사사항 우선순위 설정능력	91
[표 4-18] 형사범죄수사-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 (CCTV 관찰, 탐문 등)	92
[표 4-19] 형사범죄수사-동일범죄수법 조회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SCAS 등)	92
[표 4-20] 형사범죄수사-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활용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	93
[표 4-21] 형사범죄수사-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	93
[표 4-22] 형사범죄수사-(출동시) 신고사건 정보숙지와 돌발상황 대처능력 (물리력 사용 등)	94
[표 4-23] 형사범죄수사-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능력	94
[표 4-24] 형사범죄수사-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	95
[표 4-25] 여성청소년범죄수사-여성청소년범죄 관련 형사법,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95
[표 4-26] 여성청소년범죄수사-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에 특별히 요구되는 수사절차와 매뉴얼 지식	96
[표 4-27] 여성청소년범죄수사-여성과 청소년 등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이해	96

[표 4-28] 여성청소년범죄수사-112 신고이력 등 각종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능력	97
[표 4-29] 여성청소년범죄수사-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피해자 분리, 신변보호 등) 이행능력	97
[표 4-30] 여성청소년범죄수사-피해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 등 면담기법 및 조사 능력	98
[표 4-31]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진술증거 및 물적증거 수집을 통한 피해사실 특정 능력	98
[표 4-32] 여성청소년범죄수사-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CCTV확인, 탐문, 통신수사 등)	99
[표 4-33] 여성청소년범죄수사-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휴대전화 포렌식, 목격자 진술)	99
[표 4-34] 여성청소년범죄수사-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	100
[표 4-35] 여성청소년범죄수사-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각종 상담기관 등)	100
[표 4-36] 지능범죄수사-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	101
[표 4-37] 지능범죄수사-지능범죄 분야의 다양한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101
[표 4-38] 지능범죄수사-특별법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분야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식	102
[표 4-39] 지능범죄수사-기업의 자금, 신용정보, 회계에 대한 지식	102
[표 4-40] 지능범죄수사-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103
[표 4-41] 지능범죄수사-다양한 수사단서에서 지능범죄를 인지하는 능력	103
[표 4-42] 지능범죄수사-제보자,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등 관련자 면담 및 조사능력	104
[표 4-43] 지능범죄수사-범죄수사를 위한 공개자료 검색 및 수집능력	104
[표 4-44] 지능범죄수사-강제수사 능력(계좌추적, 대인 및 대물 압수수색 등)	105
[표 4-45] 지능범죄수사-논리적 추론을 통한 증거분석과 범죄사실 관련성 입증 능력	105
[표 4-46] 지능범죄수사-수사결과보고서 등 빈틈없는 수사서류 작성능력	106
[표 4-47] 경제범죄수사-재산범죄 관련 형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106
[표 4-48] 경제범죄수사-재산범죄 관련 민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107
[표 4-49] 경제범죄수사-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세금, 회계 등 재무상태에 대한 지식	107
[표 4-50] 경제범죄수사-형사범죄와 민사사안에 대한 판단 및 구분능력	108
[표 4-51] 경제범죄수사-고소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 진술확보를 위한 조사능력	108
[표 4-52] 경제범죄수사-고소 및 고발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 능력	109
[표 4-53] 경제범죄수사-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계좌추적 등)	109
[표 4-54] 경제범죄수사-회계 프로그램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	110
[표 4-55] 경제범죄수사-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세무서, 신용평가사, 공인중개사 협회 등)	110
[표 4-56] 경제범죄수사-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	111

[표 4-57] 경제범죄수사-진술과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추론과 보고서 작성능력	111
[표 4-58] 경제범죄수사-고소인 등에 대해 조사결과 및 법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능력 ..	112
[표 4-59] 마약범죄수사-마약류관리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112
[표 4-60] 마약범죄수사-마약사건에 관한 영장기각사례 등 실무사례에 대한 지식	113
[표 4-61] 마약범죄수사-마약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에 관한 지식	113
[표 4-62] 마약범죄수사-마약범죄 전력자나 제보자 등을 통한 첩보수집 능력	114
[표 4-63] 마약범죄수사-각종 첩보 등 수사단서에 대한 신빙성 검증능력	114
[표 4-64] 마약범죄수사-제보자로부터 마약범죄에 대한 구체적 진술 확보 능력	114
[표 4-65] 마약범죄수사-강제수사(압수수색 등)에 대한 판단 및 실행능력	115
[표 4-66] 마약범죄수사-피의자에 대한 사전동선 파악 등 검거계획 수립 및 실행능력 ..	115
[표 4-67] 마약범죄수사-마약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기법 및 조사능력	116
[표 4-68] 마약범죄수사-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식약처, 검찰 등)	116
[표 4-69] 조직폭력범죄수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지식	117
[표 4-70] 조직폭력범죄수사-성매매처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조직폭력 사업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117
[표 4-71] 조직폭력범죄수사-범죄인지를 위한 폭력조직에 대한 정보망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118
[표 4-72] 조직폭력범죄수사-피해규명을 위한 피해자 면담 및 조사 능력 (신뢰 및 라포 형성)	118
[표 4-73] 조직폭력범죄수사-혐의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 (통화내역, 면회내용, 영치금 대장 등)	119
[표 4-74] 조직폭력범죄수사-조직폭력 동향파악을 위한 DB 관리 및 활용능력 (KICS 조직계보, 동향보고 등)	119
[표 4-75] 조직폭력범죄수사-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교정기관,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등)	120
[표 4-76] 조직폭력범죄수사-검거계획서(체포영장 집행계획서) 작성 및 집행능력	120
[표 4-77] 조직폭력범죄수사-급박한 상황에서의 대처 및 물리력 사용능력	121
[표 4-78] 사이버범죄수사-사이버범죄 관련 형사법과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121
[표 4-79] 사이버범죄수사-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베이스, 모바일메신저 등에 관한 기본 지식	122
[표 4-80] 사이버범죄수사-가상화폐와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지식	122
[표 4-81] 사이버범죄수사-해외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서비스에 대한 지식	123
[표 4-82] 사이버범죄수사-사이버 범죄에 대한 초동조치 능력(사이트 차단, 증거보전, 피해자 보호 등)	123

[표 4-83] 사이버범죄수사-각종 제보를 통한 첩보수집 및 위장수사 능력	124
[표 4-84] 사이버범죄수사-각종 단서 수집 및 증거분석을 통한 피의자 추적 및 특정 능력	124
[표 4-85] 사이버범죄수사-각종 단서 및 증거분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능력(i2 등)	125
[표 4-86] 사이버범죄수사-국내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네이버, 카카오톡 등)	125
[표 4-87] 사이버범죄수사-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요청 능력(해외 기업 등)	126
[표 4-88] 사이버범죄수사-검거현장에서 휴대전화 압수 등 강제조치 능력	126
[표 4-89] 디지털포렌식-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 및 증거능력 관련 지식	127
[표 4-90] 디지털포렌식-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분석대상 사건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127
[표 4-91]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관련 지식	128
[표 4-92] 디지털포렌식-악성코드,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등 기술 관련 최신기법에 대한 지식	128
[표 4-93] 디지털포렌식-다양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장비 및 도구 활용능력	129
[표 4-94] 디지털포렌식-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	129
[표 4-95] 디지털포렌식-수집된 증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130
[표 4-96]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작성능력	130
[표 4-97] 디지털포렌식-증거물 분석과정에서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131
[표 4-98] 디지털포렌식-물리적으로 훼손(파손, 침수 등)된 매체를 복원하여 데이터를 회득하는 능력	131
[표 4-99] 디지털포렌식-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한 수사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능력	132
[표 4-100] 안보범죄수사-국가보안법 등 북한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132
[표 4-101] 안보범죄수사-북한의 대남전략 및 간첩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133
[표 4-102] 안보범죄수사-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및 경제안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133
[표 4-103] 안보범죄수사-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 관련 법령 및 증거능력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134
[표 4-104] 안보범죄수사-국가안보범죄에 대한 다양한 실무 수사사례에 대한 지식	134
[표 4-105] 안보범죄수사-국가안보범죄 유형에 따른 수사방향 설정 및 수사기법 적용능력	135
[표 4-106] 안보범죄수사-국가안보범죄 탐지를 위한 수사협조원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135
[표 4-107] 안보범죄수사-사건의 국가안보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한 범죄인지 능력	136
[표 4-108] 안보범죄수사-국가안보범죄 사건 관련인 선정 및 연결성 파악 능력	136
[표 4-109] 안보범죄수사-국가안보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감청 등)	137

[표 4-110] 안보범죄수사-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사전 심리분석 및 면담조사 능력	137
[표 4-111] 안보범죄수사-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정원, 방첩사, 국과수 등)	138
[표 4-112] 안보범죄수사-수사대상자의 이익제기 및 민원에 대한 대처능력	138
[표 4-113] 교통범죄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과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	139
[표 4-114]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 관련 각종 특별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 (특가법, 보험사기 방지법 등)	139
[표 4-115]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 관련 보험과 민사문제에 대한 지식	140
[표 4-116] 교통범죄수사-자동차의 구조나 기능에 관한 지식	140
[표 4-117] 교통범죄수사-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지식	141
[표 4-118]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CCTV 영상, 보험사기 자료 등)	141
[표 4-119]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에 대한 공소권 존재 여부 판단능력	142
[표 4-120]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조사 및 진술분석능력	142
[표 4-121] 교통범죄수사-교통사고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과 과실비율 산정능력	143
[표 4-122]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에 대한 행정벌(벌점, 범칙금, 과태료 등) 적용 능력 ·	143
[표 4-123]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 관련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능력(TCS, EDR, 이지 크러시 등)	144
[표 4-124] 교통범죄수사-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도로교통공단, 심평원 등)	144
[표 4-125]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 관련자에 대해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및 설명능력 (민원대응)	145
[표 4-126] 강력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46
[표 4-127] 형사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47
[표 4-128] 여성청소년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48
[표 4-129] 지능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49
[표 4-130] 경제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50
[표 4-131] 마약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50
[표 4-132] 조직폭력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51
[표 4-133] 사이버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52
[표 4-134] 디지털포렌식 핵심역량 최종모델	153
[표 4-135] 안보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54
[표 4-136] 교통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55



그림 차례

[그림 2-1] 국가수사본부 조직도	29
---------------------------	----

본 연구는 국내외 경찰관련 역량모델 사례와 논의를 검토한 후 역량관련 선행연구에서 활용하였던 자료수집, 역량추출 및 모델개발, 타당성 검증, 최종모델 완성의 절차에 의해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사경찰 분야를 강력범죄수사, 형사범죄수사,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지능범죄수사, 경제범죄수사, 마약범죄수사, 조직폭력범죄수사, 사이버범죄수사, 디지털포렌식, 안보범죄수사, 교통범죄수사 등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수사분야 수사관들과 경찰수사연수원 교수요원 등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지식과 기술 및 능력 등 핵심역량을 추출하여 수사분야별 핵심역량모델 초안을 개발하였다.

이후 각 수사분야별 핵심역량모델 초안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협조를 통해 각 수사분야 근무 수사관들에 대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한 결과 타당성이 적은 일부 역량들을 모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경찰수사 및 역량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역량의 명칭을 수정하여 최종 핵심역량모델을 확정하였다.

분석결과, 강력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은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 등 11개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형사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은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 등 11개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은 ‘여성청소년범죄 관련 형사법,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등 11개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지능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은 ‘강제수사 능력’ 등 10개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경제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은 ‘고소 및 고발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 능력’ 등 10개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마약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은 ‘강제수사에 대한 판단 및 실행능력’ 등 10개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조직폭력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은 ‘범죄인지를 위한 폭력조직에 대한 정보망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등 7개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사이버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은 ‘검거현장에서 강제조

2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연구

치 능력' 등 10개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디지털포렌식 핵심역량모델은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 등 9개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안보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은 '국가보안법 등 북한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등 13개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교통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과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등 12개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찰 수사분야의 확대, 변화된 형사사법환경, 다양한 수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다양한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수사분야 관련 특별법에 대한 지식,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 데이터베이스 및 프로그램 활용 능력, 추적수사 능력, 강제수사(압수수색 등) 능력, 면담조사 능력, 수사서류 작성능력 등을 수사경찰의 공통역량으로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연구결과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찰수사 연수원 교육을 포함한 각 수사분야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핵심역량모델에 포함된 역량 관련 교육시간이 부족할 경우 이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은 각 수사분야별 핵심역량을 구비한 인재를 우대하는 등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관 인사관리 및 자격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관의 역량이 강화될 경우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경찰수사의 전반적인 역량이 강화되어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핵심역량모델은 지식과 기술 및 능력 등 기술적 역량에 초점을 둔 모델이며, 설문조사 결과 타당성이 낮았던 역량들은 핵심역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일뿐 여전히 수사에는 필요한 역량일 수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해석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특정 수사분야에서 보다 포괄적인 역량모델을 도출하는 연구나 교육체계 재설계와 평가체계 수립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제 1 장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연구

서 론

조 준 택

제1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고 경찰 수사분야가 확대되어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 수사경찰의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2014년 경찰관 역량진단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여 수사경찰 분야에서 수사지원, 지능범죄수사, 지역형사, 과학수사 등 4개 분야에 대한 수사경찰 역량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수사경찰의 일부 분야의 역량모델만을 개발하는데 머무른 한계가 있으며, 이후 약 10년간 국내에서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공백이 있다.

수사권 조정 후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 것은 수사경찰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수사경찰의 낮은 역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수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수사, 여성청소년범죄수사, 마약범죄수사, 안보범죄수사, 교통범죄수사 등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수사경찰 분야와 수사권 조정 등 최근까지 변화된 수사환경을 반영하여 각 수사경찰 분야별 핵심역량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사경찰 분야를 강력범죄수사, 형사범죄수사,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지능범죄수사, 경제범죄수사, 마약범죄수사, 조직폭력범죄수사, 사이버범죄수사, 디지털포렌식, 안보범죄수사, 교통범죄수사 등 11

개 분야로 분류하고 각 수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 등에 대한 심층면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양한 수사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핵심역량 모델을 개발한다.

이렇게 도출된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연구결과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찰수사 연수원 교육을 포함한 각 수사분야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수사분야별 핵심역량을 구비한 인재를 우대하는 등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관 인사 관리 및 자격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관의 역량이 강화될 경우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경찰수사의 전반적인 역량이 강화되어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수사경찰에 대한 핵심역량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문헌연구, 조사연구,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국내외 논문 및 보고서 자료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역량(competency)의 개념과 구성요소, 역량모델의 개발과정 및 절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수사경찰 분야를 포함한 경찰역량모델과 관련한 국내 주요 선행연구들과 해외사례로서 미국의 범죄수사 역량모델을 검토하였다.

둘째, 조사연구는 크게 3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국가수사본부의 협조를 얻어 경찰수사연수원 강력범죄수사학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사이버수사학과, 안보수사학과 등의 주요 교육과정 현황을 조사하여 현재 국가수사본부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역량들을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역량관련 선행연구에서 활용하였던 자료수집-역량추출 및 모델개발-타당성 검증-최종모델 완성 등 4단계 절차에 의해 역량모델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수사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수사관들과 경찰수사연수원 교수요원 등을 대상으로 행동사건 면담을 실시하여 각 수사분야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추출하고 지식과 기술(능력) 중심으로 모형화하였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각 수사분야별 핵심역량모델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협조를 통해 각 수사분야 근무 수사관들에 대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진이 각 수사분야 경찰관 면담을 통해 개발한 역량모델에 대해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핵심역량모델을 최종 확정하였다. 관련 전문가는 경찰수사 경력을 보유한 대학교수와 경찰수사연수원 교수요원, 역량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전문가들로부터 각 역량들의 구성과 명칭 등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수렴하였고 연구진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역량모델을 확정하였다.

2.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 검토에서는 역량 및 역량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개발절차에 대해 검토한 후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을 개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경찰관에게 필요한 공통적인 역량을 모델화한 최초의 연구인 2012년 경찰청 용역연구를 시작으로 지역경찰관의 역량모델을 개발한 연구들, 그리고 2021년에 수행된 최근 연구인 경찰청 정보기능 소속으로 집회참가자들과 갈등을 관리하는 역량을 맡는 대화경찰의 역량모델을 개발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수사경찰 분야 역량모델 개발을 최초로 시도한 2014년 경찰청 용역연구 보고서에서 다룬 지역형사, 지능범죄수사, 과학수사, 수사지원 분야의 역량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한편, 해외사례로서 2020년에 미국 내무부에서 발간한 범죄수사 역량모델(Criminal Investigation Competency Model) 보고서에서 수록되어 있는 범죄수사의

8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연구

일반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사경찰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교육과정들의 교과목들도 검토하였다.

제3장 수사경찰 대상 면담조사 및 핵심역량모델 초안 개발에서는 강력범죄수사, 형사범죄수사,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지능범죄수사, 경제범죄수사, 마약범죄수사, 조직폭력범죄수사, 사이버범죄수사, 디지털포렌식, 안보범죄수사, 교통범죄수사 등 11개 수사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찰청에서 추천을 받은 수사관들과 경찰수사연수원 교수요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담자료를 분석하여 각 수사분야별로 필요한 핵심역량들을 추출하였으며 지식과 기술(능력)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핵심역량모델 초안을 도출하였다.

제4장 핵심역량모델 초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최종모델 도출에서는 수사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협조를 얻어 각 수사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핵심역량들의 타당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와 전문가 자문의견, 연구진 논의를 종합하여 핵심역량모델 초안을 수정한 최종 핵심역량모델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제 2 장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 검토

조 준 택

제2장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 검토

제1절 | 역량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경찰역량 연구 검토

1. 역량에 대한 이론적 논의

가. 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

역량(competency)에 대하여 최초로 정의를 시도한 McClelland에 따르면 역량은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이 우수한 성과를 내도록 하는 내재적 특성이라고 개념화하였다.¹⁾ 이와 같이 역량은 우수한 성과와 관련된 내재적 특성으로 정의되지만,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외적인 행동을 통해 표현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을 의미한다.²⁾

이러한 역량의 구성요소로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요인들은 지식, 기술, 태도이다.³⁾ 이 중 지식은 전문지식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이고, 기술은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능력이며, 태도는 고객지향성 등 직무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자세이다.⁴⁾ 이를 종합하면,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 등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도록 하는 행동특성으로 볼 수 있다.⁵⁾

1) McClelland, D. C.,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973, pp.1-14

2) 박노섭·장윤식·강 옥·장준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개발", 경찰청, 2015, 13면

3) 김창윤, "신입경찰 역량기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1호, 2010, pp.35-70, 박선영·손원빈, "신입경찰 역량기반 교육모델 도입방안",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2017, pp. 71-96 등

4) 박노섭·장윤식·강 옥·장준원, 앞의 보고서, 13면

5) 고재권·심희섭, "중간관리자 역량모델 도출 및 기본교육 개선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8,

나. 역량모델과 개발과정

역량은 조직의 핵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는 행동특성이므로 조직과 직무에 따라 필요한 역량이 다를 수 있다.⁶⁾ 따라서 조직과 직무별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의 요소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을 역량모델이라고 한다.⁷⁾

역량모델에 포함된 역량들은 공통역량, 계층역량, 직무역량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통역량은 조직의 목표달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가치나 행동과 관련된 역량이며, 계층역량은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과 관련된 역량이며, 직무역량은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관련된 역량이다.⁸⁾ 이러한 역량모델은 조직에 적합한 인재 선발과 배치, 교육훈련, 평가와 보상 등과 인사 및 조직관리 운영과 관련된다.⁹⁾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준거집단과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준거집단을 활용하는 방법은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준거집단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역량모델의 타당성 확보에 유리하여 역량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조직을 대상으로 활용된다. 반면,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역량모델을 개발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역량모델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이며,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지만 역량모델의 타당성이 낮을 수 있다.¹⁰⁾

홍성연은 이러한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4단계 절차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1)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대상집단을 선정하고 면담과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역량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2) 역량추출 및 모형개발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역량을 추출하고 체계화하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역량모델을 개발한다. 3) 타당성

26면

6) 표선영·홍세은·정제용, “대화경찰 역량모델에 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22권 제2호, 2022, 35면

7) 임창호·정세종·김학범, “경찰 중간관리자의 인사기준체계 수립 및 리더십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21, 14면

8) 고재권·심희섭, 앞의 보고서, 27면

9) 김창윤, 앞의 논문, 39면

10) 표선영·홍세은·정제용, 앞의 논문, 36면

검토 단계에서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 분석하여 개발된 역량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4) 최종수정 및 모형완성 단계에서는 타당성 검토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하여 최종모형을 완성한다.¹¹⁾

2. 경찰역량모델 관련 선행연구 검토

가. 경찰의 공통역량모델에 대한 연구

국내에서 수행된 경찰 핵심역량모델과 관련된 연구의 수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최초의 연구는 경찰청(2012)에서 수행한 “현장중심 역량강화를 위한 경찰 교육체계 수립용역” 연구로 볼 수 있다.¹²⁾ 이 연구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관의 현장업무 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찰관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모델을 가치역량(5개), 직무공통역량(11개), 리더십역량(11개)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이 중 직무공통역량에는 상황판단력 등 14가지 역량이 있으며 이러한 역량들의 정의는 아래 [표 2-1]에 정리되어 있다.

» [표 2-1] 경찰관 직무공통역량

연번	직무역량	정의
1	상황판단력	상황별 대처요령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훈련을 바탕으로 현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
2	공정한 업무처리	주관적 판단이나 사적 이해관계에 의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
3	업무 성실성	주어진 업무를 일정에 맞게 책임감 있게 수행
4	통합적 사고능력	업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으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대비
5	의사소통	조직 내외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와 공감을 구하며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
6	팀워크	업무수행시 팀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어려운 문제를 가진 팀원들을 자발적으로 조력
7	문제해결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제거하며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

11) 홍성연, “원격대학 학습자 지원체제 개선을 위한 학습자 역량모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47면

12) 경찰청, “현장중심 역량강화를 위한 경찰 교육체계 수립용역”, 2012

14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연구

연번	직무역량	정의
8	법규 이해 및 적용	법률, 판례의 세부사항과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업무처리에 실수가 없도록 함
9	업무 적극성	관례를 따르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진취적으로 사고하여 더욱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행동
10	정보수집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유익하게 활용
11	대인관계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하여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여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

※ 표작성의 근거 : 경찰청(2012) 표 재구성

나. 지역경찰관 역량모델 개발연구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모델이 개발되었지만, 경찰이 치안상황관리(지역경찰), 생활안전,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등 다양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별 기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필요한 역량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먼저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관들에게 필요한 역량모델을 개발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최수민¹³⁾은 앞서 경찰청의 연구와 유사하게 지역경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경찰관에게 필요한 역량모델을 개발하였다. 지역경찰관들에 대한 면접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발된 역량모델에는 업무공정성, 업무 성실성, 업무 적극성, 고객지향성, 회복탄력성, 업무지식 이해능력, 관할특성 파악능력, 의사소통능력, 상황대응 민첩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능력, 체력, 팀워크, 대상식별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14가지 역량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정의는 아래 [표 2-2]와 같다.

13) 최수민, “지역경찰의 역량모델 개발과 교육요구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표 2-2] 지역경찰관 역량모델

연번	역량	정의
1	업무 공정성	주관적 판단이나 사적 이해관계에 편중되지 않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
2	업무 성실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 끈기 있게 업무를 처리
3	업무 적극성	관례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탐구
4	고객지향성	주민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맞춤형 업무처리를 통해 주민만족도 제고
5	회복탄력성	업무 중 각종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고 적응
6	업무지식 이해능력	법률, 판례, 업무매뉴얼 등의 내용과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
7	관할특성 파악능력	관할구역의 제반특성을 잘 파악하여 업무처리에 적용
8	의사소통능력	상대방을 경청하여 의견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여 소통할 수 있음
9	상황대응 민첩성	무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황별 대처요령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훈련하여 각종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음
10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능력	효과적인 협력치안을 위해 다양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11	체력	운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야간근무와 순찰 등 지역경찰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음
12	팀워크	팀원으로서 동료와 협력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업무정보를 상호 공유함
13	대상식별능력	신고와 CCTV 등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통해 범의자 등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음
14	문제해결능력	올바른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피드백하여 향후 문제발생시에도 잘 처리할 수 있음

※ 표작성의 근거 : 최수민(2015) 표 재구성

다음으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임창호와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는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등 경찰 중간관리자에 대한 인사기준체계 수립과 리더십 확보방안 차원에서 지역경찰관의 핵심역량모델을 개발하였다.¹⁴⁾ 지역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순경부터 경정까지 경찰관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한 핵심역량모델에는 업무지식, 성실성, 적극성, 공정성, 모범, 위기관리, 팀워크, 지역주민 지향성, 의사소통, 조직목표 설정, 갈등관리 등 11가지 역량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역량의 정의는 아래 [표 2-3]과 같다.

14) 임창호·정세종·김학범, “경찰 중간관리자의 인사기준체계 수립 및 리더십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21

» [표 2-3] 지역경찰 핵심역량모델

연번	핵심역량	정의
1	업무지식	관할구역 현황, 법률, 판례, 업무관련 각종 지침과 최근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2	성실성	정성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역경에도 끈기를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
3	적극성	더욱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관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자세
4	공정성	주관적 판단과 사적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5	모범	타 구성원들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6	위기관리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한 판단과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7	팀워크	팀원으로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동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능력
8	지역주민 지향성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들을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9	의사소통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도를 조직내외부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10	조직목표 설정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명확히 제시하는 능력
11	갈등관리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 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의 단결을 제고하는 능력

※ 표작성의 근거 : 임창호 외(2021) 표 재구성

다. 대화경찰 역량모델 개발 연구

지역경찰관 외에도 2018년부터 경찰의 정보기능 소속으로 집회참가자들과의 갈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대화경찰의 역량모델을 개발한 연구도 수행되었다.¹⁵⁾ 이 연구에서는 경찰청에서 우수 대화경찰관으로 선정된 경찰관들을 면담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화경찰 역량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 모델에는 소통, 현장 위기대응, 정보습득 및 분석, 주체성, 심리적 회복력 등 5가지 역량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역량군의 정의는 아래 [표 2-4]와 같다.

역량군에 포함된 개별역량을 살펴보면 소통에는 의사전달, 경청, 공감능력이 포함되고, 현장위기대응에는 조정과 유연성이 포함되며, 정보습득 및 분석에는 사전준비

15) 표선영·홍세은·정제용, “대화경찰 역량모델에 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22권 제2호, 2022, pp. 29-66

와 사후분석이 포함되고, 주체성에는 소명감과 민감성이 포함되며, 심리적 회복력에는 감정조절과 탄력성이 포함된다.

▶▶ [표 2-4] 대화경찰 역량모델

연번	역량군	정의	개별역량
1	소통	집회참가자의 생각을 경청하고 정보를 이해하며, 자신이 보유한 정보와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역량	의사전달, 경청, 공감능력
2	현장 위기대응	각종 위기상황에서 현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역량	조정, 유연성
3	정보습득 및 분석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습득 및 분석 역량	사전준비, 사후분석
4	주체성	능동적인 자세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역량	소명감, 민감성
5	심리적 회복력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역량	감정조절, 탄력성

※ 표작성의 근거 : 표선영 외(2022) 표 재구성

제2절 | 수사경찰 역량 관련 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

1. 수사경찰 역량진단 프로그램 개발연구

국내에서 수사경찰 분야에 대하여 최초로 역량모델 개발을 시도한 연구는 2014년에 경찰청 용역연구로 수행된 경찰관 역량진단 프로그램 개발연구로 확인된다.¹⁶⁾ 이 연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수사경찰뿐만 아니라 생활안전과 교통 등 경찰 각 기능별 표준역량모델을 개발하였는데, 2014년도에 연구가 수행된 수사경찰의 경우 지역형사, 지능범죄수사, 과학수사, 수사지원 등 4가지 분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표준역량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중 지역형사와 지능범죄수사 분야의 실무자 역량들과 정의는 아래 [표 2-5]와 같은데, 지역형사 분야 역량에는 고소고발사건 처리, 심문, 용의자 프로필 개발, 증거수집, 첩보수집, 현장상황 문서화 역량들이 있고, 지능범죄수사 분야 역량에는 강제조

16) 정진철·이종범·홍은선·안주리·홍성표·류지은, 경찰관 역량진단 프로그램 개발, 경찰청, 2014

치, 민원대응, 심문, 증거관리, 증거수집, 지능범죄사건 추론 역량들이 있다.

» [표 2-5] 지역형사와 지능범죄수사 분야 실무자 역량

분야	역량	정의
지역형사	고소고발사건 처리	고소고발사건의 절차와 상황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
	심문	대상자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심문할 수 있는 역량
	용의자 프로필 개발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된 용의자 프로필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
	증거수집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
	첩보수집	정보원과 첩보의 출처를 확보하고 첩보의 신빙성을 평가하며 제보자를 보호하는 역량
	현장상황 문서화	현장 도착시 상황을 문서로 정리할 수 있는 역량
지능범죄수사	강제조치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
	민원대응	민원인의 각종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심문	대상자에 대한 개인의 편견을 배제하여 심문할 수 있는 역량
	증거관리	증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증거수집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
	지능범죄사건 추론	지능범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

※ 표작성의 근거 : 정진철 외(2014) 표 재구성

또한 과학수사와 수사지원 분야 실무자 역량들과 정의는 아래 [표 2-6]과 같은데, 과학수사 분야 역량에는 범죄경력 결격여부 심사, 자료관리 및 문서화, 정보분석, 증거관리, 현장보존, 현장상황 문서화 역량들이 있고, 수사지원 분야 역량에는 상황대응, 유치장 점검 및 지도, 자료관리 및 문서화, 정보분석, 지원계획 집행 역량들이 있다.

» [표 2-6] 과학수사와 수사지원 분야 실무자 역량

분야	역량	정의
과학수사	범죄경력 결격여부 심사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과 자격 결격여부를 판단하는 역량
	자료관리 및 문서화	업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서로 정리하는 역량
	정보분석	업무관련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
	증거관리	증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
	현장보존	현장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

분야	역량	정의
수사 지원	현장상황 문서화	현장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문서로 정리하는 역량
	상황대응	직면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유치장 점검 및 지도	유치장 관련 각종 사안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역량
	자료관리 및 문서화	업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서로 정리하는 역량
	정보분석	업무관련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
	지원계획 집행	수립된 지원계획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역량

※ 표작성의 근거 : 정진철 외(2014) 표 재구성

2. 미국 내무부 범죄수사 역량모델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 관련 참고할만한 해외사례로서 미국 내무부(U.S. Department of the Interior)에서 2020년도에 발간한 범죄수사 역량모델(Criminal Investigation Competency Model) 보고서가 있다.¹⁷⁾

보고서를 보면 범죄수사 활동에 요구되는 일반적 역량(general competency)과 기술적 역량(technical competency)을 [표 2-7]과 같이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반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가. 일반적 역량

먼저 범죄수사활동에 요구되는 일반적 역량들은 아래와 같이 23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일반적 역량들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책임성(Accountability)

측정가능한 고품질의 수사결과에 대해 자신과 동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실수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확립된 통제 시스템 및 규칙을 준수한다.

2)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Attention to Detail)

수사할 때 철저하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전에 제시된 정보를 회상한다.

17)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Office of Human Capital (2020), Criminal Investigation Competency Model

3)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적인 방식으로 갈등, 고충, 대립 또는 불일치를 관리하고 해결한다.

4)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

상상력을 사용하여 상황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개발하고 문제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립된 방법과 절차를 적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방법을 설계한다.

5)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고객의 요구를 평가하고, 정보나 지원을 제공하며,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고객과 협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6) 의사결정(Decision Making)

건전하고 정보에 입각한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며, 결정의 영향과 의미를 인식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고 변화를 일으킨다.

7) 유연성(Flexibility)

변화와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이며, 새로운 정보, 변화하는 조건 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대응하여 행동이나 수사 방식을 적응하고, 모호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8) 영향/협상(Influencing/Negotiating)

다른 사람이 권고를 수용하고 협력하거나 행동을 변화하도록 설득한다. 합의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상한다.

9)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와 방법을 알고 있으며,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10) 청렴성/정직(Integrity/Honesty)

조직의 청렴성 유지에 기여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보여주며 이러한 표준을 위반하는 것이 조직, 자신 및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다.

11) 대인관계 기술(Interpersonal Skills)

타인에 대한 이해심, 친근감, 예의, 재치, 공감, 관심 및 공손함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타인과의 효과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데, 어렵거나 적대적이거나 괴로워하는 개인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다양한 배경과 상황을 가진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문화적 다양성, 인종, 성별, 장애 및 기타 개인차에 민감하다.

12) 학습(Learning)

효율적인 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한다. 자기주도 학습 및 개발을 위해 교육, 피드백 또는 기타 기회를 사용한다.

13) 법률, 정부 및 법학(Legal, Government and Jurisprudence)

법률, 법규, 법원 절차, 판례, 법적 관행 및 문서, 정부 규정, 행정 명령, 기관 규칙, 정부 조직 및 기능, 민주적 정치 절차에 대한 지식

14) 구두 의사소통(Oral Communication)

정보를 개인 또는 집단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정보의 대상 및 특성을 고려한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구두 발표를 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비언어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15) 조직 인식(Organizational Awareness)

조직의 사명과 기능, 조직 내에서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인식한다. 조직의 프로그램, 정책, 절차, 규칙 및 규정이 포함된다.

16) 협력(Partnering)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경계를 넘어 협력하여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공통 목표를 달성한다.

17) 계획 및 평가(Planning and Evaluating)

수사업무를 구성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자원요구 사항을 결정한다. 달성하기 위한 단기 또는 장기 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조직 또는 조직 내 다른 부서와 업무를 조정하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평가한다.

18) 문제해결(Problem Solving)

문제를 식별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성을 결정한다. 건전한 판단을 활용하여 대안을 생성 및 평가하고 권고를 제시한다.

19) 추론(Reasoning)

사실, 자료나 기타 정보를 설명하는 규칙, 원칙 또는 관계를 식별한다. 정보를 분석하고 올바른 추론을 하거나 정확한 결론을 도출한다.

20) 회복력(Resilience)

압력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역경 속에서도 낙관적이고 끈기를 유지한다. 좌절에서 빠르게 회복한다.

21) 자기관리(Self-Management)

잘 정의되고 현실적인 개인 목표를 설정하고 적시에 과제를 완료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주도권, 노력 및 헌신을 보여준다. 최소한의 감독으로 작업하고 달성하려는 동기가 부여되어 있으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준다.

22) 팀워크(Teamwork)

협력, 자부심, 신뢰 및 집단의 정체성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헌신과 팀 정신을 기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료들과 협력한다.

23) 보고서 작성(Writing)

올바른 문법, 구두점 및 철자를 사용하여 간결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목표로 하는 청중에게 적합한 기술 자료를 포함할 수 있는 서면 정보를 생성한다.

나. 기술적 역량

다음으로 범죄수사활동에 요구되는 기술적 역량들은 아래와 같이 25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기술적 역량들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고조사(Accident Investigation)

사고 현장 보존, 근본 원인 분석, 증거물 탐지 및 처리 등 사고 조사와 관련된 지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지식

2) 행정법(Administrative Law)

소송 준비 및 합의와 관련된 절차, 규정, 지침 및 판례를 포함한 주 및 연방 행정법에 대한 지식

3) 항공기 운항(Aircraft Operation)

항공기의 사용 목적에 맞는 정책, 절차, 관행 및 적절한 인증 준수에 대한 지식

4) 탄약 및 폭발물(Ammunition and Explosives)

탄약 및 폭발물과 용도, 상호 작용, 위험성, 생산, 취급, 보관, 책임 및 폐기에 대한 지식

5) 체포(Arrest)

미란다 원칙과 같은 적절한 물리력 사용 및 체포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여 범죄 용의자 체포에 사용되는 법률,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식과 범죄 용의자 체포에 대한 숙련도

6) 규정 준수(Compliance Inspection)

규정 준수 및 기준의 적용과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과태료, 벌금 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규정 준수 문의와 관련된 지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지식

7) 헌법(Constitutional Law)

미국 헌법과 관련된 법률 및 법적 판례에 대한 지식

8) 범죄수사(Criminal Investigation)

증거 탐지 및 처리, 적절한 사실 추론 및 결론 도출을 포함하여 범죄 수사와 관련된 지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지식

9) 형법(Criminal Law)

증거 채택 및 기소와 관련된 절차, 규정, 지침 및 판례를 포함한 주 및 연방 형법에 대한 지식

10) 자료 관리(Data Management)

모델링, 자료 백업, 자료 복구, 데이터 사전,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폐기, 데이터 표준화 프로세스 등 자료 관리의 원칙, 절차 및 도구에 대한 지식

11) 구금(Detention)

처리, 지문 채취, 구금 요청, 구금자에게 혐의 통보, 이송 등 범죄 용의자 구금에 대한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지식

12) 총기(Firearms)

탄약, 사거리 규정, 안전 및 물리력 사용 정책 등 총기 사용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지식

13) 화재 조사(Fire Investigation)

원인 및 발화지 조사, 화재 행동, 안전, 형사 및 민사 절차, 증거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지식

14) 초동 조치(First Response)

응급 처치, 구조 기술 및 위협 평가와 같은 응급상황 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

15) 법과학(Forensics)

증거의 전달 및 수집, 증거의 종류와 규칙 및 법적 절차를 포함한 민사, 형사 또는 행정 심리의 절차와 증거수집에 대한 지식

16) 위험 물질(Hazardous Materials)

유해 물질 및 폐기물의 용도, 상호 작용, 위험성, 생산, 취급, 보관 및 폐기에 대한 지식

17) 공공 안전 및 보안(Public Safety and Security)

정보 작전, 공공 안전 및 보안 작전, 산업 보건 및 안전, 수사 및 조사 기법, 또는 사람, 데이터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규칙, 규정, 예방 기법에 대한 지식

18) 제지 및 자기방어(Restraint and Self-Defense)

자기방어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모델과 지침을 포함하여 적대적인 개인을 제지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과 방법에 대한 지식

19)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실패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위험 평가 및 완화에 사용되는 원칙, 방법 및 도구에 대한 지식

20) 수색(Search)

차량, 문서, 건물, 물품 등 개인 재산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는 법률, 원칙 및 방법에

대한 지식

21) 보안(Security)

기밀 정보의 취급, 운송 및 보호에 대한 요건과 보안 사고의 적절한 보고를 포함하여 인력, 시설 및 정보 보안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지식

22) 압수(Seizure)

증거 보관 연속성 요건 및 압수된 자산을 분류하고 보호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압수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지식

23) 정보원 관리(Source Management)

법정 증언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기밀 제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인적 정보원을 식별 및 모집하고 사실 유형을 확립하는 능력; 그러한 정보원을 다루는 법률,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지식

24) 감시(Surveillance)

전자, 광학 및 비디오 감시 방법 및 도구의 공개 및 은밀한 방법과 배포를 포함한 감시 및 대 감시 기술,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지식

25) 차량 운영(Vehicle Operations)

자동차, 트럭, 오프로드 차량 또는 선박을 포함한 자동차 운전 절차에 대한 지식

» [표 2-7] 미국 내무부 범죄수사 일반적 역량 및 기술적 역량

연번	일반적 역량	기술적 역량
1	책임성(Accountability)	사고조사(Accident Investigation)
2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Attention to Detail)	행정법(Administrative Law)
3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항공기 운항(Aircraft Operation)
4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	탄약 및 폭발물(Ammunition and Explosives)
5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체포(Arrest)
6	의사결정(Decision Making)	규정 준수(Compliance Inspection)
7	유연성(Flexibility)	헌법(Constitutional Law)
8	영향/협상(Influencing/Negotiating)	범죄수사(Criminal Investigation)
9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형법(Criminal Law)
10	청렴성/정직(Integrity/Honesty)	자료 관리(Data Management)
11	대인관계 기술(Interpersonal Skills)	구금(Detention)
12	학습(Learning)	총기(Firearms)
13	법률, 정부 및 법학(Legal, Government and Jurisprudence)	화재 조사(Fire Investigation)
14	구두 의사소통(Oral Communication)	초동 조치(First Response)
15	조직 인식(Organizational Awareness)	법과학(Forensics)
16	협력(Partnering)	위험 물질(Hazardous Materials)
17	계획 및 평가(Planning and Evaluating)	공공 안전 및 보안(Public Safety and Security)
18	문제해결(Problem Solving)	제지 및 자기 방어(Restraint and Self-Defense)
19	추론(Reasoning)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20	회복력(Resilience)	수색(Search)
21	자기관리(Self-Management)	보안(Security)
22	팀워크(Teamwork)	압수(Seizure)
23	보고서 작성(Writing)	정보원 관리(Source Management)
24		감시(Surveillance)
25		차량 운영(Vehicle Operations)

※ 표작성의 근거 :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2020) 재구성

제3절 | 수사경찰 기능 및 교육과정 검토를 통한 역량탐색

본 절에서는 수사경찰 기능과 교육과정 검토를 통해서 수사경찰에 대한 역량을 탐색하였다. 먼저 연구의 대상인 수사경찰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조직과 사무분장을 살펴보았다.

1. 국가수사본부 조직 및 사무분장

본 절에서는 수사경찰 기능과 교육과정 검토를 통해서 수사경찰에 대한 역량을 탐색하였다. 먼저 연구의 대상인 수사경찰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조직과 사무분장을 살펴보았다. 국가수사본부에는 아래 [그림 2-1]과 같이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인권담당관, 과학수사관리관, 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이 있으며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을 관할하는 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의 기능별 주요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수사국은 경제범죄수사과에서 경제범죄수사와 금융범죄수사를 담당하고,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서는 반부패수사와 공공범죄수사를 담당한다. 중대범죄수사과에서는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과 같은 기업과 조세관련 범죄, 주가조작 등 금융이나 증권 관련 범죄,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 직권남용이나 뇌물 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와 관련된 각종 부패나 비리 관련 범죄, 서로 다른 지역에 관할이 있는 사건 등을 수사한다. 또한 범죄정보과에서는 범죄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형사국은 강력범죄수사과에서 강력범죄와 폭력범죄수사,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를 담당하고, 마약조직범죄수사과에서는 마약범죄, 조직범죄,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 수사기획 및 지도를 담당한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서는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수사업무, 성폭력 수사업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사이버수사국은 사이버수사기획과에서 사이버범죄 수사 관련 기획업무와 사이버 안전을 위한 법령 제개정 업무, 사이버범죄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 및 배포, 사이버범죄 최신수사기법 연구 및 개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및 공조업무, 기타 사이버

범죄의 예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는 사이버범죄 사건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한편,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각종 전략을 연구개발하고 사이버범죄 신고업무를 처리한다.

사이버테러대응과에서는 사이버테러범죄 사건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한편, 사이버안보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테러범죄 발생시 대응 및 피해회복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기획 및 조정 업무뿐만 아니라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실제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실 운영과 유관기관 협력 등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안보수사국은 안보기획관리과에서 안보범죄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과 교육, 안보경찰의 인사와 예산업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안보상황 관리 등을 담당한다. 안보수사지휘과에서는 안보수사 지휘, 감독,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분석 지원, 사이버 안보 관련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을 담당한다. 안보범죄분석과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 등 각종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안보범죄정보 관련 협력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안보수사과에서는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첩보수집 업무를 담당한다.

» [그림 2-1] 국가수사본부 조직도



※ 출처: 경찰청(www.police.go.kr)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사경찰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수사연수원의 수사분야별 주요 실무교육과정들의 교과목 체계를 검토하여 현재 국가수사본부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역량들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협조를 통해 경찰수사연수원 강력범죄수사학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사이버수사학과, 안보수사학과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들의 교과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강력범죄수사 교육과정

강력범죄수사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는 강폭력범죄수사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목 체계는 아래 [표 2-8]과 같다. 범죄심리학이 소양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직무 전문과목으로 강제수사(체포구속, 압수수색집행이론 및 실습), 수사실무연습(체포·구속·압수·통신 영장 작성), 개인정보의 보호와 CCTV 수사, 진술증거 수사, 추적 수사, 안전사고 수사,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공판연계 수사보고서, 강력범죄수사, 변사사건 수사, 다크웹 자금추적수사, 수사기법 등 우수사례 연구과제 세미나 등의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 [표 2-8] 강폭력범죄수사과정 교과목 체계

구분	교과목
소양과목	공직가치(회복적 경찰활동 등)
	성·인권 감수성 및 2차 피해 방지
직무전문과목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데이트폭력) 수사
	성폭력사건 수사 및 법리분석
	압수수색집행 이론 및 실습
	통신추적수사 이론 및 실습
	디지털 증거의 이해 및 CCTV 추적기법
	공판연계 수사보고서 작성
	피해자 조사기법
	수사면담기법 이론 및 실습
	불송치 결정서 등 수사서류 작성 이론·실습
	현장 사례 연구 발표

※ 표작성의 근거 : 경찰청 내부자료 재구성

3. 형사범죄수사 교육과정

형사범죄수사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는 신입수사관(형사) 전문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목 체계는 아래 [표 2-9]와 같다. 직무전문과목으로 단서별 사건접수 및 고소장 분석, 주요 죄명별 구성요건과 수사착안사항,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진술청취 및 조서작성, 수사결과보고서 작성실습, 불송치결정서 작성실습, 대인적 강제수사 이론 및 영장신청서 작성실습, 통신자료 허가신청 등의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 [표 2-9] 신입수사관(형사) 전문교육과정 교과목 체계

구분	교과목
직무전문과목	단서별 사건접수 및 고소장 분석
	주요 죄명별 구성요건과 수사착안사항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진술청취 및 조서작성
	수사결과보고서 작성실습
	불송치결정서 작성실습
	대인적 강제수사 이론 및 영장신청서 작성실습
	통신자료 허가신청

※ 표작성의 근거 : 경찰청 내부자료 재구성

4.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교육과정

여성청소년범죄수사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는 여청수사실무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목 체계는 아래 [표 2-10]과 같다. 회복적 경찰활동, 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 및 2차 피해방지 등이 소양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직무 전문과목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데이트폭력) 수사, 성폭력사건 수사 및 법리분석, 압수수색집행 이론 및 실습, 통신추적수사 이론 및 실습, 디지털 증거의 이해 및 CCTV 추적기법, 공판연계 수사보고서 작성, 피해자 조사기법, 수사면담기법 이론 및 실습, 불송치 결정서 등 수사서류 작성 이론·실습, 현장 사례 연구 발표 등의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 [표 2-10] 여청수사실무과정 교과목 체계

구분	교과목
소양과목	공직가치(회복적 경찰활동 등)
	성·인권 감수성 및 2차 피해 방지
직무전문과목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데이트폭력) 수사
	성폭력사건 수사 및 법리분석
	압수수색집행 이론 및 실습
	통신추적수사 이론 및 실습
	디지털 증거의 이해 및 CCTV 추적기법
	공판연계 수사보고서 작성
	피해자 조사기법
	수사면담기법 이론 및 실습
	불송치 결정서 등 수사서류 작성 이론·실습
	현장 사례 연구 발표

※ 표작성의 근거 : 경찰청 내부자료 재구성

5. 지능범죄수사 교육과정

지능범죄수사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는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목 체계는 아래 [표 2-11]과 같다. 직무 전문과목으로 지능범죄수사개관, 범죄정보수집, 금융거래정보의 이해와 활용, 자금세탁의 이해, 피의자신문기법, 영장에 의한 압수, 공판연계수사보고서 작성, 게임산업법, 유사수신행위법, 상표법, 공직선거법 등 특별법 수사, 기타 반부패범죄, 공공범죄 수사사례 등의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 [표 2-11]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정 교과목 체계

구분	교과목
직무전문과목	지능범죄수사개관
	범죄정보수집
	금융거래정보의 이해와 활용
	자금세탁의 이해
	피의자신문기법
	영장에 의한 압수
	공판연계수사보고서 작성
	게임산업법, 유사수신행위법, 상표법, 공직선거법 등 특별법 수사
	기타 반부패범죄, 공공범죄 수사사례

※ 표작성의 근거 : 경찰청 내부자료 재구성

6. 경제범죄수사 교육과정

경제범죄수사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 경제범죄수사과정의 교과목 체계는 아래 [표 2-12]와 같다. 직무 전문과목으로 수사절차와 관계법령, 공판연계 수사보고서 작성, 금융영장신청서·동의서 작성과 집행, 피의자 신문기법,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불송치결정서 작성, 금융거래정보의 이해와 활용, 자금세탁의 이해, 경제범죄수사 사례, 재산범죄의 요건과 쟁점, 권리행사방해 실무 및 사례, 물건변동과 재산범죄, 민사집행법 등의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 [표 2-12] 경제범죄수사과정 교과목 체계

구분	교과목
직무전문과목	수사절차와 관계법령
	공판연계 수사보고서 작성
	금융영장신청서·동의서 작성과 집행
	피의자 신문기법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불송치결정서 작성
	금융거래정보의 이해와 활용
	자금세탁의 이해
	경제범죄수사사례
	재산범죄의 요건과 쟁점
	권리행사방해 실무 및 사례
	물건변동과 재산범죄
	민사집행법

※ 표작성의 근거 : 경찰청 내부자료 재구성

7. 마약범죄수사 교육과정

마약범죄수사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는 마약류범죄수사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목 체계는 아래 [표 2-13]과 같다. 직무전문과목으로 마약류범죄수사개관, 신종마약류의 유형 및 감정의뢰, 마약류범죄 첩보 수집 심화(다크웹·웹크롤링 등 활용), 암호화폐, 공개출처정보 등을 통한 마약사범 추적, 통신·사이버추적 이론 및 실습, 마약류범죄 대인적, 대물적 강제처분(디지털증거 압수 등), 마약사범 금융거래정보 추적, 마약류범죄 수익 몰수, 유관기관(관세청 등) 및 국제공조수사, 수사정보분석,

진술증거수사, 마약류범죄 수사사례, 수사서류 작성, 조직범죄 수사, 연구과제 세미나 등의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 [표 2-13] 마약류범죄수사과정 교과목 체계

구분	교과목
직무전문과목	마약류범죄수사개관, 신종마약류의 유형 및 감정의뢰
	마약류범죄 첩보 수집 심화(다크웹·웹크롤링 등 활용)
	암호화폐, 공개출처정보 등을 통한 마약사범 추적
	통신·사이버추적 이론 및 실습
	마약류범죄 대인적, 대물적 강제처분(디지털증거 압수 등)
	마약사범 금융거래정보 추적, 마약류범죄 수익 몰수
	유관기관(관세청 등) 및 국제공조수사
	수사정보분석, 진술증거수사
	마약류범죄 수사사례
	수사서류 작성(불송치 결정서)
	조직범죄 수사
	연구과제 세미나

※ 표작성의 근거 : 경찰청 내부자료 재구성

8. 조직폭력범죄수사 교육과정

조직폭력범죄수사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 조직폭력범죄수사과정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목 체계는 아래 [표 2-14]와 같다. 직무 전문과목으로 조직범죄 법령 판례, 조직폭력범죄 수사사례, 폭력범죄 수사, 대면편취 보이스 피싱 수사사례, 진술증거수사, 추적수사 등의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 [표 2-14] 조직폭력범죄수사과정 교과목 체계

구분	교과목
직무전문과목	조직범죄 법령 판례
	조직폭력범죄 수사사례
	폭력범죄 수사
	대면편취 보이스 피싱 수사사례
	진술증거수사
	추적수사

※ 표작성의 근거 : 경찰청 내부자료 재구성

9. 사이버범죄수사 교육과정

사이버범죄수사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는 사이버수사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목 체계는 아래 [표 2-15]와 같다. 직무전문과목으로 인터넷추적 이론 및 실습, 가상자산의 이해 및 추적, 사이버수사 판례 분석, 사이버수사국제공조, 통신사 회신자료 분석 기법, 다크웹과 모바일메신저, 디지털증거 압수의 이해, 디지털증거분석 절차 및 사례, 사이버수사 초동조치, 사이버수사서류작성기법 등의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 [표 2-15] 사이버수사과정 교과목 체계

구분	교과목
직무전문과목	인터넷추적 이론 및 실습
	가상자산의 이해 및 추적
	사이버수사 판례 분석
	사이버수사국제공조
	통신사 회신자료 분석 기법
	다크웹과 모바일메신저
	디지털증거 압수의 이해
	디지털증거분석 절차 및 사례
	사이버수사 초동조치
	사이버수사서류작성기법

※ 표작성의 근거 : 경찰청 내부자료 재구성

10. 디지털포렌식 교육과정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는 디지털포렌식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목 체계는 아래 [표 2-16]과 같다. 직무 전문과목으로 이진/십진/십육진 이해, 컴퓨터 동작 원리 이해, 디지털 증거능력 이해, 복제기 압수 실습, hexa 편집기 실습, 윈도우즈 아티팩트 분석 실습, 모바일 포렌식 실습,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실습, 분석보고서 이론 및 실습 등의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 [표 2-16] 디지털포렌식과정 교과목 체계

구분	교과목
직무전문과목	이진/십진/십육진 이해
	컴퓨터 동작 원리 이해
	디지털 증거능력 이해
	복제기 압수 실습
	hexa 편집기 실습
	윈도우즈 아티팩트 분석 실습
	모바일 포렌식 실습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실습
	분석보고서 이론과 실습

※ 표작성의 근거 : 경찰청 내부자료 재구성

11. 안보범죄수사 교육과정

안보범죄수사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는 안보수사전문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목 체계는 아래 [표 2-17]과 같다. 헌법 정신과 인권, 통일안보교육이 소양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직무전문과목으로 안보정보수집활동, 정보사범 수사, 경제안보사범 수사, 공공안보사범 수사, 테러사범, 첨단안보사범 수사, 직무사례세미나, 추적수사, 강제수사 이론 및 실습 등의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 [표 2-17] 안보수사전문과정 교과목 체계

구분	교과목
소양과목	헌법 정신과 인권
	통일안보교육
직무전문과목	안보정보수집활동
	정보사범 수사 (국보법, 군기법 수사 등)
	경제안보사범 수사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 등)
	공공안보사범 수사 (전략물자불법수출, 남교법 수사 등)
	테러사범, 첨단안보사범 수사 (정보통신망 침해 등)
	직무사례세미나
	범죄수사 실무 (추적수사, 강제수사 이론 및 실습 등)

※ 표작성의 근거 : 경찰청 내부자료 재구성

12. 교통범죄수사 교육과정

교통범죄수사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는 교통범죄수사실무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목 체계는 아래 [표 2-18]과 같다. 개정 교통법령 및 정책설명이 소양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직무전문과목으로 교통범죄 관련법령, 중과실 수사, 교통과 법사진 활용, 수사결과보고서 작성실습, 진술증거 수사, 증거수집절차, 보복난폭운전 처리, 보험범죄 수사, 개인정보와 CCTV 수사, 위드마크 이해 및 음주운전 수사, 압수수색이론 및 실습 등의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 [표 2-18] 교통범죄수사실무과정 교과목 체계

구분	교과목
소양과목	개정 교통법령 및 정책설명
직무전문과목	교통범죄 관련법령
	중과실 수사
	교통과 법사진 활용
	수사결과보고서 작성실습
	진술증거 수사
	증거수집절차
	보복난폭운전 처리
	보험범죄 수사
	개인정보와 CCTV 수사
	위드마크 이해 및 음주운전 수사
	압수수색이론 및 실습

※ 표작성의 근거 : 경찰청 내부자료 재구성

제4절 | 소결 및 시사점

제2장에서 검토한 미국 내무부 범죄수사역량모델, 경찰역량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 수사경찰 조직 및 교육과정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내무부 범죄수사 역량모델 보고서의 경우 범죄수사 역량을 일반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 역량은 책임성

등 23가지이고, 기술적 역량은 사고조사 등 25가지로 제시되고 있어 전체 역량이 48개로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역량 모두를 범죄수사와 관련된 핵심적인 역량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당 보고서에서는 핵심역량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 경찰역량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경찰관 직무공통역량모델이나 지역경찰 역량모델의 경우 공정성, 성실성, 고객지향성, 의사소통, 팀워크 등의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국 내무부의 범죄수사 역량모델의 구분에 따른다면 일반적 역량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수사경찰 역량진단 프로그램 개발연구에서 도출된 역량들을 살펴보면 지역형사 분야에는 고소고발사건 처리, 심문, 용의자 프로필 개발, 증거수집, 첩보수집, 현장상황 문서화 역량이 도출되었고, 지능범죄수사 분야에는 강제조치, 민원대응, 심문, 증거관리, 증거수집, 지능범죄사건 추론 역량이 도출되어 미국 내무부의 범죄수사 역량모델의 구분에 따른다면 기술적 역량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사경찰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각종 조사기법,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기법 등 기술적 역량 관련 교과목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추론, 의사소통, 보고서 작성 등 일부 일반적 역량 관련 교과목도 혼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내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연구는 수사경찰의 핵심역량 모델 개발이 목적이므로 기술적 역량에 초점을 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러한 판단은 이번 수시연구과제를 제안하고 연구결과를 활용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강력범죄수사, 형사범죄수사,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지능범죄수사, 경제범죄수사, 마약범죄수사, 조직폭력범죄수사, 사이버범죄수사, 디지털포렌식, 안보범죄수사, 교통범죄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수사경찰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능력 위주의 핵심역량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 범죄수사역량모델처럼 수사경찰에 요구되는 모든 역량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역량모델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역량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역량은 제외하여 모델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 3 장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연구

수사경찰 면담조사 및 핵심역량모델 초안개발

조준택 · 김지영

제3장

수사경찰 면담조사 및 핵심역량모델 초안개발

제1절 | 수사경찰 면담조사 개요

1. 핵심역량모델 개발절차

본 연구에서는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주요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수집-역량추출 및 모델개발-타당성 검증-최종모델 완성 등 4단계 절차에 의한 역량모델 개발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1]과 같다.

먼저 자료수집의 경우 준거집단인 수사경찰 중 우수한 역량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수사경찰에 대한 역량모델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준거집단을 대상으로 각 수사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과 기술 등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핵심역량모델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역량추출 및 모델개발 단계에서는 연구진이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수집된 면접자료를 분석하여 각 수사분야별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추출하고 지식과 기술로 구조화한 핵심역량모델 초안을 개발하였다.

이후 타당성 검증 단계에서는 연구진이 개발한 핵심역량모델 초안을 각 수사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수정 및 모델완성 단계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수사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 연구진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핵심역량모델을 개발하였다.

》》 [표 3-1]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절차

구분	내용
자료수집	○ 대상 : 강력범죄수사, 형사범죄수사,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지능범죄수사, 경제범죄수사, 마약범죄수사, 조직폭력범죄수사, 사이버범죄수사, 디지털포렌식, 안보범죄수사, 교통범죄수사 분야 수사관 총 15명 ○ 내용 : 각 분야에서 수사경찰로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과 기술 등
역량추출 및 모형개발	수사경찰 대상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여 추출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핵심역량모델 초안 개발
타당성 검증	국가수사본부 협조를 통해 핵심역량모델 수정안을 대상으로 각 분야 근무 수사경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검증
최종수정 및 모형완성	설문조사 실시결과와 전문가 자문의견, 연구진 논의를 종합하여 핵심역량모델 최종안 도출

※ 표작성의 근거 : 역량모델 개발절차를 본 연구에 맞게 구성

2.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협조로 수사경찰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국가수사본부와의 회의를 통해 강력형사범죄수사,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지능경제범죄수사, 마약조직범죄수사, 사이버범죄수사, 안보범죄수사, 교통범죄수사 분야에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수사관 3명과 수사경찰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수요원 1명 등 총 28명을 면담대상자로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각 수사기능별로 추천을 받은 후 연구진에게 면담대상자 명단을 제공해주었다.

이와 같이 우수 수사관 및 교수요원의 명단을 확보한 후 연구진은 수사관들의 전문분야나 수사경력을 고려하여 각 수사분야에서 면담대상자 2명을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면담 일정을 잡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중 강력형사범죄수사, 지능경제범죄수사, 마약조직범죄수사 분야의 경우 면담대상자 2명 중 1명은 강력범죄수사경찰관, 다른 1명은 형사범죄수사 경찰관을 선정하여 모든 수사분야 경찰관을 면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14명에 대한 면담을 계획하였는데, 지능범죄수사 분야에서 연구

진이 선정했던 경찰관 대상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가 면담대상자를 선정하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는 12명의 수사관, 2명의 교수요원, 1명의 디지털증거분석관 등 총 15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 경찰관들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 3-2]와 같다. 특히 이들 중 책임수사관이 2명, 전임수사관이 8명으로 경찰 내부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⁸⁾

또한 각 수사 분야별 경찰관들의 근무형태가 다르고 갑작스런 업무발생 등 수사업무에서 변수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심층면접은 충분한 기간을 두어 진행하였고 추가면담까지 진행함에 따라 2023년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실제로 면접이 예정되어 있다가 갑작스런 업무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취소 또는 변경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는데 수사관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다시 일정을 잡아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비대면 화상면담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경찰관들의 동의를 얻어 녹화하고 면담에 참여한 연구진은 주요 면담내용이나 쟁점을 면담 노트에 정리하였다.

» [표 3-2] 면담조사에 참여한 경찰 수사관들의 기본사항

연번	수사분야	소속부서	계급	수사경력	비고
1	강력범죄수사	경기남부청 형사과	경정	18년	책임수사관
2	형사범죄수사	부산청 부산진경찰서	경위	15년	책임수사관
3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경기남부청 부천소사경찰서	경감	28년	전임수사관
4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경북청 여청수사대	경위	8년	전임수사관
5	지능범죄수사	경찰수사연수원	경위	15년	교수요원
6	지능범죄수사	광주청 반부패수사대	경감	7년	
7	경제범죄수사	충북청 청원경찰서	경감	18년	전임수사관
8	마약범죄수사	경기남부청 평택경찰서	경사	10년	전임수사관
9	조직폭력범죄수사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경감	10년	전임수사관
10	사이버범죄수사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경감	14년	
11	디지털포렌식	경찰청 디지털증거획득계	경사	4년	증거분석관
12	안보범죄수사	서울청 안보수사대	경감	22년	전임수사관
13	안보범죄수사	인천청 논현경찰서	경위	12년	전임수사관
14	교통범죄수사	경기북부청 의정부경찰서	경위	20년	전임수사관
15	교통범죄수사	경찰수사연수원	경감	6년	교수요원

18) 2020년 수사관 자격관리제가 도입되어 수사관의 자격을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책임수사관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심층면접은 앞서 살펴본 역량모델 개발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한 행동 사건 면담기법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주요한 질문내용은 아래 [표 3-3]과 같다. 먼저 기본사항에 대한 질문으로서 현 소속부서와 수행업무, 총 수사경력과 전문분야에서의 수사경력을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수사경찰 역량과 관련된 질문으로서 수사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와 책임, 성공적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실무지식, 기술과 능력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연구진은 경찰청으로부터 협조받은 수사경찰 직무분석자료도 참고하여 면담을 수행하였다.

» [표 3-3] 수사경찰 심층면접 주요 질문내용

구분	내용
기본사항	- 현재 소속 부서와 수행업무 - 총 수사경력과 전문분야에서의 수사경력 등
수사경찰 역량	- 전문 수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와 책임 -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건과 노력들 - 성공적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과 실무지식 - 성공적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능력 - 잘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과 경험 - 수사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제2절 | 면담조사 결과 및 핵심역량모델 초안개발

1. 강력범죄수사

가. 지식

강력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강력범죄 수사에 필요한 지식으로서 ① 형법 및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② 민사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③ 법의학 등 법과학 분야 관련 지식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범죄수사를 위해서는 수사절차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적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살인사건이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사하기 위해서는 민사법적인 지식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력사건에서는 법의학 등 법과학 지식이 있어야 살인사건 현장을 정확히 판단하고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지식이라면은 형사소송법이 가장 중요한데, 절차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이외에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 지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사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살인사건의 동기에 있어서 금전이 개입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민법 지식이나 판례 학습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학 등 법과학 분야 관련 지식) 강력 사건에서는 법의학이 중요합니다. 특히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사후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범죄라는 것을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학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 기술과 능력

또한 강력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강력범죄 수사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으로서 ① 정보원에 대한 관리 및 첩보수집능력(장물아비, 출소자 등), ②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CCTV 관찰, 탐문 등), ③ 동일범죄수법 조회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SCAS 등), ④ 수집한 각종 증거에 대한 통합적 분석능력, ⑤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활용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 ⑥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 ⑦ 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 ⑧ 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능력, ⑨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장물아비들이 강절도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출소자들도 수법만으로도 강력사건을 누가 했는지 아는 경우도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피의자 특정과 증거수집을 위해 CCTV를 관찰하거나 주민들 대상으로 한 탐문수사를 하는 능력,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이나 통신수사는

력, 범죄자들의 특정 행동과 같은 범죄수법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고 활용하는 능력 등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수집된 각종 증거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강력범죄수사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제시하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안전사고와 같이 경찰이 국과수, 검찰, 관련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는 능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는 능력과 증거확보를 위해 영장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능력도 강조하였다. 피의자가 검거된 후에는 사건내용과 피의자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면담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수사 보고서도 사건의 흐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작성하고 판사를 설득시키기 위해 판결문에 가깝게 작성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보원에 대한 관리 및 첩보수집능력(장물아비, 출소자 등)) 강절도 사건에서는 장물아비를 통해 장물이 시중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출소자들은 수법만 보고도 누가했는지 아는 경우가 있어 관리하면 좋습니다.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CCTV 관찰, 탐문 등)) 탐문이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CCTV의 경우 주인 협조도 받아야 되니 면담도 잘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어내야 합니다.

(동일범죄수법 조회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SCAS 등)) 범죄자가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잘 기록되고 수사관들이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수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집한 각종 증거에 대한 통합적 분석능력) 각종 정황 증거나 직접증거, 진술들을 상호 대조해서 어떤 모순점을 찾아내는 분석력이 강력범죄 수사를 하는 형사들한테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활용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 강력사건의 경우 검찰과 협력이 잘 되는 편이고, 요즘에 주목받는 안전사고의 경우는 국과수, 관련 협회나 학회 등 협력해야 할 단체가 많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를 추적하고 검거하기 위해 초기에 밤샘 수사를 많이 합니다. CCTV를 관찰해서 용의자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지국 수사 등 통신수사로 용의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으려면 판사에게 충분한 소명 자료들을 나열해야 합니다.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용의자를 좀 더 지켜본 후에 증거확득에 효과적인 영장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능력) 피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는 수사관이 사건 내용이나 피의자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우위에 있어야 조사를 잘 할 수 있어 면담기법이 중요합니다.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 수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시간과 사건내용을 입체적으로 나열하면 사건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 [표 3-4] 강력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구분	역량
지식	-형법 및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민사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법의학 등 법과학 분야 관련 지식
기술과 능력	-정보원에 대한 관리 및 첩보수집능력(장물아비, 출소자 등)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CCTV 관찰, 탐문 등) -동일범죄수법 조회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SCAS 등) -수집한 각종 증거에 대한 통합적 분석능력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활용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 -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 -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능력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

2. 형사범죄수사

가. 지식

형사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형사범죄수사에 필요한 지식으로서 ① 형법 및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②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이해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지식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형사범죄수사에 있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인 지식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증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압수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형사들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기본이고 특가법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이해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지식) 요즘에는 휴대전화부터 해서 대부분이 전자정보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절차에 대한 지식이 형사들에게 중요합니다.

나. 기술과 능력

또한 형사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형사범죄수사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으로서 ① 다양한 사건에 대한 죄명 적용능력, ② 사건특성과 단서에 따른 수사사항 우선순위 설정능력, ③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CCTV 관찰, 탐문 등), ④ 동일범죄수법 조회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SCAS 등), ⑤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활용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 ⑥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 ⑦ (출동시) 신고사건 정보숙지와 돌발상황 대처능력(물리력 사용 등), ⑧ 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능력, ⑨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범죄자의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잘 적용하는 것이 형사들에게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CCTV 영상 등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사단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고 CCTV 관찰이나 탐문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범죄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지역에서 범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하거나 방화사건 등의 경우에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휴대전화나 차량에 대한 추적기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하여 잘 대처하는 역량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의자를 검거한 후에는 피의자에 대한 심리를 파악하고 면담조사하는 능력과 수사결과를 설득력 있게 보고서로 작성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양한 사건에 대한 죄명 적용능력) 범죄자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형법이나 특별법상 죄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죄명을 잘 적용하는 것이 형사들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건특성과 단서에 따른 수사사항 우선순위 설정능력) CCTV 영상과 같이 기한이 있어 사라지는 증거의 경우 빨리 수사를 하는 것이 중요해서, 수사단서의 특성에 따라 수사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CCTV 관찰, 탐문 등)) 피의자 특정이나 혐의 입증에서 중요한 것이 CCTV 수사하는 것이지만, CCTV가 없는 경우 여러 명을 탐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탐문도 중요합니다.

(동일범죄수법 조회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SCAS 등)) 동일수법의 범죄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법들이 기록된 SCAS 등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활용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 방화나 붕괴 등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들과 잘 협력하는 것이 범죄수사를 하는데 중요합니다.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 피의자 검거를 위해서는 휴대전화나 차량에 대한 추적기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동시) 신고사건 정보속지와 돌발상황 대처능력(물리력 사용 등)) 출동 나갔을 때 신고내용에 대하여 잘 파악하여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해야 돌발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능력) 피의자에 대하여 경청과 공감을 해주고 심리를 파악해야 피의자와의 면담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 이러한 능력이 중요합니다.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 수사결과보고서의 경우 형사범죄를 수사하면서 수집한 여러 증거들을 잘 배치하여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표 3-5] 형사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구분	역량
지식	-형법 및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이해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지식
기술과 능력	-다양한 사건에 대한 죄명 적용능력 -사건특성과 단서에 따른 수사사항 우선순위 설정능력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CCTV 관찰, 탐문 등) -동일범죄수법 조회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SCAS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활용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 -(출동시) 신고사건 정보속지와 돌발상황 대처능력 -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능력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

3.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가. 지식

여성청소년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에 필요한 지식으로서 ① 여성청소년범죄 관련 형사법,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② 여성청소년법

죄 수사에 특별히 요구되는 수사절차와 매뉴얼 지식, ③ 여성과 청소년 등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여성청소년범죄수사의 경우 형사법 외에도 성폭력처벌법 등 다양한 특별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고, 아동이나 장애인 등 여성청소년 범죄수사에 요구되는 특별한 절차에 대한 규칙이나 매뉴얼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청소년 집단에 대한 심리나 행동적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 수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여성청소년범죄 관련 형사법,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은 필수이고, 여성청소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다양한 특별법과 판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에 특별히 요구되는 수사절차와 매뉴얼 지식) 아동, 장애인 등 여성청소년 범죄수사에는 특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야 하고, 관련된 규칙이나 매뉴얼을 숙지해야 합니다.

(여성과 청소년 등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이해)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경우 행위나 심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범죄수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 기술과 능력

또한 여성청소년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으로서 ① 112 신고이력 등 각종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능력, ②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피해자 분리, 신변보호 등) 이행능력, ③ 피해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 등 면담기법 및 조사 능력, ④ 진술증거 및 물적증거 수집을 통한 피해사실 특정 능력, ⑤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CCTV확인, 탐문, 통신수사 등), ⑥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휴대전화 포렌식, 목격자 진술), ⑦ 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 ⑧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각종 상담기관 등)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여성청소년범죄 관련 신고가 되었던 적이

있는 경우 112시스템에 기록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신고되는 경우 이를 잘 활용하여 수사하여야 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를 잘 이행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을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감을 주어 면담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진술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진술분석이나 물적증거를 통해 피해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진술조력인이나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CCTV확인이나 탐문, 통신수사 등을 통해 추적하는 능력과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영장을 잘 신청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12 신고이력 등 각종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능력) 신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어 모니터링을 하고 다시 신고되는 경우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수사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피해자 분리, 신변보호 등) 이행능력) 사건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스마트위치 지원,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많은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 등 면담기법 및 조사 능력) 피해자에 대한 라포형성이 되어 피해자가 말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면담을 해야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증거 및 물적증거 수집을 통한 피해사실 특정 능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거수집이나 진술분석을 통해 피해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CCTV확인, 탐문, 통신수사 등)) 범죄자를 추적하여 검거하기 위해서 CCTV영상을 확인하고, 통신수사를 실시하거나 목격자들에 대한 탐문을 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휴대전화 포렌식, 목격자 진술)) 혐의

입증을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CCTV 영상 확인, 목격자 진술 청취를 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 대인 또는 대물 강제수사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등 각종 영장을 잘 신청해서 발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각종 상담기관 등)) 여성청소년범죄수사를 하면서 이동에 대한 진술조력인, 장애인 상담소 등에 있는 전문가들과 국과수 등 기관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표 3-6] 여성청소년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구분	역량
지식	- 여성청소년범죄 관련 형사법,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 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에 특별히 요구되는 수사절차와 매뉴얼 지식 - 여성과 청소년 등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이해
기술과 능력	- 112 신고이력 등 각종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능력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피해자 분리, 신변보호 등) 이행능력 - 피해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 등 면담기법 및 조사 능력 - 진술증거 및 물적증거 수집을 통한 피해사실 특정 능력 -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CCTV확인, 탐문, 통신수사 등) -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휴대전화 포렌식, 목격자 진술) - 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 -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각종 상담기관 등)

4. 지능범죄수사

가. 지식

지능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지능범죄수사에 필요한 지식으로서 ①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 ② 지능범죄 분야의 다양한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③ 특별법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분야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식, ④ 기업의 자금, 신용정보, 회계에 대한 지식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지능범죄수사에서는 다양한 특별법위반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법, 형사소송법 및 관련 판례뿐만 아니라 특별법과

관련 전문분야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의료법 위반을 수사하려면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알아야 하고, 기업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조세나 회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 형법과 형사소송법 지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실무에서는 판례가 중요하며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위법하지 않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능범죄 분야의 다양한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지능범죄수사는 주택법 등 다양한 특별법이 있어서 해당 범죄가 어떠한 특별법령 위반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별법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분야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식) 지능범죄수사에서는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법위반을 수사하려면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능범죄수사에서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해서 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기업의 자금, 신용정보, 회계에 대한 지식) 기업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이나 조세, 회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진다면 수사를 더욱 잘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술과 능력

또한 지능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지능범죄수사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으로서 ①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② 다양한 수사단서에서 지능범죄를 인지하는 능력, ③ 제보자,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등 관련자 면담 및 조사능력, ④ 범죄수사를 위한 공개자료 검색 및 수집능력, ⑤ 강제수사 능력(계좌추적, 대인 및 대물 압수수색 등), ⑥ 논리적 추론을 통한 증거분석과 범죄사실 관련성 입증 능력, ⑦ 수사결과보고서 등 빈틈없는 수사서류 작성능력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지능범죄수사는 고소나 고발에 의한 수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 제보자나 정보원을 통한 첩보수집 능력이 필요한데, 먼저 제보자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통해 지능범죄 관련 단서를 확인하고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지능범죄를 인지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지능범죄수사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개정보를 수집하거나 강제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통신수사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결과와 수집된 증거를 분석하여 범죄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논리적 추론능력도 필요하며, 수사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전체 내용이나 증거가 수사결과보고서에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능력도 중요한 능력으로 제시하였다.

(범죄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지능범죄수사는 고소나 고발에 의한 수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 정보원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수사를 시작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다양한 수사단서에서 지능범죄를 인지하는 능력) 고소나 고발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진술이나 첩보들에서 지능범죄에 해당되는지를 인지하고 수사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제보자,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등 관련자 면담 및 조사능력) 제보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술조서를 잘 작성하고, 피의자에 대해서 신문을 잘 할 수 있는 면담조사 능력은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수사를 위한 공개자료 검색 및 수집능력) 지능범죄수사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개정보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검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강제수사 능력(계좌추적, 대인 및 대물 압수수색 등)) 피의자 조사 전에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금융계좌추적이나 통신수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잘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리적 추론을 통한 증거분석과 범죄사실 관련성 입증 능력) 계좌거래내역에서도

인출금액만을 볼 것이 아니라 거래지점이 피의자의 자택이나 회사에서 가까운지 ATM에서 뽑았는지 등 증거의 세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범죄사실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결과보고서 등 빈틈없는 수사서류 작성능력) 수사관이 수사한 전체 내용이나 증거자료가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에 잘 담기도록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표 3-7] 지능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구분	역량
지식	-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 - 지능범죄 분야의 다양한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 특별법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분야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식 - 기업의 자금, 신용정보, 회계에 대한 지식
기술과 능력	-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 다양한 수사단서에서 지능범죄를 인지하는 능력 - 제보자,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등 관련자 면담 및 조사능력 - 범죄수사를 위한 공개자료 검색 및 수집능력 - 강제수사 능력(계좌추적, 대인 및 대물 압수수색 등) - 논리적 추론을 통한 증거분석과 범죄사실 관련성 입증 능력 - 수사결과보고서 등 빈틈없는 수사서류 작성능력

5. 경제범죄수사

가. 지식

경제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경제범죄수사에 필요한 지식으로서 ① 재산범죄 관련 형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② 재산범죄 관련 민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③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세금, 회계 등 재무상태에 대한 지식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경제범죄 수사를 하려면 형사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재산의 개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태인 신용정보나 조세나 회계 등 재무상태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재산범죄 관련 형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재산범죄를 수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형사법과 판례를 알아야 고소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관련 민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재산의 개념이나 소유나 점유관계에 대한 민사법과 판례나 민사소송이나 집행법 관련 절차를 알아야 사건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세금, 회계 등 재무상태에 대한 지식) 개인의 신용정보나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 등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나. 기술과 능력

또한 경제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경제범죄수사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으로서 ① 형사범죄와 민사사안에 대한 판단 및 구분능력, ②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 진술확보를 위한 조사 능력, ③ 고소 및 고발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 능력, ④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계좌추적 등), ⑤ 회계 프로그램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 ⑥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세무서, 신용평가사, 공인중개사협회 등), ⑦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 ⑧ 진술과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추론과 보고서 작성능력, ⑨ 고소인 등에 대해 조사결과 및 법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능력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처음 담당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형사사건인지 아니면 단순 민사사안으로 수사대상이 아닌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거래나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능력과 이를 통해 주요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후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특히 업체에서 각종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조세나 신용정보, 부동산

등과 관련된 세무서, 신용평가사,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적하였다. 수사관은 경제범죄수사에서 CCTV확인이나 통신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추적하고 검거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를 기반으로 혐의여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조사결과를 보고서에 잘 반영시키는 능력도 중요한 능력이며, 이러한 수사결과와 적용된 법령과 판례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형사범죄와 민사사안에 대한 판단 및 구분능력) 경제범죄 관련 상당수를 차지하는 차용사기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 민사사건인지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 진술확보를 위한 조사 능력)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거래나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진술을 확보해야 혐의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고소 및 고발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 능력) 고소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까지 잘 알고 있다면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계좌추적 등)) 수가 많지는 않지만 다액의 금전이 오고 간 사건에서는 계좌추적을 통해 거래내역을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계 프로그램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 요즘에는 업체에서 다양한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종류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세무서, 신용평가사, 공인중개사협회 등)) 다양한 협력기관 예를 들어, 세무서의 세무자료나 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자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부동산 관련 자료를 잘 협조받는 것이 수사에 중요합니다.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 경제범죄수사에서도 형사범죄수사와 같이 통신수사나 차량추적, CCTV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검거하고 구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진술과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추론과 보고서 작성능력)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고 법원의 기존 판단을 고려하여 혐의여부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보고서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 등에 대해 조사결과 및 법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능력)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와 적용된 법령과 법원의 판례 등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잘 설명해준다면 충분한 공감받을 수 있습니다.

▶▶▶ **[표 3-8] 경제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구분	역량
지식	- 재산범죄 관련 형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 재산범죄 관련 민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세금, 회계 등 재무상태에 대한 지식
기술과 능력	- 형사범죄와 민사사안에 대한 판단 및 구분능력 -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 진술확보를 위한 조사 능력 - 고소 및 고발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 능력 -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계좌추적 등) - 회계 프로그램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 -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세무서, 신용평가사, 공인중개사협회 등) -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 - 진술과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추론과 보고서 작성능력 - 고소인 등에 대해 조사결과 및 법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능력

6. 마약범죄수사

가. 지식

마약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마약범죄수사에 필요한 지식으로서 ① 마약류관리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② 마약사건에 관한 영장기각사례 등 실무사례에 대한 지식, ③ 마약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에 관한 지식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마약범죄수사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실무상으로 검사나 판사의 영장기각사례와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마약류관리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마약범죄수사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이 중요하고, 대법원 판례도 매우 중요한데 법률에서 규정하지 못한 것을 판례가 판단해주기 때문이죠.

(마약사건에 관한 영장기각사례 등 실무사례에 대한 지식) 마약사건에서 검사나 판사의 영장기각사례 등 실무사례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이를 알고 수사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에 관한 지식) 요즘은 마약거래대금을 가상화폐로 받는 경우가 있어서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이나 관련 지식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기술과 능력

또한 마약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마약범죄수사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으로서 ① 마약범죄 전력자나 제보자 등을 통한 첩보수집 능력, ② 각종 첩보 등 수사단서에 대한 신빙성 검증능력, ③ 제보자로부터 마약범죄에 대한 구체적 진술 확보 능력, ④ 강제수사(압수수색 등)에 대한 판단 및 실행능력, ⑤ 피의자에 대한 사전동선 파악 등 검거계획 수립 및 실행능력, ⑥ 마약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기법 및 조사능력, ⑦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식약처, 검찰 등)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마약범죄수사를 위해서는 마약범죄를 저지른 전력자나 제보자를 통해 첩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첩보의 신빙성을 검증하여야 하는데 제보자로부터 어떠한 마약이 사용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마약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소변이나 모발검사를 위한 강제수사 여부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피의자의 주거나 직장에 대한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검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검거 후에도 마약사범이 흥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정시키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마약사건의 경우 검찰과 사전협의를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식약처에서 수사의뢰를 받아 처리하는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마약범죄 전력자나 제보자 등을 통한 첩보수집 능력) 마약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 마약범죄자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첩보수집이 마약범죄 수사에서 중요합니다.

(각종 첩보 등 수사단서에 대한 신빙성 검증능력) 마약 사건은 누가 마약을 했는지나 이상하다는 신고나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만으로는 범죄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로부터 마약범죄에 대한 구체적 진술 확보 능력) 제보자로부터 어떠한 마약이 사용되었는지 등 마약범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수사(압수수색 등)에 대한 판단 및 실행능력) 마약 사건에서는 소변이나 모발 검사 등 강제수사를 통해 대상자가 마약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수사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사전동선 파악 등 검거계획 수립 및 실행능력) 마약사범은 흥분된 경우가 많아서 검거를 잘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집이나 직장에 대한 사전동선을 파악하고 검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기법 및 조사능력) 마약사범은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검거과정에서부터 조금 시간을 두고 라포를 형성해서 진정시키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식약처, 검찰 등)) 마약은 국과수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력하게 되어 있고, 검사와도 마약사건 처리를 위해 사전

협의를 합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도 마약성분 과다사용 등으로 수사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어 수사관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표 3-9] 마약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구분	역량
지식	- 마약류관리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 마약사건에 관한 영장기각사례 등 실무사례에 대한 지식 - 마약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에 관한 지식
기술과 능력	- 마약범죄 전력자나 제보자 등을 통한 첩보수집 능력 - 각종 첩보 등 수사단서에 대한 신빙성 검증능력 - 제보자로부터 마약범죄에 대한 구체적 진술 확보 능력 - 강제수사(압수수색 등)에 대한 판단 및 실행능력 - 피의자에 대한 사전동선 파악 등 검거계획 수립 및 실행능력 - 마약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기법 및 조사능력 -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식약처, 검찰 등)

7. 조직폭력범죄수사

가. 지식

조직폭력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조직폭력범죄수사에 필요한 지식으로서 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지식, ② 성매매처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조직폭력 범죄수사의 경우 범죄단체를 적용하여 폭력조직을 검거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숙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수사관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판례를 통해 조직폭력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고, 혐의 입증 관련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지식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외에 폭력조직이 성매매 업소나 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성매매처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풍속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지식도 갖추면 좋다고 지적하였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지식) 조직폭력은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판례들을 보고 조직폭력의 개념과 수사에 대해 알아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다음에 조폭이 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나 게임장 등과 관련된 성매매 처벌법이나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나. 기술과 능력

또한 조직폭력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조직폭력범죄수사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으로서 ① 범죄인지를 위한 폭력조직에 대한 정보망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② 피해규명을 위한 피해자 면담 및 조사 능력(신뢰 및 라포 형성), ③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통화내역, 면회내용, 영치금 대장 등), ④조직폭력 동향파악을 위한 DB 관리 및 활용능력(KICS 조직계보, 동향보고 등), ⑤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교정기관,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등), ⑥검거계획서(체포영장 집행계획서) 작성 및 집행능력, ⑦ 급박한 상황에서의 대처 및 물리력 사용능력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조직폭력 범죄피해가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첩보를 수집하는 능력과 이를 위한 정보망 관리능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직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관과 피해자의 신뢰관계 형성을 포함한 면담기법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조직폭력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서 통신수사, 조직원들의 교도소 면회내용, 영치금 대장 확인 등을 통한 증거수집 능력이 중요하며, 조직폭력 관련 정보들은 KICS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주기적인 동향보고가 이루어져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활용능력도 조직폭력 범죄수사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조직폭력 범죄수사에서는 교정기관과 협력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신청이나 공소유지 관련 검찰과의 협력과 범죄수익에 대한 자금추적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력하는 능력도 요구된다고 하였다. 실제 다수의 조직폭력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에 대한 치밀한 사전조사에 근거한 검거계획서 작성 및 집행능력이 필요하며, 실제 현장에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물리력

을 사용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범죄인지를 위한 폭력조직에 대한 정보망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조직폭력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대부분 조직과 관련되어 피해를 입어도 진술을 못하기 때문에 정보원을 관리하여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규명을 위한 피해자 면담 및 조사 능력(신뢰 및 라포 형성)) 조직폭력 피해자들은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진술을 잘 하지 않아 여러 번 만나면서 설득을 하고 신뢰형성이 되어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통화내역, 면회내용, 영치금 대장 등)) 조직폭력 수사를 위해서 통화내역, 교도소 수감자의 면회기록이나 영치금 대장을 확인하여 조직폭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조직폭력 동향파악을 위한 DB 관리 및 활용능력(KICS 조직계보, 동향보고 등)) KICS에는 전국에 있는 관리 대상 조직들이 정리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주기적인 동향보고가 등록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관기관 협력 능력(교정기관,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등)) 조직폭력 수사는 검찰에서도 공소유지 때문에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가 계속 같이 협력합니다. 요즘은 조직에서 기업형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 자금추적이 필요한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협조를 구하기도 합니다.

(검거계획서(체포영장 집행계획서) 작성 및 집행능력) 조직폭력 수사는 여러 명을 체포해야 하기 때문에 검거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조직원들에 대한 치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문제 없이 검거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의 대처 및 물리력 사용능력) 검거를 하기 위해 검거조를 편성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합니다. 현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진정시키는 대처를 하고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표 3-10] 조직폭력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구분	역량
지식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지식 - 성매매처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기술과 능력	- 범죄인지를 위한 폭력조직에 대한 정보망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피해규명을 위한 피해자 면담 및 조사 능력(신뢰 및 라포 형성) -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 (통화내역, 면회내용, 영치금 대장 등) - 조직폭력 동향파악을 위한 DB 관리 및 활용능력(KICS 조직계보, 동향보고 등) -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교정기관,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등) - 검거계획서(체포영장 집행계획서) 작성 및 집행능력 - 급박한 상황에서의 대처 및 물리력 사용능력

8. 사이버범죄수사

가. 지식

사이버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사이버범죄수사에 필요한 지식으로서 ① 사이버범죄 관련 형사법과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②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베이스, 모바일메신저 등에 관한 기본 지식, ③ 가상화폐와 범죄수의 환수에 대한 지식, ④ 해외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서비스에 대한 지식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사이버범죄수사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등 특별법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터넷,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모바일메신저 등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가상화폐와 범죄수의 환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 구글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알고 있다면 영장을 통해 수사단서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이버범죄 관련 형사법과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형법하고 형소법 지식이고, 특별법은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특별법 등이 중요합니다.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베이스, 모바일메신저 등에 관한 기본 지식) 인터넷,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로그기록, 모바일메신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알고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와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지식)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과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지식과 절차도 수사에 있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서비스에 대한 지식) 구글 등 해외 인터넷 관련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잘 안다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단서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기술과 능력

또한 사이버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사이버범죄수사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으로서 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초동조치 능력(사이트 차단, 증거보전, 피해자 보호 등), ② 각종 제보를 통한 첩보수집 및 위장수사 능력, ③ 각종 단서 수집 및 증거분석을 통한 피의자 추적 및 특정 능력, ④ 각종 단서 및 증거분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능력(i2 등), ⑤ 국내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네이버, 카카오 등), ⑥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요청 능력(해외 기업 등), ⑦ 검거현장에서 휴대전화 압수 등 강제조치 능력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사이버범죄 발생시 사이트 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 초동조치 능력, 제보를 통한 첩보수집 능력과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규명을 위한 위장수사 능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사이버범죄의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기 위해 수사단서를 수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사이버범죄 관련 국내 유관기관인 네이버나 카카오 등 기업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해외에 있는 기업과 관련된 범죄는 경찰청에 국제공조를 의뢰하는 절차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 사이버범죄 피의자를 검거할 때는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바로 압수하여 증거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초동조치 능력(사이트 차단, 증거보전, 피해자 보호 등)) 사이버 범죄의 경우 해당사이트를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조치 등 초동조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각종 제보를 통한 첩보수집 및 위장수사 능력) 사이버범죄의 경우 제보자들이 많이 있어 첩보수집 능력이 중요하고,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위장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서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합니다.

(각종 단서 수집 및 증거분석을 통한 피의자 추적 및 특정 능력) 사이버범죄는 피의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단서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각종 단서 및 증거분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능력(i2 등)) 기본적인 엑셀프로그램이나 통화내역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 로그기록 분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줄 알아야 사건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국내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톡의 경우 협력이 잘 되고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경찰관이 파견 나가 있는데 사건수사 관련 협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요청 능력(해외 기업 등)) 사이버범죄의 경우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경찰청에 국제공조를 의뢰하는 절차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거현장에서 휴대전화 압수 등 강제조치 능력) 사이버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때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바로 압수해서 증거를 삭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표 3-11] 사이버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구분	역량
지식	- 사이버범죄 관련 형사법과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베이스, 모바일메신저 등에 관한 기본 지식 - 가상화폐와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지식 - 해외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서비스에 대한 지식
기술과 능력	- 사이버 범죄에 대한 초동조치 능력(사이트 차단, 증거보전, 피해자 보호 등) - 각종 제보를 통한 첩보수집 및 위장수사 능력 - 각종 단서 수집 및 증거분석을 통한 피의자 추적 및 특정 능력 - 각종 단서 및 증거분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능력(i2 등) - 국내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네이버, 카카오톡 등) -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요청 능력(해외 기업 등) - 검거현장에서 휴대전화 압수 등 강제조치 능력

9. 디지털포렌식

가. 지식

디지털포렌식분야 분석관에 대한 면담결과, 디지털포렌식에 필요한 지식으로서 ①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 및 증거능력 관련 지식, ②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분석대상 사건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③ 디지털 증거처리 규칙 관련 지식, ④ 악성코드,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등 기술 관련 최신기법에 대한 지식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분석관은 디지털포렌식에서는 증거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과 판례지식이 필요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대상 사건과 관련된 법령과 경찰청의 디지털 증거처리 규칙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악성코드나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등에서 증거를 처리하는 기술관련 지식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 및 증거능력 관련 지식) 디지털포렌식이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법적 절차에 맞게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능력 관련 형사소송법이나 판례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분석대상 사건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정보통신망

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디지털포렌식 대상 사건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분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처리 규칙 관련 지식) 경찰 내부에 디지털 증거처리 규칙이 있는데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악성코드,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등 기술 관련 최신기법에 대한 지식) 악성코드나 데이터베이스, 모바일에서 증거를 처리하는 전반적인 지식을 알아야 하고, 이 분야가 기술발전이 워낙 빨라 교육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나. 기술과 능력

또한 디지털포렌식분야 분석관에 대한 면담결과, 디지털포렌식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으로서 ① 다양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장비 및 도구 활용능력, ②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 ③ 수집된 증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④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작성능력, ⑤ 증거물 분석과정에서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⑥ 물리적으로 훼손(파손, 침수 등)된 매체를 복원하여 데이터를 획득하는 능력, ⑦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한 수사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능력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분석관은 디지털포렌식에서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장비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증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능력과 분석결과를 보고서로 잘 작성하는 능력도 중요한 능력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증거물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훼손된 매체를 복구하여 데이터를 획득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추가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수사관과 잘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다양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장비 및 도구 활용능력)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하는 다양한 분석장비나 프로그램들을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 디지털포렌식에서는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집된 증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획득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데, 이러한 데이터와 실제 사건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작성능력)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한 수사관에게 분석결과에 대하여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증거물 분석과정에서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증거물이 많이 들어올 때 관리를 잘못하면 땅에 떨어져 원형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훼손(파손, 침수 등)된 매체를 복원하여 데이터를 획득하는 능력) 기기가 파손이나 침수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훼손된 경우가 많아서 이를 복구해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한 수사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능력)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한 수사관과 분석관이 협력이 잘 되어야 증거분석이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표 3-12] 디지털포렌식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구분	역량
지식	-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 및 증거능력 관련 지식 -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분석대상 사건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관련 지식 - 악성코드,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등 기술 관련 최신기법에 대한 지식
기술과 능력	- 다양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장비 및 도구 활용능력 -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 - 수집된 증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작성능력 - 증거물 분석과정에서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 물리적으로 훼손(파손, 침수 등)된 매체를 복원하여 데이터를 획득하는 능력 -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한 수사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능력

10. 안보범죄수사

가. 지식

안보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안보범죄수사에 필요한 지식으로서 ① 국가보안법 등 북한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② 북한의 대남전략 및 간첩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③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및 경제안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④ 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 관련 법령 및 증거능력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⑤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다양한 실무 수사사례에 대한 지식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안보범죄수사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등 법령과 판례뿐만 아니라 북한과 간첩활동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안보범죄가 북한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기술 및 경제안보로 넓어진 점을 고려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안보범죄수사에서 수사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증거능력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필요한 한편, 일반 사건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다양한 안보범죄수사 사례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가보안법 등 북한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과 판례를 알아야 안보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전략 및 간첩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안보범죄수사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나 간첩활동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국가보안법 사범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및 경제안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안보범죄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유출 등 기술 및 경제안보로 넓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식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 관련 법령 및 증거능력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나 최근 엄격해지고 있는 증거능력 관련 판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다양한 실무 수사사례에 대한 지식) 안보범죄 수사는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사사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기술과 능력

또한 안보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안보범죄수사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으로서 ① 국가안보범죄 유형에 따른 수사방향 설정 및 수사기법 적응능력, ② 국가안보범죄 탐지를 위한 수사협조원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③ 사건의 국가안보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한 범죄인지 능력, ④ 국가안보범죄 사건 관련인 선정 및 연결성 파악 능력, ⑤ 국가안보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감청 등), ⑥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사전 심리분석 및 면담조사 능력, ⑦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정원, 방첩사, 국과수 등), ⑧ 수사대상자의 이익제기 및 민원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국가안보범죄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사방향 설정과 수사기법 적용이 중요한데, 특히 안보범죄수사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사협조원의 활용과 이를 통한 첩보수집 능력이 필요하고, 입수된 첩보를 검증하여 국가안보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범죄인지 능력도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간첩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관찰하여 안보범죄 사건 관련인을 선정하고 연결성을 파악하는 능력과 안보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감청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를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간첩 등 국가안보사범의 경우 일반 범죄자와 다른 특성이 있어 사전에 심리나 정보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이나 방첩사령부 등 유관기관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안보범죄 수사대상자가 정치인이나 관련단체인 경우 이의제기나 민원이 많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능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국가안보범죄 유형에 따른 수사방향 설정 및 수사기법 적용능력)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경우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사방향을 잘 설정하고 범죄유형에 맞는 수사기법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가안보범죄 탐지를 위한 수사협조원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국가안보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사협조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통해서 첩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국가안보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한 범죄인지 능력)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면 이를 검증하여 안보범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안보범죄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기반으로 범죄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범죄 사건 관련인 선정 및 연결성 파악 능력) 간첩으로 판단되는 자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관찰하여 국가안보범죄 사건 관련인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연결성을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국가안보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감청 등)) 국가안보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서 감청 등을 통해 증거수집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포렌식을 해서 증거를 분석하는 것도 요구됩니다.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사전 심리분석 및 면담조사 능력) 국가안보사범은 일반 범죄와 다르기 때문에 간첩 등에 대해 조사를 하기 전에 심리나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정원, 방첩사, 국과수 등)) 안보범죄수사는 국가정보원이나 방첩사령부 등 유관 정보기관과 협력하거나 합동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및 민원에 대한 대처능력) 안보범죄 수사대상자가 정치인이나 관련단체인 경우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나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잘 대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표 3-13] 안보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구분	역량
지식	- 국가보안법 등 북한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 북한의 대남전략 및 간첩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및 경제안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 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 관련 법령 및 증거능력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다양한 실무 수사사례에 대한 지식
기술과 능력	- 국가안보범죄 유형에 따른 수사방향 설정 및 수사기법 적응능력 - 국가안보범죄 탐지를 위한 수사협조원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 사건의 국가안보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한 범죄인지 능력 - 국가안보범죄 사건 관련인 선정 및 연결성 파악 능력 - 국가안보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감청 등) -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사전 심리분석 및 면담조사 능력 -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정원, 방첩사, 국과수 등) - 수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및 민원에 대한 대처능력

11. 교통범죄수사

가. 지식

교통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교통범죄수사에 필요한 지식으로서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과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② 교통범죄 관련 각종 특별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특가법, 보험사기 방지법 등), ③ 교통범죄 관련 보험과 민사문제에 대한 지식, ④ 자동차의 구조나 기능에 관한 지식, ⑤ 음주운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지식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교통범죄 수사를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과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이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특별법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자동차의 구조나 기능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보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나 민사문제와 관련된 지식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 계산과 관련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과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통범죄 관련 각종 특별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특가법, 보험사기 방지법 등)) 도로교통법 외에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자동차 관리법 등 특별법에 대한 지식도 중요합니다.

(교통범죄 관련 보험과 민사문제에 대한 지식) 교통에서 중요한 것이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사고시 보험처리와 민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구조나 기능에 관한 지식) 교통범죄 수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지식) 음주운전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혈중알콜농도 계산과 관련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기술과 능력

또한 교통범죄분야 수사관에 대한 면담결과, 교통범죄수사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으로서 ① 교통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CCTV 영상, 보험사기 자료 등), ② 교통범죄에 대한 공소권 존재 여부 판단능력, ③ 교통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조사

및 진술분석능력, ④ 교통사고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과 과실비율 산정능력, ⑤ 교통범죄에 대한 행정벌(벌점, 범칙금, 과태료 등) 적용 능력, ⑥ 교통범죄 관련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능력(TCS, EDR, 이지 크러시 등), ⑦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도로교통공단, 심평원 등), ⑧ 교통범죄 관련자에 대해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및 설명 능력(민원대응) 등이 도출되었다.

주요 면담 요지를 정리하면, 수사관은 교통범죄수사를 위해 CCTV나 블랙박스 등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공소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건 관련 피의자를 심문하고 진술을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수사대상은 아닌 사고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능력과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벌점 등 행정벌을 부과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범죄수사에서 활용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유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교통범죄를 수사하는데 있어서 관련자에게 통지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민원대응 측면에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강조하였다.

(교통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CCTV 영상, 보험사기 자료 등)) 교통범죄 수사를 위해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상을 잘 분석해서 결론을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범죄에 대한 공소권 존재 여부 판단능력) 교통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공소권이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을 구별하는 판단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통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조사 및 진술분석능력) 교통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심문을 하거나 피의자가 한 진술을 분석하여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과 과실비율 산정능력) 교통사고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교통범죄에 대한 행정벌(벌점, 범칙금, 과태료 등) 적용 능력)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권이 없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여부를 확인해서 벌점이나 범칙금 등 행정벌을 부과하는 능력도 요구됩니다.

(교통범죄 관련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능력(TCS, EDR, 이지 크러시 등)) 교통분야에서 활용하는 TCS프로그램이나 차량의 기록장치인 EDR,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인 이지크러시 등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도로교통공단, 심평원 등)) 교통범죄수사에서 도로교통공단과 국과수에 대부분 감정을 의뢰하고 있고, 보험사기의 경우 심평원과 협력을 많이 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통범죄 관련자에 대해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및 설명능력(민원대응)) 교통사고 관련자에게 통지를 잘 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는 민원대응 능력도 필요합니다.

▶▶▶ [표 3-14] 교통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구분	역량
지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과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 교통범죄 관련 각종 특별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특가법, 보험사기 방지법 등) - 교통범죄 관련 보험과 민사문제에 대한 지식 - 자동차의 구조나 기능에 관한 지식 - 음주운전에 대한 워드마크 공식에 대한 지식
기술과 능력	- 교통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CCTV 영상, 보험사기 자료 등) - 교통범죄에 대한 공소권 존재 여부 판단능력 - 교통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조사 및 진술분석능력 - 교통사고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과 과실비율 산정능력 - 교통범죄에 대한 행정벌(벌점, 범칙금, 과태료 등) 적용 능력 - 교통범죄 관련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능력(TCS, EDR, 이지 크러시 등) -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도로교통공단, 심평원 등) - 교통범죄 관련자에 대해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및 설명능력(민원대응)

제 4 장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연구

타당성 검증 및 최종모델 개발

김지영 · 조준택

제4장

타당성 검증 및 최종모델 개발

제1절 | 설문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총 1,363명으로 이들의 수사분야는 강력범죄수사가 160명, 형사범죄수사 199명, 여성청소년범죄수사 145명, 지능범죄수사 131명, 경제범죄수사 350명, 마약범죄수사 21명, 조직폭력범죄수사 58명, 사이버범죄수사 98명, 디지털포렌식 24명, 안보범죄수사 73명, 교통범죄수사 104명이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남성 90.6%, 여성이 9.4%로 수사분야에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 이상(35.1%)이 가장 많았으며, 30대(30.7%), 40대(29.1%), 20대(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을 보면 경찰서(71.8%)가 가장 많았고, 시도경찰청(26.3%), 경찰청(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지역은 서울(17.1%)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12.5%), 인천(9.7%), 부산(7.8%), 전남(5.9%), 경기북부(5.5%), 전북(5.2%), 경남(4.9%), 강원(4.3%), 광주(3.9%), 충북(3.7%), 대구(3.6%), 충남(3.3%), 대전·경북(3.1%), 울산(2.9%), 제주(2.8%), 세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급은 경위(31.4%)가 가장 많았으며, 경감(31.0%), 경사(15.8%), 경장(11.7%), 순경(5.1%), 경정(4.5%), 총경 이상(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팀원(60.5%)이 가장 많았고, 팀(계)장(35.3%), 과장(3.8%), 기타(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25년 이상(28.0%)이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20.3%), 20년 이상~25년 미만

(14.5%), 10년 이상~15년 미만과 15년 이상~20년 미만(12.5%), 5년 미만(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부서 근무경력은 20년 이상(21.1%)이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18.3%), 10년 이상~15년 미만(15.5%), 1년 이상~3년 미만(14.3%), 15년 이상~20년 미만(14.0%), 3년 이상~5년 미만(9.1%), 1년 미만(7.6%)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4-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빈도(명)	비율(%)
수사분야	강력범죄수사	160	(11.7)
	형사범죄수사	199	(14.6)
	여성청소년범죄수사	145	(10.6)
	지능범죄수사	131	(9.6)
	경제범죄수사	350	(25.7)
	마약범죄수사	21	(1.5)
	조직폭력범죄수사	58	(4.3)
	사이버범죄수사	98	(7.2)
	디지털포렌식	24	(1.8)
	안보범죄수사	73	(5.4)
	교통범죄수사	104	(7.6)
	계	1,363	(100.0)
성별	남성	1,235	(90.6)
	여성	128	(9.4)
	계	1,363	(100.0)
연령대	20대	70	(5.1)
	30대	418	(30.7)
	40대	396	(29.1)
	50대 이상	479	(35.1)
	계	1,363	(100.0)
소속기관	경찰청(부속기관 포함)	26	(1.9)
	시도경찰청	359	(26.3)
	경찰서	978	(71.8)
	계	1,363	(100.0)
소속지역	서울	228	(17.1)
	부산	104	(7.8)
	대구	48	(3.6)
	인천	130	(9.7)
	광주	52	(3.9)
	대전	42	(3.1)

구분		빈도(명)	비율(%)
	울산	39	(2.9)
	세종	10	(0.7)
	경기남부	167	(12.5)
	경기북부	74	(5.5)
	강원	58	(4.3)
	충북	49	(3.7)
	충남	44	(3.3)
	전북	70	(5.2)
	전남	79	(5.9)
	경북	41	(3.1)
	경남	65	(4.9)
	제주	37	(2.8)
	계	1,337	(100.0)
계급	순경	70	(5.1)
	경장	159	(11.7)
	경사	215	(15.8)
	경위	428	(31.4)
	경감	422	(31.0)
	경정	61	(4.5)
	총경이상	8	(0.6)
	계	1,363	(100.0)
직위	팀원	824	(60.5)
	팀(계)장	481	(35.3)
	과장	52	(3.8)
	기타	6	(0.4)
	계	1,363	(100.0)
재직기간	5년 미만	167	(12.3)
	5년 이상~10년 미만	277	(20.3)
	10년 이상~15년 미만	170	(12.5)
	15년 이상~20년 미만	170	(12.5)
	20년 이상~25년 미만	198	(14.5)
	25년 이상	381	(28.0)
	계	1,363	(100.0)
수사부서 근무경력	1년 미만	104	(7.6)
	1년 이상~3년 미만	195	(14.3)
	3년 이상~5년 미만	124	(9.1)
	5년 이상~10년 미만	250	(18.3)
	10년 이상~15년 미만	211	(15.5)
	15년 이상~20년 미만	191	(14.0)
	20년 이상	288	(21.1)
	계	1,363	(100.0)

2. 강력범죄수사

강력범죄수사의 핵심역량에 관한 질문은 총 12문항이다. 12문항의 전체 평균은 4.30이다. 첫 번째 문항 ‘형법 및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0.6%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44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높았다. 평균이 높을수록 핵심역량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 [표 4-2] 강력범죄수사-형법 및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타당하지 않음	1	0.6	0.6
	보통	14	8.8	9.4
	타당함	59	36.9	46.3
	매우 타당함	86	53.8	100.0
	전체	160	100.0	
평균		4.44		
표준편차		.679		

‘민사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4.4%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평균은 3.45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낮았다.

» [표 4-3] 강력범죄수사-민사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6	3.8	3.8
	타당하지 않음	17	10.6	14.4
	보통	58	36.3	50.6
	타당함	57	35.6	86.3
	매우 타당함	22	13.8	100.0
	전체	160	100.0	
평균		3.45		
표준편차		.983		

‘법의학 등 법과학 분야 관련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타당하지 않다’가 3.8%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91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낮았다.

» [표 4-4] 강력범죄수사-법의학 등 법과학 분야 관련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타당하지 않음	6	3.8	3.8
	보통	46	28.8	32.5
	타당함	65	40.6	73.1
	매우 타당함	43	26.9	100.0
	전체	160	100.0	
평균		3.91		
표준편차		.838		

‘정보원에 대한 관리 및 첩보수집능력(장물아비, 출소자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6.9%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09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낮았다.

» [표 4-5] 강력범죄수사-정보원에 대한 관리 및 첩보수집능력(장물아비, 출소자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4	2.5	2.5
	타당하지 않음	7	4.4	6.9
	보통	25	15.6	22.5
	타당함	59	36.9	59.4
	매우 타당함	65	40.6	100.0
	전체	160	100.0	
평균		4.09		
표준편차		.980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CCTV 관찰, 탐문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3%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66으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높았다.

▶▶▶ [표 4-6] 강력범죄수사-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CCTV 관찰, 탐문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1.3	1.3
	보통	4	2.5	3.8
	타당함	38	23.8	27.5
	매우 타당함	116	72.5	100.0
	전체	160	100.0	
평균		4.66		
표준편차		.653		

‘동일범죄수법 조회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SCAS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2.5%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0으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30)과 동일하다.

▶▶▶ [표 4-7] 강력범죄수사-동일범죄수법 조회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SCAS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6	0.6
	타당하지 않음	3	1.9	2.5
	보통	23	14.4	16.9
	타당함	53	33.1	50.0
	매우 타당함	80	50.0	100.0
	전체	160	100.0	
평균		4.30		
표준편차		.830		

‘수집한 각종 증거에 대한 통합적 분석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0.6%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49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높았다.

» [표 4-8] 강력범죄수사-수집한 각종 증거에 대한 통합적 분석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타당하지 않음	1	0.6	0.6
	보통	14	8.8	9.4
	타당함	51	31.9	41.3
	매우 타당함	94	58.8	100.0
	전체	160	100.0	
평균		4.49		
표준편차		.682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활용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5.0%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04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낮았다.

» [표 4-9] 강력범죄수사-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활용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6	0.6
	타당하지 않음	7	4.4	5.0
	보통	34	21.3	26.3
	타당함	61	38.1	64.4
	매우 타당함	57	35.6	100.0
	전체	160	100.0	
평균		4.04		
표준편차		.896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3%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68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높았다.

» [표 4-10] 강력범죄수사-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1.3	1.3
	보통	3	1.9	3.1
	타당함	38	23.8	26.9
	매우 타당함	117	73.1	100.0
	전체	160	100.0	
평균		4.68		
표준편차		.640		

‘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3%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66으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높았다.

» [표 4-11] 강력범죄수사-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6	0.6
	타당하지 않음	1	0.6	1.3
	보통	5	3.1	4.4
	타당함	38	23.8	28.1
	매우 타당함	115	71.9	100.0
	전체	160	100.0	
평균		4.66		
표준편차		.635		

‘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9%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41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높았다.

» [표 4-12] 강력범죄수사-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6	0.6
	타당하지 않음	2	1.3	1.9
	보통	15	9.4	11.3
	타당함	54	33.8	45.0
	매우 타당함	88	55.0	100.0
	전체	160	100.0	
평균		4.41		
표준편차		.764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0.6%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46으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높았다.

» [표 4-13] 강력범죄수사-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타당하지 않음	1	0.6	0.6
	보통	15	9.4	10.0
	타당함	53	33.1	43.1
	매우 타당함	91	56.9	100.0
	전체	160	100.0	
평균		4.46		
표준편차		.690		

3. 형사범죄수사

형사범죄수사의 핵심역량에 관한 질문은 총 11문항이다. 11문항의 전체 평균은 4.28이다. 첫 번째 문항 ‘형법 및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0.5%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6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28)에 비해 높았다. 평균이 높을수록 핵심역량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 [표 4-14] 형사범죄수사-형법 및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5	0.5
	보통	23	11.6	12.1
	타당함	77	38.7	50.8
	매우 타당함	98	49.2	100.0
	전체	199	100.0	
평균			4.36	
표준편차			.725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이해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3.5%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0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28)에 비해 낮았다.

» [표 4-15] 형사범죄수사-디지털 증거에 대한 이해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4	2.0	2.0
	타당하지 않음	3	1.5	3.5
	보통	25	12.6	16.1
	타당함	85	42.7	58.8
	매우 타당함	82	41.2	100.0
	전체	199	100.0	
평균			4.20	
표준편차			.863	

‘다양한 사건에 대한 죄명 적용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2.0%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2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28)에 비해 높았다.

» [표 4-16] 형사범죄수사-다양한 사건에 대한 죄명 적용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3	1.5	1.5
	타당하지 않음	1	0.5	2.0
	보통	21	10.6	12.6
	타당함	79	39.7	52.3
	매우 타당함	95	47.7	100.0
	전체	199	100.0	
평균		4.32		
표준편차		.801		

‘사건특성과 단서에 따른 수사사항 우선순위 설정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5%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8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28)에 비해 높았다.

» [표 4-17] 형사범죄수사-사건특성과 단서에 따른 수사사항 우선순위 설정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5	0.5
	타당하지 않음	2	1.0	1.5
	보통	15	7.5	9.0
	타당함	83	41.7	50.8
	매우 타당함	98	49.2	100.0
	전체	199	100.0	
평균		4.38		
표준편차		.714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CCTV 관찰, 탐문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0%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53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28)에 비해 높았다.

▶▶▶ **【표 4-18】** 형사범죄수사-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CCTV 관찰, 탐문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5	0.5
	타당하지 않음	1	0.5	1.0
	보통	11	5.5	6.5
	타당함	64	32.2	38.7
	매우 타당함	122	61.3	100.0
	전체	199	100.0	
평균		4.53		
표준편차		.672		

‘동일범죄수법 조회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SCAS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3.0%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13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28)에 비해 낮았다.

▶▶▶ **【표 4-19】** 형사범죄수사-동일범죄수법 조회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SCAS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5	0.5
	타당하지 않음	5	2.5	3.0
	보통	40	20.1	23.1
	타당함	75	37.7	60.8
	매우 타당함	78	39.2	100.0
	전체	199	100.0	
평균		4.13		
표준편차		.852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활용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

여 2.5%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04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28)에 비해 낮았다.

▶▶ [표 4-20] 형사범죄수사-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활용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1.0	1.0
	타당하지 않음	3	1.5	2.5
	보통	53	26.6	29.1
	타당함	69	34.7	63.8
	매우 타당함	72	36.2	100.0
	전체	199	100.0	
평균		4.04		
표준편차		.884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0%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46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28)에 비해 높았다.

▶▶ [표 4-21] 형사범죄수사-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5	0.5
	타당하지 않음	1	0.5	1.0
	보통	17	8.5	9.5
	타당함	67	33.7	43.2
	매우 타당함	113	56.8	100.0
	전체	199	100.0	
평균		4.46		
표준편차		.716		

‘(출동시) 신고사건 정보숙지와 돌발상황 대처능력(물리력 사용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

을 합하여 4.0%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16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28)에 비해 낮았다.

» [표 4-22] 형사범죄수사-(출동시) 신고사건 정보속지와 돌발상황 대처능력(물리력 사용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1.0	1.0
	타당하지 않음	6	3.0	4.0
	보통	39	19.6	23.6
	타당함	64	32.2	55.8
	매우 타당함	88	44.2	100.0
	전체	199	100.0	
평균		4.16		
표준편차		.911		

‘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2.0%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2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28)에 비해 낮았다.

» [표 4-23] 형사범죄수사-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1.0	1.0
	타당하지 않음	2	1.0	2.0
	보통	33	16.6	18.6
	타당함	76	38.2	56.8
	매우 타당함	86	43.2	100.0
	전체	199	100.0	
평균		4.22		
표준편차		.828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2.0%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9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28)에 비해 높았다.

▶▶ [표 4-24] 형사범죄수사-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1.0	1.0
	타당하지 않음	2	1.0	2.0
	보통	27	13.6	15.6
	타당함	73	36.7	52.3
	매우 타당함	95	47.7	100.0
	전체	199	100.0	
평균		4.29		
표준편차		.814		

4.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여성청소년범죄수사의 핵심역량에 관한 질문은 총 11문항이다. 11문항의 전체 평균은 4.14이다. 첫 번째 문항 ‘여성청소년범죄 관련 형사법,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2.8%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5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14)에 비해 높았다. 평균이 높을수록 핵심역량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 [표 4-25] 여성청소년범죄수사-여성청소년범죄 관련 형사법,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7	0.7
	타당하지 않음	3	2.1	2.8
	보통	14	9.7	12.4
	타당함	53	36.6	49.0
	매우 타당함	74	51.0	100.0
	전체	145	100.0	
평균		4.35		
표준편차		.795		

‘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에 특별히 요구되는 수사절차와 매뉴얼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4.1%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3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14)에 비해 높았다.

» [표 4-26] 여성청소년범죄수사-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에 특별히 요구되는 수사절차와 매뉴얼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1.4	1.4
	타당하지 않음	4	2.8	4.1
	보통	15	10.3	14.5
	타당함	47	32.4	46.9
	매우 타당함	77	53.1	100.0
	전체	145	100.0	
평균		4.33		
표준편차		.874		

‘여성과 청소년 등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8.3%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90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14)에 비해 낮았다.

» [표 4-27] 여성청소년범죄수사-여성과 청소년 등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이해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1.4	1.4
	타당하지 않음	10	6.9	8.3
	보통	38	26.2	34.5
	타당함	46	31.7	66.2
	매우 타당함	49	33.8	100.0
	전체	145	100.0	
평균		3.90		
표준편차		.998		

‘112 신고이력 등 각종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6.9%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90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14)에 비해 낮았다.

» [표 4-28] 여성청소년범죄수사-112 신고이력 등 각종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7	0.7
	타당하지 않음	9	6.2	6.9
	보통	38	26.2	33.1
	타당함	53	36.6	69.7
	매우 타당함	44	30.3	100.0
	전체	145	100.0	
평균		3.90		
표준편차		.933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피해자 분리, 신변보호 등) 이행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8.3%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96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14)에 비해 낮았다.

» [표 4-29] 여성청소년범죄수사-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피해자 분리, 신변보호 등)

이행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4	2.8	2.8
	타당하지 않음	8	5.5	8.3
	보통	29	20.0	28.3
	타당함	53	36.6	64.8
	매우 타당함	51	35.2	100.0
	전체	145	100.0	
평균		3.96		
표준편차		1.013		

‘피해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 등 면담기법 및 조사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4.1%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01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14)에 비해 낮았다.

» [표 4-30] 여성청소년범죄수사-피해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 등 면담기법 및 조사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7	0.7
	타당하지 않음	5	3.4	4.1
	보통	35	24.1	28.3
	타당함	55	37.9	66.2
	매우 타당함	49	33.8	100.0
	전체	145	100.0	
평균		4.01		
표준편차		.886		

‘진술증거 및 물적증거 수집을 통한 피해사실 특정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4%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0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14)에 비해 높았다.

» [표 4-31]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진술증거 및 물적증거 수집을 통한 피해사실 특정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7	0.7
	타당하지 않음	1	0.7	1.4
	보통	22	15.2	16.6
	타당함	50	34.5	51.0
	매우 타당함	71	49.0	100.0
	전체	145	100.0	
평균		4.30		
표준편차		.802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CCTV확인, 탐문, 통신수사 등)’이 핵심역량으로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7%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7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14)에 비해 높았다.

▶▶ [표 4-32] 여성청소년범죄수사-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CCTV확인, 탐문, 통신수사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7	0.7
	보통	24	16.6	17.2
	타당함	54	37.2	54.5
	매우 타당함	66	45.5	100.0
	전체	145	100.0	
평균		4.27		
표준편차		.784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휴대전화 포렌식, 목격자 진술)’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4%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2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14)에 비해 높았다.

▶▶ [표 4-33] 여성청소년범죄수사-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휴대전화 포렌식, 목격자 진술)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7	0.7
	타당하지 않음	1	0.7	1.4
	보통	18	12.4	13.8
	타당함	55	37.9	51.7
	매우 타당함	70	48.3	100.0
	전체	145	100.0	
평균		4.32		
표준편차		.772		

‘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2.1%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7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14)에 비해 높았다.

▶▶▶ [표 4-34] 여성청소년범죄수사-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7	0.7
	타당하지 않음	2	1.4	2.1
	보통	18	12.4	14.5
	타당함	60	41.4	55.9
	매우 타당함	64	44.1	100.0
	전체	145	100.0	
평균		4.27		
표준편차		.784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각종 상담기관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2.8%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97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14)에 비해 낮았다.

▶▶▶ [표 4-35] 여성청소년범죄수사-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각종 상담기관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7	0.7
	타당하지 않음	3	2.1	2.8
	보통	37	25.5	28.3
	타당함	62	42.8	71.0
	매우 타당함	42	29.0	100.0
	전체	145	100.0	
평균		3.97		
표준편차		.833		

5. 지능범죄수사

지능범죄수사의 핵심역량에 관한 질문은 총 11문항이다. 11문항의 전체 평균은 4.32이다. 첫 번째 문항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0.8%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44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2)에 비해 높았다. 평균이 높을수록 핵심역량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 [표 4-36] 지능범죄수사-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8	0.8
	보통	14	10.7	11.5
	타당함	42	32.1	43.5
	매우 타당함	74	56.5	100.0
	전체	131	100.0	
평균		4.44		
표준편차		.745		

‘지능범죄 분야의 다양한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0.8%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46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2)에 비해 높았다.

▶▶ [표 4-37] 지능범죄수사-지능범죄 분야의 다양한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8	0.8
	보통	13	9.9	10.7
	타당함	41	31.3	42.0
	매우 타당함	76	58.0	100.0
	전체	131	100.0	
평균		4.46		
표준편차		.737		

‘특별법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분야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2.3%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5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2)에 비해 높았다.

» [표 4-38] 지능범죄수사-특별법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분야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1.5	1.5
	타당하지 않음	1	0.8	2.3
	보통	13	9.9	12.2
	타당함	48	36.6	48.9
	매우 타당함	67	51.1	100.0
	전체	131	100.0	
평균		4.35		
표준편차		.813		

‘기업의 자금, 신용정보, 회계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3.8%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09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2)에 비해 낮았다.

» [표 4-39] 지능범죄수사-기업의 자금, 신용정보, 회계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3	2.3	2.3
	타당하지 않음	2	1.5	3.8
	보통	28	21.4	25.2
	타당함	45	34.4	59.5
	매우 타당함	53	40.5	100.0
	전체	131	100.0	
평균		4.09		
표준편차		.940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1.5%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85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2)에 비해 낮았다.

▶▶ [표 4-40] 지능범죄수사-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6	4.6	4.6
	타당하지 않음	9	6.9	11.5
	보통	35	26.7	38.2
	타당함	30	22.9	61.1
	매우 타당함	51	38.9	100.0
	전체	131	100.0	
평균		3.85		
표준편차		1.153		

‘다양한 수사단서에서 지능범죄를 인지하는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3.8%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19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2)에 비해 낮았다.

▶▶ [표 4-41] 지능범죄수사-다양한 수사단서에서 지능범죄를 인지하는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1.5	1.5
	타당하지 않음	3	2.3	3.8
	보통	19	14.5	18.3
	타당함	51	38.9	57.3
	매우 타당함	56	42.7	100.0
	전체	131	100.0	
평균		4.19		
표준편차		.878		

‘제보자,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등 관련자 면담 및 조사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

여 0.8%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44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2)에 비해 높았다.

» [표 4-42] 지능범죄수사-제보자,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등 관련자 면담 및 조사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8	0.8
	보통	14	10.7	11.5
	타당함	42	32.1	43.5
	매우 타당함	74	56.5	100.0
	전체	131	100.0	
평균		4.44		
표준편차		.745		

‘범죄수사를 위한 공개자료 검색 및 수집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5%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8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2)에 비해 낮았다.

» [표 4-43] 지능범죄수사-범죄수사를 위한 공개자료 검색 및 수집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8	0.8
	타당하지 않음	1	0.8	1.5
	보통	17	13.0	14.5
	타당함	53	40.5	55.0
	매우 타당함	59	45.0	100.0
	전체	131	100.0	
평균		4.28		
표준편차		.777		

‘강제수사 능력(계좌추적, 대인 및 대물 압수수색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0.8%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57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2)에 비해 높았다.

» [표 4-44] 지능범죄수사-강제수사 능력(계좌추적, 대인 및 대물 압수수색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8	0.8
	보통	6	4.6	5.3
	타당함	40	30.5	35.9
	매우 타당함	84	64.1	100.0
	전체	131	100.0	
평균		4.57		
표준편차		.657		

‘논리적 추론을 통한 증거분석과 범죄사실 관련성 입증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0.8%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47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2)에 비해 높았다.

» [표 4-45] 지능범죄수사-논리적 추론을 통한 증거분석과 범죄사실 관련성 입증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0.8	0.8
	보통	12	9.2	9.9
	타당함	41	31.3	41.2
	매우 타당함	77	58.8	100.0
	전체	131	100.0	
평균		4.47		
표준편차		.727		

‘수사결과보고서 등 빈틈없는 수사서류 작성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5%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8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2)에 비해 높았다.

» [표 4-46] 지능범죄수사-수사결과보고서 등 빈틈없는 수사서류 작성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1.5	1.5
	보통	15	11.5	13.0
	타당함	43	32.8	45.8
	매우 타당함	71	54.2	100.0
	전체	131	100.0	
평균		4.38		
표준편차		.808		

6. 경제범죄수사

경제범죄수사의 핵심역량에 관한 질문은 총 12문항이다. 12문항의 전체 평균은 4.16이다. 첫 번째 문항 ‘재산범죄 관련 형사법 및 판례에 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2.3%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41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높았다. 평균이 높을수록 핵심역량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 [표 4-47] 경제범죄수사-재산범죄 관련 형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5	1.4	1.4
	타당하지 않음	3	0.9	2.3
	보통	43	12.3	14.6
	타당함	91	26.0	40.6
	매우 타당함	208	59.4	100.0
	전체	350	100.0	
평균		4.41		
표준편차		.844		

‘재산범죄 관련 민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4.9%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14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낮았다.

» [표 4-48] 경제범죄수사-재산범죄 관련 민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5	1.4	1.4
	타당하지 않음	12	3.4	4.9
	보통	60	17.1	22.0
	타당함	125	35.7	57.7
	매우 타당함	148	42.3	100.0
	전체	350	100.0	
평균		4.14		
표준편차		.918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세금, 회계 등 재무상태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8.6%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96으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낮았다.

» [표 4-49] 경제범죄수사-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세금, 회계 등 재무상태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5	1.4	1.4
	타당하지 않음	25	7.1	8.6
	보통	72	20.6	29.1
	타당함	125	35.7	64.9
	매우 타당함	123	35.1	100.0
	전체	350	100.0	
평균		3.96		
표준편차		.986		

‘형사범죄와 민사사안에 대한 판단 및 구분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3.4%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4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높았다.

》》 【표 4-50】 경제범죄수사-형사범죄와 민사사안에 대한 판단 및 구분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4	1.1	1.1
	타당하지 않음	8	2.3	3.4
	보통	45	12.9	16.3
	타당함	101	28.9	45.1
	매우 타당함	192	54.9	100.0
	전체	350	100.0	
평균		4.34		
표준편차		.871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 진술확보를 위한 조사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2.9%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5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높았다.

》》 【표 4-51】 경제범죄수사-고소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 진술확보를 위한 조사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6	1.7	1.7
	타당하지 않음	4	1.1	2.9
	보통	42	12.0	14.9
	타당함	106	30.3	45.1
	매우 타당함	192	54.9	100.0
	전체	350	100.0	
평균		4.35		
표준편차		.863		

‘고소 및 고발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2.6%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44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높았다.

» [표 4-52] 경제범죄수사-고소 및 고발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5	1.4	1.4
	타당하지 않음	4	1.1	2.6
	보통	32	9.1	11.7
	타당함	99	28.3	40.0
	매우 타당함	210	60.0	100.0
	전체	350	100.0	
평균		4.44		
표준편차		.819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계좌추적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2.9%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1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높았다.

» [표 4-53] 경제범죄수사-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계좌추적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4	1.1	1.1
	타당하지 않음	6	1.7	2.9
	보통	44	12.6	15.4
	타당함	120	34.3	49.7
	매우 타당함	176	50.3	100.0
	전체	350	100.0	
평균		4.31		
표준편차		.841		

‘회계 프로그램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1.7%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67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낮았다.

» [표 4-54] 경제범죄수사-회계 프로그램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6	1.7	1.7
	타당하지 않음	35	10.0	11.7
	보통	120	34.3	46.0
	타당함	96	27.4	73.4
	매우 타당함	93	26.6	100.0
	전체	350	100.0	
평균		3.67		
표준편차		1.029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세무서, 신용평가사,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9.7%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79으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낮았다.

» [표 4-55] 경제범죄수사-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세무서, 신용평가사, 공인중개사협회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8	2.3	2.3
	타당하지 않음	26	7.4	9.7
	보통	95	27.1	36.9
	타당함	125	35.7	72.6
	매우 타당함	96	27.4	100.0
	전체	350	100.0	
평균		3.79		
표준편차		1.003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4.6%으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01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낮았다.

» [표 4-56] 경제범죄수사-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5	1.4	1.4
	타당하지 않음	11	3.1	4.6
	보통	84	24.0	28.6
	타당함	126	36.0	64.6
	매우 타당함	124	35.4	100.0
	전체	350	100.0	
평균		4.01		
표준편차		.922		

‘진술과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추론과 보고서 작성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3.4%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7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높았다.

» [표 4-57] 경제범죄수사-진술과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추론과 보고서 작성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6	1.7	1.7
	타당하지 않음	6	1.7	3.4
	보통	48	13.7	17.1
	타당함	117	33.4	50.6
	매우 타당함	173	49.4	100.0
	전체	350	100.0	
평균		4.27		
표준편차		.885		

‘고소인 등에 대해 조사결과 및 법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4.3%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3으로 12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높았다.

» [표 4-58] 경제범죄수사-고소인 등에 대해 조사결과 및 법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6	1.7	1.7
	타당하지 않음	9	2.6	4.3
	보통	51	14.6	18.9
	타당함	116	33.1	52.0
	매우 타당함	168	48.0	100.0
	전체	350	100.0	
평균		4.23		
표준편차		.912		

7. 마약범죄수사

마약범죄수사의 핵심역량에 관한 질문은 총 10문항이다. 10문항의 전체 평균은 4.46이다. 첫 번째 문항 ‘마약류관리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으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보통을 제외하고 95.2%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평균은 4.52로 10문항의 전체 평균(4.46)에 비해 높았다. 평균이 높을수록 핵심역량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 [표 4-59] 마약범죄수사-마약류관리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보통	1	4.8	4.8
	타당함	8	38.1	42.9
	매우 타당함	12	57.1	100.0
	전체	21	100.0	
평균		4.52		
표준편차		.602		

‘마약사건에 관한 영장기각사례 등 실무사례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타당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평균은 4.57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46)에 비해 높았다.

» [표 4-60] 마약범죄수사-마약사건에 관한 영장기각사례 등 실무사례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타당함	9	42.9	42.9
	매우 타당함	12	57.1	100.0
	전체	21	100.0	
평균		4.57		
표준편차		.507		

‘마약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에 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가 4.8%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평균은 4.43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46)에 비해 낮았다.

» [표 4-61] 마약범죄수사-마약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에 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타당하지 않음	1	4.8	4.8
	보통	1	4.8	9.5
	타당함	7	33.3	42.9
	매우 타당함	12	57.1	100.0
	전체	21	100.0	
평균		4.43		
표준편차		.811		

‘마약범죄 전력자나 제보자 등을 통한 첩보수집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타당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매우 타당하다’와 ‘타당하다’를 합쳐서 90.5%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평균은 4.29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46)에 비해 낮았다.

» [표 4-62] 마약범죄수사-마약범죄 전력자나 제보자 등을 통한 첩보수집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보통	2	9.5	9.5
	타당함	11	52.4	61.9
	매우 타당함	8	38.1	100.0
	전체	21	100.0	
평균		4.29		
표준편차		.644		

‘각종 첩보 등 수사단서에 대한 신빙성 검증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타당하다’는 응답은 100%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평균은 4.43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46)에 비해 낮았다.

» [표 4-63] 마약범죄수사-각종 첩보 등 수사단서에 대한 신빙성 검증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타당함	12	57.1	57.1
	매우 타당함	9	42.9	100.0
	전체	21	100.0	
평균		4.43		
표준편차		.507		

‘제보자로부터 마약범죄에 대한 구체적 진술 확보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타당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평균은 4.52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46)에 비해 높았다.

» [표 4-64] 마약범죄수사-제보자로부터 마약범죄에 대한 구체적 진술 확보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타당함	10	47.6	47.6
	매우 타당함	11	52.4	100.0
	전체	21	100.0	
평균		4.52		
표준편차		.512		

‘강제수사(압수수색 등)에 대한 판단 및 실행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타당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평균은 4.67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46)에 비해 높았다.

▶▶ [표 4-65] 마약범죄수사-강제수사(압수수색 등)에 대한 판단 및 실행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타당함	7	33.3	33.3
	매우 타당함	14	66.7	100.0
	전체	21	100.0	
평균		4.67		
표준편차		.483		

‘피의자에 대한 사전동선 파악 등 검거계획 수립 및 실행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타당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평균은 4.57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46)에 비해 높았다.

▶▶ [표 4-66] 마약범죄수사-피의자에 대한 사전동선 파악 등 검거계획 수립 및 실행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타당함	9	42.9	42.9
	매우 타당함	12	57.1	100.0
	전체	21	100.0	
평균		4.57		
표준편차		.507		

‘마약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기법 및 조사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타당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보통을 제외하고 95.3%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평균은 4.48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46)에 비해 높았다.

▶▶▶ [표 4-67] 마약범죄수사-마약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기법 및 조사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보통	1	4.8	4.8
	타당함	9	42.9	47.6
	매우 타당함	11	52.4	100.0
	전체	21	100.0	
평균		4.48		
표준편차		.602		

‘마약범죄 피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타당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85.7%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평균은 4.14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46)에 비해 낮았다.

▶▶▶ [표 4-68] 마약범죄수사-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식약처, 검찰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보통	3	14.3	14.3
	타당함	12	57.1	71.4
	매우 타당함	6	28.6	100.0
	전체	21	100.0	
평균		4.14		
표준편차		.655		

8. 조직폭력범죄수사

조직폭력수사의 핵심역량에 관한 질문은 총 9문항이다. 9문항의 전체 평균은 4.16이다. 첫 번째 문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으며,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82.8%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평균은 4.31로 10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높았다. 평균이 높을수록 핵심역량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 [표 4-69] 조직폭력범죄수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보통	10	17.2	17.2
	타당함	20	34.5	51.7
	매우 타당함	28	48.3	100.0
	전체	58	100.0	
평균		4.31		
표준편차		.754		

‘조직폭력범죄수사-성매매처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조직폭력 사업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4%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84로 9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낮았다.

▶▶▶ [표 4-70] 조직폭력범죄수사-성매매처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조직폭력 사업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타당하지 않음	2	3.4	3.4
	보통	21	36.2	39.7
	타당함	19	32.8	72.4
	매우 타당함	16	27.6	100.0
	전체	58	100.0	
평균		3.84		
표준편차		.875		

‘범죄인지를 위한 폭력조직에 대한 정보망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7%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43으로 9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높았다.

» [표 4-71] 조직폭력범죄수사-범죄인지를 위한 폭력조직에 대한 정보망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타당하지 않음	1	1.7	1.7
	보통	9	15.5	17.2
	타당함	12	20.7	37.9
	매우 타당함	36	62.1	100.0
	전체	58	100.0	
평균		4.43		
표준편차		.819		

‘피해규명을 위한 피해자 면담 및 조사 능력(신뢰 및 라포 형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3.4%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8로 9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높았다.

» [표 4-72] 조직폭력범죄수사-피해규명을 위한 피해자 면담 및 조사 능력(신뢰 및 라포 형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1.7	1.7
	타당하지 않음	1	1.7	3.4
	보통	9	15.5	19.0
	타당함	17	29.3	48.3
	매우 타당함	30	51.7	100.0
	전체	58	100.0	
평균		4.28		
표준편차		.914		

‘협의를 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 (통화내역, 면회내용, 영치금 대장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7%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1로 9문항의 전체 평균 (4.16)에 비해 높았다.

» [표 4-73] 조직폭력범죄수사-혐의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 (통화내역, 면회내용, 영치금 대장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타당하지 않음	1	1.7	1.7
	보통	9	15.5	17.2
	타당함	19	32.8	50.0
	매우 타당함	29	50.0	100.0
	전체	58	100.0	
평균		4.31		
표준편차		.799		

‘조직폭력 동향파악을 위한 DB 관리 및 활용능력(KICS 조직계보, 동향보고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7%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17로 9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높았다.

» [표 4-74] 조직폭력범죄수사-조직폭력 동향파악을 위한 DB 관리 및 활용능력(KICS 조직계보, 동향보고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타당하지 않음	1	1.7	1.7
	보통	9	15.5	17.2
	타당함	27	46.6	63.8
	매우 타당함	21	36.2	100.0
	전체	58	100.0	
평균		4.17		
표준편차		.752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교정기관,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6.9%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78로 9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낮았다.

» [표 4-75] 조직폭력범죄수사-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교정기관,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3.4	3.4
	타당하지 않음	2	3.4	6.9
	보통	18	31.0	37.9
	타당함	21	36.2	74.1
	매우 타당함	15	25.9	100.0
	전체	58	100.0	
평균		3.78		
표준편차		.992		

‘검거계획서(체포영장 집행계획서) 작성 및 집행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8.6%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09로 9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낮았다.

» [표 4-76] 조직폭력범죄수사-검거계획서(체포영장 집행계획서) 작성 및 집행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1.7	1.7
	타당하지 않음	4	6.9	8.6
	보통	10	17.2	25.9
	타당함	17	29.3	55.2
	매우 타당함	26	44.8	100.0
	전체	58	100.0	
평균		4.09		
표준편차		1.031		

‘급박한 상황에서의 대처 및 물리력 사용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6.9%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4로 9문항의 전체 평균(4.16)에 비해 높았다.

» [표 4-77] 조직폭력범죄수사-급박한 상황에서의 대처 및 물리력 사용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1.7	1.7
	타당하지 않음	3	5.2	6.9
	보통	8	13.8	20.7
	타당함	15	25.9	46.6
	매우 타당함	31	53.4	100.0
	전체	58	100.0	
평균		4.24		
표준편차		.997		

9. 사이버범죄수사

사이버범죄수사의 핵심역량에 관한 질문은 총 11문항이다. 11문항의 전체 평균은 4.04이다. 첫 번째 문항 ‘사이버범죄 관련 형사법과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5.1%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3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04)에 비해 높았다. 평균이 높을수록 핵심역량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 [표 4-78] 사이버범죄수사-사이버범죄 관련 형사법과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2.0	2.0
	타당하지 않음	3	3.1	5.1
	보통	16	16.3	21.4
	타당함	26	26.5	48.0
	매우 타당함	51	52.0	100.0
	전체	98	100.0	
평균		4.23		
표준편차		.972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베이스, 모바일메신저 등에 관한 기본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4.1%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19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04)에 비해 높았다.

▶▶▶ [표 4-79] 사이버범죄수사-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베이스, 모바일메신저 등에 관한 기본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3	3.1	3.1
	타당하지 않음	1	1.0	4.1
	보통	18	18.4	22.4
	타당함	28	28.6	51.0
	매우 타당함	48	49.0	100.0
	전체	98	100.0	
평균		4.19		
표준편차		.981		

‘가상화폐와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8.2%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96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04)에 비해 낮았다.

▶▶▶ [표 4-80] 사이버범죄수사-가상화폐와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5	5.1	5.1
	타당하지 않음	3	3.1	8.2
	보통	22	22.4	30.6
	타당함	29	29.6	60.2
	매우 타당함	39	39.8	100.0
	전체	98	100.0	
평균		3.96		
표준편차		1.102		

‘해외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7.1%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92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04)에 비해 낮았다.

▶▶▶ [표 4-81] 사이버범죄수사-해외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서비스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4	4.1	4.1
	타당하지 않음	3	3.1	7.1
	보통	24	24.5	31.6
	타당함	33	33.7	65.3
	매우 타당함	34	34.7	100.0
	전체	98	100.0	
평균		3.92		
표준편차		1.042		

‘사이버 범죄에 대한 초동조치 능력(사이트 차단, 증거보전, 피해자 보호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6.1%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11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04)에 비해 높았다.

▶▶▶ [표 4-82] 사이버범죄수사-사이버 범죄에 대한 초동조치 능력(사이트 차단, 증거보전, 피해자 보호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4	4.1	4.1
	타당하지 않음	2	2.0	6.1
	보통	17	17.3	23.5
	타당함	31	31.6	55.1
	매우 타당함	44	44.9	100.0
	전체	98	100.0	
평균		4.11		
표준편차		1.034		

‘각종 제보를 통한 첩보수집 및 위장수사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4.3%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55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04)에 비해 낮았다.

» [표 4-83] 사이버범죄수사-각종 제보를 통한 첩보수집 및 위장수사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6	6.1	6.1
	타당하지 않음	8	8.2	14.3
	보통	33	33.7	48.0
	타당함	28	28.6	76.5
	매우 타당함	23	23.5	100.0
	전체	98	100.0	
평균		3.55		
표준편차		1.123		

‘각종 단서 수집 및 증거분석을 통한 피의자 추적 및 특정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7.1%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19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04)에 비해 높았다.

» [표 4-84] 사이버범죄수사-각종 단서 수집 및 증거분석을 통한 피의자 추적 및 특정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4	4.1	4.1
	타당하지 않음	3	3.1	7.1
	보통	13	13.3	20.4
	타당함	28	28.6	49.0
	매우 타당함	50	51.0	100.0
	전체	98	100.0	
평균		4.19		
표준편차		1.052		

‘각종 단서 및 증거분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능력(i2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9.2%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98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04)에 비해 낮았다.

▶▶▶ [표 4-85] 사이버범죄수사-각종 단서 및 증거분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능력(i2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4	4.1	4.1
	타당하지 않음	5	5.1	9.2
	보통	15	15.3	24.5
	타당함	39	39.8	64.3
	매우 타당함	35	35.7	100.0
	전체	98	100.0	
평균		3.98		
표준편차		1.045		

‘국내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네이버, 카카오톡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4.1%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04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04)과 동일하다.

▶▶▶ [표 4-86] 사이버범죄수사-국내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네이버, 카카오톡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3	3.1	3.1
	타당하지 않음	1	1.0	4.1
	보통	21	21.4	25.5
	타당함	37	37.8	63.3
	매우 타당함	36	36.7	100.0
	전체	98	100.0	
평균		4.04		
표준편차		.952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요청 능력(해외 기업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5.1%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98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04)에 비해 낮았다.

▶▶▶ [표 4-87] 사이버범죄수사-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요청 능력(해외 기업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5	5.1	5.1
	보통	23	23.5	28.6
	타당함	34	34.7	63.3
	매우 타당함	36	36.7	100.0
	전체	98	100.0	
평균		3.98		
표준편차		1.035		

‘검거현장에서 휴대전화 압수 등 강제조치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3.1%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4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04)에 비해 높았다.

▶▶▶ [표 4-88] 사이버범죄수사-검거현장에서 휴대전화 압수 등 강제조치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않음	3	3.1	3.1
	보통	19	19.4	22.4
	타당함	24	24.5	46.9
	매우 타당함	52	53.1	100.0
	전체	98	100.0	
평균		4.24		
표준편차		.975		

10. 디지털포렌식

디지털포렌식의 핵심역량에 관한 질문은 총 11문항이다. 11문항의 전체 평균은 4.30이다. 첫 번째 문항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 및 증거능력 관련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4.2%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3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높았다. 평균이 높을수록 핵심역량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 [표 4-89] 디지털포렌식-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 및 증거능력 관련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4.2	4.2
	보통	2	8.3	12.5
	타당함	8	33.3	45.8
	매우 타당함	13	54.2	100.0
	전체	24	100.0	
평균		4.33		
표준편차		.963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분석대상 사건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4.2%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79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낮았다.

▶▶ [표 4-90] 디지털포렌식-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분석대상 사건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타당하지 않음	1	4.2	4.2
	보통	9	37.5	41.7
	타당함	8	33.3	75.0
	매우 타당함	6	25.0	100.0
	전체	24	100.0	
평균		3.79		
표준편차		.884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관련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4.2%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58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높았다.

▶▶▶ [표 4-91]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관련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4.2	4.2
	보통	1	4.2	8.3
	타당함	4	16.7	25.0
	매우 타당함	18	75.0	100.0
	전체	24	100.0	
평균		4.58		
표준편차		.929		

‘악성코드,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등 기술 관련 최신기법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4.2%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46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높았다.

▶▶▶ [표 4-92] 디지털포렌식-악성코드,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등 기술 관련 최신기법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4.2	4.2
	보통	1	4.2	8.3
	타당함	7	29.2	37.5
	매우 타당함	15	62.5	100.0
	전체	24	100.0	
평균		4.46		
표준편차		.932		

‘다양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장비 및 도구 활용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4.2%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46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높았다.

▶▶ [표 4-93] 디지털포렌식-다양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장비 및 도구 활용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4.2	4.2
	보통	1	4.2	8.3
	타당함	7	29.2	37.5
	매우 타당함	15	62.5	100.0
	전체	24	100.0	
평균		4.46		
표준편차		.932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4.2%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71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높았다.

▶▶ [표 4-94] 디지털포렌식-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4.2	4.2
	타당함	3	12.5	16.7
	매우 타당함	20	83.3	100.0
	전체	24	100.0	
평균		4.71		
표준편차		.859		

‘수집된 증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4.2%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50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높았다.

» [표 4-95] 디지털포렌식-수집된 증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4.2	4.2
	타당함	8	33.3	37.5
	매우 타당함	15	62.5	100.0
	전체	24	100.0	
평균		4.50		
표준편차		.885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작성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4.2%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5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낮았다.

» [표 4-96]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작성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4.2	4.2
	보통	3	12.5	16.7
	타당함	8	33.3	50.0
	매우 타당함	12	50.0	100.0
	전체	24	100.0	
평균		4.25		
표준편차		.989		

‘증거물 분석과정에서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4.2%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9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낮았다.

» [표 4-97] 디지털포렌식-증거물 분석과정에서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4.2	4.2
	보통	3	12.5	16.7
	타당함	7	29.2	45.8
	매우 타당함	13	54.2	100.0
	전체	24	100.0	
평균		4.29		
표준편차		.999		

‘물리적으로 훼손(파손, 침수 등)된 매체를 복원하여 데이터를 획득하는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2.5%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83으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낮았다.

» [표 4-98] 디지털포렌식-물리적으로 훼손(파손, 침수 등)된 매체를 복원하여 데이터를 획득하는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4.2	4.2
	타당하지 않음	2	8.3	12.5
	보통	6	25.0	37.5
	타당함	6	25.0	62.5
	매우 타당함	9	37.5	100.0
	전체	24	100.0	
평균		3.83		
표준편차		1.167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한 수사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4.2%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08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30)에 비해 낮았다.

» [표 4-99] 디지털포렌식-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한 수사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타당하지 않음	1	4.2	4.2
	보통	4	16.7	20.8
	타당함	11	45.8	66.7
	매우 타당함	8	33.3	100.0
	전체	24	100.0	
평균		4.08		
표준편차		.830		

11. 안보범죄수사

안보범죄수사의 핵심역량에 관한 질문은 총 13문항이다. 13문항의 전체 평균은 4.29이다. 첫 번째 문항 ‘국가보안법 등 북한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4.1%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44로 11문항의 전체 평균(4.29)에 비해 높았다. 평균이 높을수록 핵심역량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 [표 4-100] 안보범죄수사-국가보안법 등 북한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3	4.1	4.1
	보통	8	11.0	15.1
	타당함	13	17.8	32.9
	매우 타당함	49	67.1	100.0
	전체	73	100.0	
평균		4.44		
표준편차		.986		

‘북한의 대남전략 및 간첩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5.5%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4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29)에 비해 높았다.

» [표 4-101] 안보범죄수사-북한의 대남전략 및 간첩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3	4.1	4.1
	타당하지 않음	1	1.4	5.5
	보통	7	9.6	15.1
	타당함	19	26.0	41.1
	매우 타당함	43	58.9	100.0
	전체	73	100.0	
평균		4.34		
표준편차		1.003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및 경제안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5.5%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9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29)과 동일하다.

» [표 4-102] 안보범죄수사-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및 경제안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3	4.1	4.1
	타당하지 않음	1	1.4	5.5
	보통	10	13.7	19.2
	타당함	17	23.3	42.5
	매우 타당함	42	57.5	100.0
	전체	73	100.0	
평균		4.29		
표준편차		1.034		

‘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 관련 법령 및 증거능력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4.1%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44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29)보다 높았다.

» [표 4-103] 안보범죄수사-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 관련 법령 및 증거능력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3	4.1	4.1
	보통	8	11.0	15.1
	타당함	13	17.8	32.9
	매우 타당함	49	67.1	100.0
	전체	73	100.0	
평균		4.44		
표준편차		.986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다양한 실무 수사사례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5.5%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42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29)보다 높았다.

» [표 4-104] 안보범죄수사-국가안보범죄에 대한 다양한 실무 수사사례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3	4.1	4.1
	타당하지 않음	1	1.4	5.5
	보통	7	9.6	15.1
	타당함	13	17.8	32.9
	매우 타당함	49	67.1	100.0
	전체	73	100.0	
평균		4.42		
표준편차		1.013		

‘국가안보범죄 유형에 따른 수사방향 설정 및 수사기법 적용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6.8%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40으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29)보다 높았다.

▶▶▶ [표 4-105] 안보범죄수사-국가안보범죄 유형에 따른 수사방향 설정 및 수사기법 적용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3	4.1	4.1
	타당하지 않음	2	2.7	6.8
	보통	6	8.2	15.1
	타당함	14	19.2	34.2
	매우 타당함	48	65.8	100.0
	전체	73	100.0	
평균		4.40		
표준편차		1.037		

‘국가안보범죄 탐지를 위한 수사협조원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9.6%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3으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29)보다 높았다.

▶▶▶ [표 4-106] 안보범죄수사-국가안보범죄 탐지를 위한 수사협조원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5	6.8	6.8
	타당하지 않음	2	2.7	9.6
	보통	5	6.8	16.4
	타당함	13	17.8	34.2
	매우 타당함	48	65.8	100.0
	전체	73	100.0	
평균		4.33		
표준편차		1.167		

‘사건의 국가안보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한 범죄인지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6.8%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7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29)보다 낮았다.

» [표 4-107] 안보범죄수사-사건의 국가안보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한 범죄인지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3	4.1	4.1
	타당하지 않음	2	2.7	6.8
	보통	8	11.0	17.8
	타당함	19	26.0	43.8
	매우 타당함	41	56.2	100.0
	전체	73	100.0	
평균		4.27		
표준편차		1.044		

‘국가안보범죄 사건 관련인 선정 및 연결성 파악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6.8%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2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29)보다 높았다.

» [표 4-108] 안보범죄수사-국가안보범죄 사건 관련인 선정 및 연결성 파악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4	5.5	5.5
	타당하지 않음	1	1.4	6.8
	보통	7	9.6	16.4
	타당함	17	23.3	39.7
	매우 타당함	44	60.3	100.0
	전체	73	100.0	
평균		4.32		
표준편차		1.079		

‘국가안보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감청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8.2%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3으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29)보다 낮았다.

» [표 4-109] 안보범죄수사-국가안보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감청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5	6.8	6.8
	타당하지 않음	1	1.4	8.2
	보통	9	12.3	20.5
	타당함	15	20.5	41.1
	매우 타당함	43	58.9	100.0
	전체	73	100.0	
평균		4.23		
표준편차		1.161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사전 심리분석 및 면담조사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9.6%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평균은 4.11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29)보다 낮았다.

» [표 4-110] 안보범죄수사-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사전 심리분석 및 면담조사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6	8.2	8.2
	타당하지 않음	1	1.4	9.6
	보통	8	11.0	20.5
	타당함	22	30.1	50.7
	매우 타당함	36	49.3	100.0
	전체	73	100.0	
평균		4.11		
표준편차		1.185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정원, 방첩사, 국과수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2.3%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18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29)보다 낮았다.

» [표 4-111] 안보범죄수사-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정원, 방첩사, 국과수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6	8.2	8.2
	타당하지 않음	3	4.1	12.3
	보통	6	8.2	20.5
	타당함	15	20.5	41.1
	매우 타당함	43	58.9	100.0
	전체	73	100.0	
평균		4.18		
표준편차		1.251		

‘수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및 민원에 대한 대처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8.2%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01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29)보다 낮았다.

» [표 4-112] 안보범죄수사-수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및 민원에 대한 대처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5	6.8	6.8
	타당하지 않음	1	1.4	8.2
	보통	15	20.5	28.8
	타당함	19	26.0	54.8
	매우 타당함	33	45.2	100.0
	전체	73	100.0	
평균		4.01		
표준편차		1.161		

12. 교통범죄수사

교통범죄수사의 핵심역량에 관한 질문은 총 13문항이다. 13문항의 전체 평균은 4.08이다. 첫 번째 문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과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3.8%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8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08)에 비해 높았다. 평균이 높을수록 핵심역량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 [표 4-113] 교통범죄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과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1.0	1.0
	타당하지 않음	3	2.9	3.8
	보통	11	10.6	14.4
	타당함	29	27.9	42.3
	매우 타당함	60	57.7	100.0
	전체	104	100.0	
평균		4.38		
표준편차		.862		

‘교통범죄 관련 각종 특별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특가법, 보험사기 방지법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4.8%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9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08)에 비해 높았다.

▶▶▶ [표 4-114]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 관련 각종 특별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특가법, 보험사기 방지법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1.0	1.0
	타당하지 않음	4	3.8	4.8
	보통	13	12.5	17.3
	타당함	32	30.8	48.1
	매우 타당함	54	51.9	100.0
	전체	104	100.0	
평균		4.29		
표준편차		.900		

‘교통범죄 관련 보험과 민사문제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5.8%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05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08)에 비해 낮았다.

» [표 4-115]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 관련 보험과 민사문제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1.0	1.0
	타당하지 않음	5	4.8	5.8
	보통	25	24.0	29.8
	타당함	30	28.8	58.7
	매우 타당함	43	41.3	100.0
	전체	104	100.0	
평균		4.05		
표준편차		.969		

‘자동차의 구조나 기능에 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2.5%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53으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08)에 비해 낮았다.

» [표 4-116] 교통범죄수사-자동차의 구조나 기능에 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3	2.9	2.9
	타당하지 않음	10	9.6	12.5
	보통	42	40.4	52.9
	타당함	27	26.0	78.8
	매우 타당함	22	21.2	100.0
	전체	104	100.0	
평균		3.53		
표준편차		1.024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7.7%로 나타났으

며, 이 문항의 평균은 4.08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08)과 동일하다.

▶▶ [표 4-117] 교통범죄수사-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지식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1.9	1.9
	타당하지 않음	6	5.8	7.7
	보통	7	16.3	24.0
	타당함	36	34.6	58.7
	매우 타당함	43	41.3	100.0
	전체	104	100.0	
평균		4.08		
표준편차		.992		

‘교통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CCTV 영상, 보험사기 자료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2.9%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37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08)에 비해 높았다.

▶▶ [표 4-118]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CCTV 영상, 보험사기 자료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1.0	1.0
	타당하지 않음	2	1.9	2.9
	보통	12	11.5	14.4
	타당함	32	30.8	45.2
	매우 타당함	57	54.8	100.0
	전체	104	100.0	
평균		4.37		
표준편차		.837		

‘교통범죄에 대한 공소권 존재 여부 판단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2.9%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3으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08)에 비해 높았다.

》》 【표 4-119】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에 대한 공소권 존재 여부 판단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1.0	1.0
	타당하지 않음	2	1.9	2.9
	보통	16	15.4	18.3
	타당함	38	36.5	54.8
	매우 타당함	47	45.2	100.0
	전체	104	100.0	
평균		4.23		
표준편차		.850		

‘교통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조사 및 진술분석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3.8%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26으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08)에 비해 높았다.

》》 【표 4-120】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조사 및 진술분석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1.0	1.0
	타당하지 않음	3	2.9	3.8
	보통	15	14.4	18.3
	타당함	34	32.7	51.0
	매우 타당함	51	49.0	100.0
	전체	104	100.0	
평균		4.26		
표준편차		.881		

‘교통사고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과 과실비율 산정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10.6%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88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08)에 비해 낮았다.

» [표 4-121] 교통범죄수사-교통사고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과 과실비율 산정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4	3.8	3.8
	타당하지 않음	7	6.7	10.6
	보통	21	20.2	30.8
	타당함	37	35.6	66.3
	매우 타당함	35	33.7	100.0
	전체	104	100.0	
평균		3.88		
표준편차		1.073		

‘교통범죄에 대한 행정벌(벌점, 범칙금, 과태료 등) 적용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7.7%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99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08)에 비해 낮았다.

» [표 4-122]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에 대한 행정벌(벌점, 범칙금, 과태료 등) 적용 능력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1.0	1.0
	타당하지 않음	7	6.7	7.7
	보통	23	22.1	29.8
	타당함	34	32.7	62.5
	매우 타당함	39	37.5	100.0
	전체	104	100.0	
평균		3.99		
표준편차		.980		

‘교통범죄 관련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능력(TCS, EDR, 이지 크러시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6.7%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3.92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08)에 비해 낮았다.

» [표 4-123]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 관련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능력(TCS, EDR, 이지 크러시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1.0	1.0
	타당하지 않음	6	5.8	6.7
	보통	24	23.1	29.8
	타당함	42	40.4	70.2
	매우 타당함	31	29.8	100.0
	전체	104	100.0	
평균		3.92		
표준편차		.921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도로교통공단, 심평원 등)’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6.7%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01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08)에 비해 낮았다.

» [표 4-124] 교통범죄수사-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도로교통공단, 심평원 등)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1.0	1.0
	타당하지 않음	6	5.8	6.7
	보통	17	16.3	23.1
	타당함	47	45.2	68.3
	매우 타당함	33	31.7	100.0
	전체	104	100.0	
평균		4.01		
표준편차		.898		

‘교통범죄 관련자에 대해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및 설명능력(민원대응)’이 핵심역량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응답과 ‘타당하지 않다’ 응답을 합하여 4.8%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4.09로 13문항의 전체 평균(4.08)에 비해 높았다.

» [표 4-125]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 관련자에 대해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및 설명능력(민원대응)
단위: 명(%)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1.0	1.0
	타당하지 않음	4	3.8	4.8
	보통	20	19.2	24.0
	타당함	39	37.5	61.5
	매우 타당함	40	38.5	100.0
	전체	104	100.0	
평균		4.09		
표준편차		.904		

제2절 | 수사경찰 핵심역량 최종모델 개발

본 절에서는 앞선 설문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각 수사분야별 핵심역량 최종모델을 개발하였다. 핵심역량으로서 타당성에 대한 기준은 경찰역량에 관한 가장 최근 연구사례인 대화경찰 역량모델 개발사례에서 활용한 기준인 긍정응답률 65% 이상으로 설정하였다.¹⁹⁾ 구체적으로 표에 각 역량들이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표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산출된 각 역량별 평균점수의 순위도 병기하여 어떠한 역량이 더욱 핵심적인 역량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수사분야 최종모델 개발 관련 경찰수사 경력을 가진 대학교수, 경찰수사연수원 교수요원, 역량관련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자문의견도 반영하여 역량 명칭을 일부 수정하였다.

1. 강력범죄 수사

강력범죄 수사분야에서는 ‘민사법 관련 판례에 관한 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역량이 핵심역량 최종모델에 포함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피의자 검거를 위한

19) 표선영·홍세은·정제용, “대화경찰 역량모델에 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22권 제2호, 2022, 46면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이다.

또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역량명칭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형법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법령과 판례에 관한 지식’을 ‘형사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으로 변경하였고, ‘법의학 등 법과학 분야 관련 지식’을 ‘법의학 등 과학수사 관련 지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 및 활용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을 ‘유관기관 공조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으로 변경하였다.

▶▶▶ [표 4-126] 강력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구분	역량	긍정응답률 기준이상	평균순위
지식	형사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	6
	민사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	12
	법의학 등 과학수사 관련 지식	○	11
기술과 능력	정보원에 대한 관리 및 첩보수집능력(장물아비, 출소자 등)	○	9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CCTV 관찰, 탐문 등)	○	2
	동일범죄수법 조회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SCAS 등)	○	8
	수집한 각종 증거에 대한 통합적 분석능력	○	4
	유관기관 공조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	○	10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	○	1
	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	○	2
	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능력	○	7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	○	5

2. 형사범죄수사

형사범죄 수사분야에서는 면담조사를 통해 추출된 11개 역량의 타당성이 검증되어 모두 핵심역량 최종모델에 포함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CCTV 관찰, 탐문,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이다.

또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역량명칭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형법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법령과 판례에 관한 지식’을 ‘형사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으로 변경하였고,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CCTV 관찰, 탐문 등)’을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CCTV 관찰, 탐문,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 및 활용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을 ‘유관기관 공조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으로 변경하였다.

» [표 4-127] 형사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구분	역량	긍정응답률 기준이상	평균순위
지식	형사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	4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이해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지식	○	8
기술과 능력	다양한 사건에 대한 죄명 적용능력	○	5
	사건특성과 단서에 따른 수사사항 우선순위 설정능력	○	3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CCTV 관찰, 탐문,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	1
	동일범죄수법 조화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SCAS 등)	○	10
	유관기관 공조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	○	11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	○	2
	(출동시) 신고사건 정보속지와 돌발상황 대처능력	○	9
	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능력	○	7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	○	6

3.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분야에서는 면담조사를 통해 추출된 11개 역량의 타당성이 검증되어 모두 핵심역량 최종모델에 포함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여성청소년범죄 관련 형사법,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이었다.

또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역량명칭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진술증거 및

물적증거 수집을 통한 피해사실 특정 능력'을 '아동 및 장애인 등 특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술증거 등을 통한 피해사실 특정 능력'으로 변경하였고, 또한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지원성격을 고려하여 '유관기관 협업 및 활용능력(국과수, 각종 상담기관 등)'을 '유관기관 공조능력(국과수, 각종 지원기관 등)'으로 변경하였다.

▶▶▶ [표 4-128] 여성청소년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구분	역량	긍정응답률 기준이상	평균순위
지식	여성청소년범죄 관련 형사법,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	1
	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에 특별히 요구되는 수사절차와 매뉴얼 지식	○	2
	여성과 청소년 등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이해	○	10
기술과 능력	112 신고이력 등 각종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능력	○	10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피해자 분리, 신변 보호 등) 이행능력	○	9
	피해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 등 면담기법 및 조사 능력	○	7
	아동 및 장애인 등 특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술증거 등을 통한 피해사실 특정 능력	○	4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CCTV확인, 탐문, 통신수사 등)	○	5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휴대전화 포렌식, 목격자 진술)	○	3
	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	○	5
	유관기관 공조능력(국과수, 각종 지원기관 등)	○	8

4. 지능범죄수사

지능범죄 수사분야에서는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역량이 핵심역량 최종모델에 포함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강제수사 능력(계좌추적, 대인 및 대물 압수수색 등)'이다.

또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역량명칭을 일부 수정하거나 통합하였는데, 먼저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을 '형사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결과 범죄정보 수집과 지능범죄 인지는 별개로 구분되는 역량이 아니라 통합적인 역량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다양한 수사단서에서 지능범죄를 인지하는 능력'을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지능범죄를 인지하는 능력'으로 변경하였다.

» [표 4-129] 지능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구분	역량	긍정응답률 기준이상	평균순위
지식	형사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	4
	지능범죄 분야의 다양한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	3
	특별법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분야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식	○	7
	기업의 자금, 신용정보, 회계에 대한 지식	○	10
기술과 능력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	11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지능범죄를 인지하는 능력	○	9
	제보자,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등 관련자 면담 및 조사능력	○	4
	범죄수사를 위한 공개자료 검색 및 수집능력	○	8
	강제수사 능력(계좌추적, 대인 및 대물 압수수색 등)	○	1
	논리적 추론을 통한 증거분석과 범죄사실 관련성 입증 능력	○	2
	수사결과보고서 등 빈틈없는 수사서류 작성능력	○	6

5. 경제범죄수사

경제범죄 수사분야에서는 '회계프로그램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과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역량이 핵심역량 최종모델에 포함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고소 및 고발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 능력'이다.

또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역량명칭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먼저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세무서, 신용평가사,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유관기관 공조능력(세무서, 신용평가사, 공인중개사협회 등)'으로 변경하였다.

» [표 4-130] 경제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구분	역량	긍정응답률 기준이상	평균순위
지식	재산범죄 관련 형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	2
	재산범죄 관련 민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	8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세금, 회계 등 재무상태에 대한 지식	○	10
기술과 능력	형사범죄와 민사사안에 대한 판단 및 구분능력	○	4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 진술확보를 위한 조사 능력	○	3
	고소 및 고발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 능력	○	1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계좌추적 등)	○	5
	회계 프로그램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	×	12
	유관기관 공조능력(세무서, 신용평가사, 공인중개사협회 등)	×	11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	○	9
	진술과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추론과 보고서 작성능력	○	6
	고소인 등에 대해 조사결과 및 법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능력	○	7

6. 마약범죄수사

마약범죄 수사분야에서는 면담조사를 통해 추출된 10개 역량의 타당성이 검증되어 모두 핵심역량 최종모델에 포함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강제수사(압수수색 등)에 대한 판단 및 실행능력’이었다.

또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역량명칭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식약처, 검찰 등)’을 ‘유관기관 공조능력(국과수, 식약처, 검찰 등)’으로 변경하였다.

» [표 4-131] 마약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구분	역량	긍정응답률 기준이상	평균순위
지식	마약류관리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	4
	마약사건에 관한 영장기각사례 등 실무사례에 대한 지식	○	2
	마약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에 관한 지식	○	7
기술과 능력	마약범죄 전력자나 제보자 등을 통한 첩보수집 능력	○	9
	각종 첩보 등 수사단서에 대한 신빙성 검증능력	○	7
	제보자로부터 마약범죄에 대한 구체적 진술 확보 능력	○	4
	강제수사(압수수색 등)에 대한 판단 및 실행능력	○	1
	피의자에 대한 사전동선 파악 등 검거계획 수립 및 실행능력	○	2
	마약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기법 및 조사능력	○	6
	유관기관 공조능력(국과수, 식약처, 검찰 등)	○	10

7. 조직폭력범죄수사

조직폭력범죄 수사분야에서는 ‘성매매처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과 ‘유관기관 공조능력(교정기관,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역량이 핵심역량 최종모델에 포함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범죄인지를 위한 폭력조직에 대한 정보망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이다.

또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역량명칭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 (통화내역, 면회내용, 영치금 대장 등)’을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 (통화내역, 면회내용, 영치금 대장, 계좌거래 내역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교정기관,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유관기관 공조능력(교정기관,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등)’으로 변경하였다.

▶▶▶ [표 4-132] 조직폭력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구분	역량	긍정응답률 기준이상	평균순위
지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지식	○	2
	성매매처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	8
기술과 능력	범죄인지를 위한 폭력조직에 대한 정보망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	1
	피해규명을 위한 피해자 면담 및 조사 능력(신뢰 및 라포 형성)	○	4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 (통화내역, 면회내용, 영치금 대장, 계좌거래 내역 등)	○	2
	조직폭력 동향파악을 위한 DB 관리 및 활용능력(KICS 조직계보, 동향보고 등)	○	6
	유관기관 공조능력(교정기관,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등)	×	9
	검거계획서(체포영장 집행계획서) 작성 및 집행능력	○	7
	급박한 상황에서의 대처 및 물리력 사용능력	○	5

8. 사이버범죄수사

사이버범죄 수사분야에서는 ‘각종 제보를 통한 첩보수집 및 위장수사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역량이 핵심역량 최종모델에 포함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검거 현장에서 휴대전화 압수 등 강제조치 능력’이다.

또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역량명칭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베이스, 모바일메신저 등에 관한 기본 지식’을 ‘컴퓨터와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 지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각종 단서 및 증거분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능력(i2 등)’을 ‘수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활용능력’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국내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국내 유관기관 공조능력(네이버, 카카오톡 등)’으로 변경하였고,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요청 능력(해외 기업 등)’을 ‘사이버범죄 국제협력과 공조 능력’으로 변경하였다.

» [표 4-133] 사이버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구분	역량	긍정응답률 기준이상	평균순위
지식	사이버범죄 관련 형사법과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	2
	컴퓨터와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 지식	○	3
	가상화폐와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지식	○	9
	해외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서비스에 대한 지식	○	10
기술과 능력	사이버 범죄에 대한 초동조치 능력(사이트 차단, 증거 보존, 피해자 보호 등)	○	5
	각종 제보를 통한 첩보수집 및 위장수사 능력	×	11
	각종 단서 수집 및 증거분석을 통한 피의자 추적 및 특정 능력	○	3
	수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활용능력	○	7
	국내 유관기관 공조능력(네이버, 카카오톡 등)	○	6
	사이버범죄 국제협력과 공조능력	○	7
	검거현장에서 휴대전화 압수 등 강제조치 능력	○	1

9. 디지털포렌식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분석대상 사건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과 ‘물리적으로 훼손(파손, 침수 등)된 매체를 복원하여 데이터를 획득하는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역량이 핵심역량 최종모델에 포함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이다.

또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역량명칭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악성코드,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등 기술 관련 최신기법에 대한 지식’을 ‘악성코드 등 정보통신 분야별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지식’으로 변경하였고, ‘수집된 증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디지털 증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으로 변경하였다.

» [표 4-134] 디지털포렌식 핵심역량 최종모델

구분	역량	긍정응답률 기준이상	평균순위
지식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 및 증거능력 관련 지식	○	6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분석대상 사건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	11
	디지털 증거처리 규칙 관련 지식	○	2
	악성코드 등 정보통신 분야별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지식	○	4
기술과 능력	다양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장비 및 도구 활용능력	○	4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	○	1
	디지털 증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	3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작성능력	○	8
	증거물 분석과정에서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	7
	물리적으로 훼손(파손, 침수 등)된 매체를 복원하여 데이터를 획득하는 능력	×	10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한 수사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능력	○	9

10. 안보범죄수사

안보범죄 수사분야에서는 면담조사를 통해 추출된 13개 역량의 타당성이 검증되어 모두 핵심역량 최종모델에 포함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국가보안법 등 북한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과 ‘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 관련 법령 및 증거능력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이었다.

또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역량명칭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국가안보범죄 혐의 입증에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감청 등)’을 ‘국가안보범죄 혐의 입증에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감청, 포렌식 등)’으로 변경하였고,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정원, 방첩사, 국과수 등)’을 ‘유관기관 공조능력(국정원, 방첩사, 국과수 등)’으로 변경하였다.

▶▶▶ [표 4-135] 안보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구분	역량	긍정응답률 기준이상	평균순위
지식	국가보안법 등 북한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	1
	북한의 대남전략 및 간첩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	5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및 경제안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	8
	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 관련 법령 및 증거능력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	1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다양한 실무 수사사례에 대한 지식	○	3
기술과 능력	국가안보범죄 유형에 따른 수사방향 설정 및 수사기법 적용능력	○	4
	국가안보범죄 탐지를 위한 수사협조원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	6
	사건의 국가안보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한 범죄인지 능력	○	9
	국가안보범죄 사건 관련인 선정 및 연결성 파악 능력	○	7
	국가안보범죄 혐의 입증에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감청, 포렌식 등)	○	10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사전 심리분석 및 면담조사 능력	○	12
	유관기관 공조능력(국정원, 방첩사, 국과수 등)	○	11
	수사대상자의 이익제기 및 민원에 대한 대처능력	○	13

11. 교통범죄수사

교통범죄 수사분야에서는 ‘자동차의 구조나 기능에 관한 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역량이 핵심역량 최종모델에 포함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과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이다.

또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역량명칭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교통사고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과 과실비율 산정능력’을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능력’으로 변경하였고,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도로교통공단, 심평원 등)’을 ‘유관기관 공조능력(국과수, 도로교통공단, 심평원 등)’으로 변경하였다.

▶▶ [표 4-136] 교통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구분	역량	긍정응답률 기준이상	평균순위
지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과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	1
	교통범죄 관련 각종 특별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특가법, 보험사기 방지법 등)	○	3
	교통범죄 관련 보험과 민사문제에 대한 지식	○	8
	자동차의 구조나 기능에 관한 지식	×	13
	음주운전에 대한 워드마크 공식에 대한 지식	○	7
기술과 능력	교통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CCTV 영상, 보험사기 자료 등)	○	2
	교통범죄에 대한 공소권 존재 여부 판단능력	○	5
	교통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조사 및 진술분석능력	○	4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능력	○	12
	교통범죄에 대한 행정벌(벌점, 범칙금, 과태료 등) 적용 능력	○	10
	교통범죄 관련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능력(TCS, EDR, 이지 크러시 등)	○	11
	유관기관 공조능력(국과수, 도로교통공단, 심평원 등)	○	9
	교통범죄 관련자에 대해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및 설명능력(민원대응)	○	6

제 5 장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연구

결 론

조 준 택

제1절 |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강력범죄수사, 형사범죄수사,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지능범죄수사, 경제범죄수사, 마약범죄수사, 조직폭력범죄수사, 사이버범죄수사, 디지털포렌식, 안보범죄수사, 교통범죄수사 분야 경찰관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핵심역량모델 초안을 개발한 후 각 수사분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각 수사분야별 최종 핵심역량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력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 중 지식에는 ① 형사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② 범죄학 등 과학수사 관련 지식이 포함되었고, 기술 및 능력에는 ① 정보원에 대한 관리 및 첩보수집능력(장물아비, 출소자 등), ②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CCTV 관찰, 탐문 등), ③ 동일범죄수법 조회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SCAS 등), ④ 수집한 각종 증거에 대한 통합적 분석능력, ⑤ 유관기관과의 공조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 ⑥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 ⑦ 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 ⑧ 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능력, ⑨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이 도출되었다.

형사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 중 지식에는 ① 형사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②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이해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었고, 기술 및 능력에는 ① 다양한 사건에 대한 죄명 적용능력, ② 사건특성과 단서에 따른 수사사항 우선순위 설정능력, ③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CCTV 관찰, 탐문,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④ 동일범죄수법 조회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SCAS 등), ⑤ 유관기관 공조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 ⑥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 ⑦ (출동시) 신고사건 정보숙지와 돌발상황 대처능력(물리력 사용 등), ⑧ 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능력, ⑨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이 포함되었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 중 지식에는 ① 여성청소년범죄 관련 형사법,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② 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에 특별히 요구되는 수사절차와 매뉴얼 지식, ③ 여성과 청소년 등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었고, 기술 및 능력에는 ① 112 신고이력 등 각종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능력, ②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피해자 분리, 신변보호 등) 이행능력, ③ 피해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 등 면담기법 및 조사 능력, ④ 아동 및 장애인 등 특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술증거 등을 통한 피해사실 특정 능력, ⑤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CCTV확인, 탐문, 통신수사 등), ⑥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휴대전화 포렌식, 목격자 진술), ⑦ 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 ⑧ 유관기관 공조능력(국과수, 각종 지원기관 등)이 포함되었다.

지능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 중 지식에는 ① 형사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② 지능범죄 분야의 다양한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③ 특별법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분야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식, ④ 기업의 자금, 신용정보, 회계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었고, 기술 및 능력에는 ①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지능범죄를 인지하는 능력, ② 제보자,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등 관련자 면담 및 조사능력, ③ 범죄수사를 위한 공개자료 검색 및 수집능력, ④ 강제수사 능력(계좌추적, 대인 및 대물 압수수색 등), ⑤ 논리적 추론을 통한 증거분석과 범죄사실 관련성 입증 능력, ⑥ 수사결과보고서 등 빈틈없는 수사서류 작성능력이 포함되었다.

경제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 중 지식에는 ① 재산범죄 관련 형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② 재산범죄 관련 민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③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세금, 회계 등 재무상태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었고, 기술 및 능력에는 ① 형사범죄와 민사사안에 대한 판단 및 구분능력, ②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 진술확보를 위한 조사 능력, ③ 고소 및 고발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 능력, ④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계좌추적 등), ⑤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 ⑥ 진술과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추론과 보고서 작성능력, ⑦ 고소인 등에 대해 조사결과 및 법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능력이 포함되었다.

마약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 중 지식에는 ① 마약류관리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② 마약사건에 관한 영장기각사례 등 실무사례에 대한 지식, ③ 마약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에 관한 지식이 포함되었고, 기술 및 능력에는 ① 마약범죄 전력자나 제보자 등을 통한 첩보수집 능력, ② 각종 첩보 등 수사단서에 대한 신빙성 검증능력, ③ 제보자로부터 마약범죄에 대한 구체적 진술 확보 능력, ④ 강제수사(압수수색 등)에 대한 판단 및 실행능력, ⑤ 피의자에 대한 사전동선 파악 등 검거계획 수립 및 실행능력, ⑥ 마약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기법 및 조사능력, ⑦ 유관기관 공조능력(국과수, 식약처, 검찰 등)이 포함되었다.

조직폭력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 중 지식에는 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었으며, 기술 및 능력에는 ① 범죄인지를 위한 폭력조직에 대한 정보망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② 피해규명을 위한 피해자 면담 및 조사 능력(신뢰 및 라포 형성), ③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통화내역, 면회내용, 영치금 대장, 계좌거래 내역 등), ④ 조직폭력 동향파악을 위한 DB 관리 및 활용능력(KICS 조직계보, 동향보고 등), ⑤ 검거계획서(체포영장 집행계획서) 작성 및 집행능력, ⑥ 급박한 상황에서의 대처 및 물리력 사용능력이 포함되었다.

사이버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 중 지식에는 ① 사이버범죄 관련 형사법과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② 컴퓨터와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 지식, ③ 가상화폐와 범죄수의 환수에 대한 지식, ④ 해외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었고, 기술 및 능력에는 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초동조치 능력(사이트 차단, 증거보전, 피해자 보호 등), ② 각종 단서 수집 및 증거분석을 통한 피의자 추적 및 특정 능력, ③ 수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활용능력, ④ 국내 유관기관 공조능력(네이버, 카카오톡 등), ⑤ 사이버범죄 국제협력과 공조능력, ⑥ 검거현장에서 휴대전화

압수 등 강제조치 능력이 포함되었다.

디지털포렌식 핵심역량모델 중 지식에는 ①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 및 증거능력 관련 지식, ② 디지털 증거처리 규칙 관련 지식, ③ 악성코드 등 정보통신 분야별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었고, 기술 및 능력에는 ① 다양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장비 및 도구 활용능력, ②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 ③ 디지털 증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④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작성능력, ⑤ 증거물 분석과정에서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⑥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한 수사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능력이 포함되었다.

안보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 중 지식에는 ① 국가보안법 등 북한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② 북한의 대남전략 및 간첩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③ 산업기술 보호법 등 기술 및 경제안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④ 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 관련 법령 및 증거능력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⑤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다양한 실무 수사사례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었고, 기술 및 능력에는 ① 국가안보범죄 유형에 따른 수사방향 설정 및 수사기법 적용능력, ② 국가안보범죄 탐지를 위한 수사협조원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③ 사건의 국가안보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한 범죄인식 능력, ④ 국가안보범죄 사건 관련인 선정 및 연결성 파악 능력, ⑤ 국가안보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감청, 포렌식 등), ⑥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사전 심리분석 및 면담조사 능력, ⑦ 유관기관 공조능력(국정원, 방첩사, 국과수 등), ⑧ 수사대상자의 이익제기 및 민원에 대한 대처능력이 포함되었다.

교통범죄수사 핵심역량모델 중 지식에는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과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② 교통범죄 관련 각종 특별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특가법, 보험사기 방지법 등), ③ 교통범죄 관련 보험과 민사문제에 대한 지식, ④ 음주운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었고, 기술 및 능력에는 ① 교통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CCTV 영상, 보험사기 자료 등), ② 교통범죄에 대한 공소권 존재 여부 판단능력, ③ 교통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조사 및 진술분석능력, ④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능력, ⑤ 교통범죄에 대한 행정벌(벌점, 범칙금, 과태료 등) 적용 능력, ⑥ 교통범죄 관련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능력(TCS, EDR, 이지 크러시 등), ⑦ 유관기관 공조능력(국과수, 도로교통공단, 심평원 등), ⑧ 교통범죄 관련자에

대해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및 설명능력(민원대응)이 포함되었다.

2. 연구결과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2014년 경찰청 정책용역 연구에서 지역형사, 지능범죄수사, 과학수사, 수사지원 등 4개의 수사경찰 분야만의 역량모델을 개발한 것에 비하여 여성청소년범죄수사, 마약범죄수사, 조직폭력 범죄수사, 사이버범죄수사, 안보범죄수사, 교통범죄수사 등 확대된 경찰 수사분야와 변화된 형사사법환경을 반영하는 한편, 특히 다양한 수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역량모델을 개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각각의 수사 분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지만 수사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데, 개발된 11개 핵심역량모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사경찰의 공통적인 핵심역량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식 측면에서는 ① 형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② 수사분야 관련 특별법에 대한 지식을 공통역량으로 볼 수 있고, 기술 및 능력 측면에서는 ①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 ② 데이터베이스 및 프로그램 활용 능력, ③ 추적수사 능력, ④ 강제수사(압수수색 등) 능력, ⑤ 면담조사 능력, ⑥ 수사서류 작성능력 등을 공통역량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공통역량들 이외에 각 수사분야별 최종모델에 포함된 개별적인 핵심역량들이 더해져 각각의 최종 핵심역량 모델들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연구결과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찰수사 연수원 교육을 포함한 각 수사분야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직폭력 범죄수사의 경우 핵심역량모델 중 지식에는 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었고, 기술 및 능력에는 ① 범죄인지를 위한 폭력조직에 대한 정보망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② 피해규명을 위한 피해자 면담 및 조사 능력(신뢰 및 라포 형성), ③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통화내역, 면회내용, 영치금 대장, 계좌거래 내역 등), ④ 조직폭력 동향파악을 위한 DB 관리 및 활용능력(KICS 조직계보, 동향보고 등), ⑤ 검거계획서(체포영장 집행계획서) 작성 및 집행능력, ⑥ 급박한 상황에서의 대처 및 물리력 사용능력이 포함되었는데, 현재 경찰수사연수원 교육과정에는 조직범죄 관련 법령과 판례, 수사사례, 폭력범죄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사례, 진술증거 수사, 추적수사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어 폭력조직에 대한 정보망 관리나 첩보수집 능력,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활용능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성을 보여주며, 이는 다른 수사경찰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은 각 수사분야별 핵심역량을 구비한 인재를 우대하는 등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관 인사관리 및 자격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관의 역량이 강화될 경우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경찰수사의 전반적인 역량이 강화되어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라는 국정 과제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안

본 연구는 수사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수사관들과 경찰수사연수원 교수요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핵심역량을 추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여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저예산이 투입되는 단기과제인 수시연구과제의 특성으로 인해 11개의 다양한 수사분야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사경찰 분야당 1~2명의 수사관을 면담한 결과로 핵심역량모델 초안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특정 수사분야에서 보다 광범위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수사분야별로 면담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핵심역량모델은 지식과 기술 및 능력 등 기술적 역량에 초점을 둔 모델이며, 역량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태도(예, 적극성)의 경우에는 핵심역량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는데, 이는 이번 연구과제를 제안한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모형화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활용도 측면에서 좋겠다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설문조사 결과 타당성이 낮았던 역량들은 핵심역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일뿐 여전히

수사에는 필요한 역량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역량들이 경찰 수사관들로부터 핵심역량으로 선택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며, 수사관의 계급이나 경력에 따라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수사경찰의 분야를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핵심역량을 추출하여 모형화하였지만, 이러한 역량들을 기반으로 한 교육체계의 재설계나 수사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수립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여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향후 연구에서는 수사경찰의 공통적인 핵심역량으로 추출된 역량들을 중심으로 수사관 교육이나 평가 체계의 재설계를 위해 핵심역량별로 구체적인 행동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문헌]

- 경찰청, “현장중심 역량강화를 위한 경찰 교육체계수립 용역 보고서”, 2012
- 고재권·심희섭, “중간관리자 역량모델 도출 및 기본교육 개선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연구보고서, 2018
- 김창윤, “신임경찰 역량기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1호, 2010, pp.35-70
- 박노섭·장윤식·강 옥·장준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개발”, 경찰청 용역연구 보고서, 2015
- 박선영·손원빈, “신임경찰 역량기반 교육모델 도입방안”.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2017, pp.71-96
- 임창호·정세종·김학범, “경찰 중간관리자의 인사기준체계 수립 및 리더십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연구보고서, 2021
- 정진철·이종범·홍은선·안주리·홍성표·류지은, “경찰관 역량진단 프로그램 개발”, 경찰청 용역연구 보고서, 2014
- 최수민, “지역경찰의 역량모델 개발과 교육요구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표선영·홍세은·정제용, “대화경찰 역량모델에 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22권 제2호, 2022, pp.29-66
- 홍성연, “원격대학 학습자 지원체제 개선을 위한 학습자 역량모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국외문헌]

- McClelland, D. C.,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973, pp.1-14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Office of Human Capital (2020), Criminal Investigation Competency Model

[웹사이트]

경찰청(www.police.go.kr)

Abstract



Developing Core Competency Model for Investigative Police

Cho Joon-Tag, Kim Ji-Young

This study reviewed police competency models and developed a core competency model for investigative police through the procedures of data collection, competency extraction and model development, validity verification, final revision and model completion.

Specifically, the investigative police fields were divided into violent crime investigation, criminal offense investigation, women and youth crime investigation, intelligent crime investigation, economic crime investigation, drug crime investigation, organized crime investigation, cyber crime investigation, and digital forensics. security crime investigation and traffic crime investigation.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investigators and instructors in each field, and core competencies such as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are extracted to determine the draft of core competency model of each investigation field.

In order to verify whether the draft of core competency model for each investigative field was vali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investigators working in each investigative field through cooperation with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 and as a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some competencies with low validity were excluded from the model. In addition, we collected advisory opinions from related experts, revised the names of some competencies, and finalized the final core competency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violent crime investigation core competency model

consisted of eleven competencies, including ‘tracking ability to apprehend suspects.’ The criminal offense investigation core competency model consists of eleven competencies, including ‘evidence collection and analysis ability to identify suspects and prove charges.’ The core competency model for women and youth crime investigation consists of eleven competencies, including ‘knowledge of criminal laws, special laws, and precedents related to women and youth crimes.’ The intelligent crime investigation core competency model consists of ten competencies, including ‘compulsory investigation ability’. The economic crime investigation core competency model consists of ten competencies, including ‘the ability to identify specific facts and issues in complaints and accusations.’ The core competency model for drug crime investigation consists of ten competencies, including ‘judgment and execution ability for compulsory investigation’. The organized crime investigation core competency model consists of seven competencies, including ‘information network management and intelligence collection capabilities for violent organizations.’ The cyber crime investigation core competency model consists of ten competencies, including ‘ability to take coercive action at the scene of arrest.’ The digital forensics core competency model consists of nine competencies, including ‘the ability to collect evidence while securing integrity, identity, and reliability.’ The security crime investigation core competency model consists of thirteen competencies, including ‘knowledge of North Korea-related laws and precedent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The traffic crime investigation core competency model consists of twelve competencies, including ‘knowledge of the Traffic Accident Handling Special Act and the Road Traffic Act and related precedents.’

These research result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take into account the expansion of the police investigation field, the changed criminal justice environ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investigation fields. In addition, as a result of a comprehensive review of various investigative core competency models, knowledge of criminal law and precedents, knowledge of special law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field, evidence collection and analysis ability, ability to use databases and programs, tracking ability, compulsory investigation (seizure

and search, etc.) ability, interview ability, and investigative document writing ability were derived as common capabilities of investigators.

In the short term, the research results of the investigative police core competency model can contribute to improving educational programs in each investigative field. For example, if the training time related to the core competencies is insufficient, further expansion may be considered. In addition, from a mid to long term perspective, the investigative police core competency model can be used to improve the personnel management and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investigators at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 such as giving preference to talent with core competencies in each investigative field. Through this, if the capabilities of police investigators are strengthened, it is expected that the overall capabilities of police investigations as a criminal justice agency will be strengthened, contribu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task of ensuring the safety of the people's lives.

In addition, the core competency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focuses on technical competencies such as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and the competencies that had low validity are difficult to consider as core competencies, but may still be competencies necessary for investigation, so caution is needed in interpreting the results. In the future, we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conduct research to derive a more comprehensive competency model in a specific investigative field or to conduct research related to redesigning the education system and establishing an evaluation system.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안하고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이 수행하는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연구에서 각 수사분야 우수 수사관을 면담하여 도출된 역량들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에 귀하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조사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수사경찰 관련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1. 다음에 제시된 역량들이 수사경찰 핵심역량으로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력범죄수사〉

문 항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형법 및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2) 민사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3) 법의학 등 법과학 분야 관련 지식	①	②	③	④	⑤
4) 정보원에 대한 관리 및 첩보수집능력(장물아비, 출소자 등)	①	②	③	④	⑤
5)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 (CCTV 관찰, 탐문 등)	①	②	③	④	⑤
6) 동일범죄수법 조희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 (SCAS 등)	①	②	③	④	⑤
7) 수집한 각종 증거에 대한 통합적 분석능력	①	②	③	④	⑤
8)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활용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	①	②	③	④	⑤
9)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	①	②	③	④	⑤
10) 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	①	②	③	④	⑤
11) 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 능력	①	②	③	④	⑤
12)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	①	②	③	④	⑤

〈형사범죄수사〉

문항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형법 및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2)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이해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3) 다양한 사건에 대한 죄명 적용능력	①	②	③	④	⑤
4) 사건특성과 단서에 따른 수사사항 우선순위 설정능력	①	②	③	④	⑤
5)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 (CCTV 관찰, 탐문 등)	①	②	③	④	⑤
6) 동일범죄수법 조회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 (SCAS 등)	①	②	③	④	⑤
7)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	①	②	③	④	⑤
8)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	①	②	③	④	⑤
9) (출동시) 신고사건 정보속지와 돌발상황 대처능력(물리력 사용 등)	①	②	③	④	⑤
10) 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 능력	①	②	③	④	⑤
11)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	①	②	③	④	⑤

〈여성청소년범죄수사〉

문항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여성청소년범죄 관련 형사법,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2) 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에 특별히 요구되는 수사절차와 매뉴얼 지식	①	②	③	④	⑤
3) 여성과 청소년 등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4) 112 신고이력 등 각종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능력	①	②	③	④	⑤
5)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피해자 분리, 신변보호 등) 이행능력	①	②	③	④	⑤
6) 피해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 등 면담기법 및 조사 능력	①	②	③	④	⑤
7) 진술증거 및 물적증거 수집을 통한 피해사실 특정 능력	①	②	③	④	⑤
8)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CCTV확인, 탐문, 통신 수사 등)	①	②	③	④	⑤
9)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휴대전화 포렌식, 목격자 진술)	①	②	③	④	⑤
10) 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	①	②	③	④	⑤
11)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각종 상담기관 등)	①	②	③	④	⑤

〈지능범죄수사〉

문 항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2) 지능범죄 분야의 다양한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3) 특별법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분야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4) 기업의 자금, 신용정보, 회계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5)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6) 다양한 수사단서에서 지능범죄를 인지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7) 제보자,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등 관련자 면담 및 조사능력	①	②	③	④	⑤
8) 범죄수사를 위한 공개자료 검색 및 수집능력	①	②	③	④	⑤
9) 강제수사 능력(계좌추적, 대인 및 대물 압수수색 등)	①	②	③	④	⑤
10) 논리적 추론을 통한 증거분석과 범죄사실 관련성 입증 능력	①	②	③	④	⑤
11) 수사결과보고서 등 빈틈없는 수사서류 작성능력	①	②	③	④	⑤

〈경제범죄수사〉

문 항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재산범죄 관련 형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2) 재산범죄 관련 민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3)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세금, 회계 등 재무상태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4) 형사범죄와 민사사안에 대한 판단 및 구분능력	①	②	③	④	⑤
5)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 진술확보를 위한 조사 능력	①	②	③	④	⑤
6) 고소 및 고발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 능력	①	②	③	④	⑤
7)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계좌추적 등)	①	②	③	④	⑤
8) 회계 프로그램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	①	②	③	④	⑤
9)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세무서, 신용평가사, 공인중개사협회 등)	①	②	③	④	⑤
10) 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	①	②	③	④	⑤
11) 진술과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추론과 보고서 작성능력	①	②	③	④	⑤
12) 고소인 등에 대해 조사결과 및 법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능력	①	②	③	④	⑤

〈마약범죄수사〉

문 항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마약류관리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2) 마약사건에 관한 영장기각사례 등 실무사례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3) 마약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에 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4) 마약범죄 전력자나 제보자 등을 통한 첩보수집 능력	①	②	③	④	⑤
5) 각종 첩보 등 수사단서에 대한 신빙성 검증능력	①	②	③	④	⑤
6) 제보자로부터 마약범죄에 대한 구체적 진술 확보 능력	①	②	③	④	⑤
7) 강제수사(압수수색 등)에 대한 판단 및 실행능력	①	②	③	④	⑤
8) 피의자에 대한 사전동선 파악 등 검거계획 수립 및 실행능력	①	②	③	④	⑤
9) 마약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기법 및 조사능력	①	②	③	④	⑤
10)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식약처, 검찰 등)	①	②	③	④	⑤

〈조직폭력범죄수사〉

문 항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2) 성매매처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조직폭력 사업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3) 범죄인지를 위한 폭력조직에 대한 정보망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①	②	③	④	⑤
4) 피해규명을 위한 피해자 면담 및 조사 능력(신뢰 및 라포 형성)	①	②	③	④	⑤
5)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통화내역, 면회 내용, 영치금 대장 등)	①	②	③	④	⑤
6) 조직폭력 동향파악을 위한 DB 관리 및 활용능력(KICS 조직 계보, 동향보고 등)	①	②	③	④	⑤
7)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교정기관, 검찰, 금융정보분석 원 등)	①	②	③	④	⑤
8) 검거계획서(체포영장 집행계획서) 작성 및 집행능력	①	②	③	④	⑤
9) 급박한 상황에서의 대처 및 물리력 사용능력	①	②	③	④	⑤

〈사이버범죄수사〉

문 항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사이버범죄 관련 형사법과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2)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베이스, 모바일메신저 등에 관한 기본 지식	①	②	③	④	⑤
3) 가상화폐와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4) 해외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서비스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5) 사이버 범죄에 대한 초동조치 능력(사이트 차단, 증거보전, 피해자 보호 등)	①	②	③	④	⑤
6) 각종 제보를 통한 첩보수집 및 위장수사 능력	①	②	③	④	⑤
7) 각종 단서 수집 및 증거분석을 통한 피의자 추적 및 특정 능력	①	②	③	④	⑤
8) 각종 단서 및 증거분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 능력(2 등)	①	②	③	④	⑤
9) 국내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네이버, 카카오톡 등)	①	②	③	④	⑤
10)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요청 능력(해외 기업 등)	①	②	③	④	⑤
11) 검거현장에서 휴대전화 압수 등 강제조치 능력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포렌식〉

문 항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 및 증거능력 관련 지식	①	②	③	④	⑤
2)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분석대상 사건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3) 디지털 증거처리 규칙 관련 지식	①	②	③	④	⑤
4) 악성코드,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등 기술 관련 최신기법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5) 다양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장비 및 도구 활용능력	①	②	③	④	⑤
6)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7) 수집된 증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8)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작성능력	①	②	③	④	⑤
9) 증거물 분석과정에서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①	②	③	④	⑤
10) 물리적으로 훼손(파손, 침수 등)된 매체를 복원하여 데이터를 획득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1)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한 수사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능력	①	②	③	④	⑤

〈안보범죄수사〉

문 항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국가안보법 등 북한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2) 북한의 대남전략 및 간첩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①	②	③	④	⑤
3)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및 경제안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4) 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 관련 법령 및 증거능력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5)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다양한 실무 수사사례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6) 국가안보범죄 유형에 따른 수사방향 설정 및 수사기법 적용 능력	①	②	③	④	⑤
7) 국가안보범죄 탐지를 위한 수사협조원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①	②	③	④	⑤
8) 사건의 국가안보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한 범죄인지 능력	①	②	③	④	⑤
9) 국가안보범죄 사건 관련인 선정 및 연결성 파악 능력	①	②	③	④	⑤
10) 국가안보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감청 등)	①	②	③	④	⑤
11)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사전 심리분석 및 면담조사 능력	①	②	③	④	⑤
12)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정원, 방첩사, 국과수 등)	①	②	③	④	⑤
13) 수사대상자의 이익제기 및 민원에 대한 대처능력	①	②	③	④	⑤

〈교통범죄수사〉

문 항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과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2) 교통범죄 관련 각종 특별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특가법, 보험사기 방지법 등)	①	②	③	④	⑤
3) 교통범죄 관련 보험과 민사문제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4) 자동차의 구조나 기능에 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5) 음주운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6) 교통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CCTV 영상, 보험사기 자료 등)	①	②	③	④	⑤
7) 교통범죄에 대한 공소권 존재 여부 판단능력	①	②	③	④	⑤
8) 교통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조사 및 진술분석능력	①	②	③	④	⑤
9) 교통사고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과 과실비율 산정능력	①	②	③	④	⑤
10) 교통범죄에 대한 행정벌(벌점, 범칙금, 과태료 등) 적용 능력	①	②	③	④	⑤
11) 교통범죄 관련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능력(TCS, EDR, 이지 크러 시 등)	①	②	③	④	⑤
12)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도로교통공단, 심평원 등)	①	②	③	④	⑤
13) 교통범죄 관련자에 대해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및 설명능력(민원 대응)	①	②	③	④	⑤

문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문3. 귀하의 연령대는?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문4. 귀하의 소속 기관은?

- ① 경찰청(부속기관포함) ② 시도경찰청 ③ 경찰서

문5. 귀하의 소속 시도청은?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남부 ⑩ 경기북부 ⑪ 강원 ⑫ 충북 ⑬ 충남 ⑭ 전북 ⑮ 전남
 ⑯ 경북 ⑰ 경남 ⑱ 제주

문6. 귀하의 계급은?

-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⑥ 경정 ⑦ 총경 이상

문7. 귀하의 직위는?

- ① 팀원 ② 팀(계)장 ③ 과장 ④ 기타

문8. 귀하의 경찰 총 재직기간은?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⑤ 20년 이상~25년 미만 ⑥ 25년 이상

문9. 귀하의 수사부서 근무경력?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10년 미만 ⑤ 10년 이상~15년 미만 ⑥ 15년 이상~20년 미만
 ⑦ 20년 이상

연구총서 23-AB-06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연구

발행 | 2023년 11월

발행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인 | 하태훈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j.re.kr

정가 | 7,000원

인쇄 | 고려씨엔피 02-2277-1508/9

I S B N | 979-11-91565-92-8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